

현안분석 2007-

비교법제 연구 07-01

#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 (3)

## — 인도의 FTA —

김동훈 · 김봉철 · 류창호

#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 (3)

## — 인도의 FTA —

A Study on FTAs of BRICs Countries (3)  
- An Legal Analysis of India's FTAs -

연구자 : 김동훈(한국외국어대 법과대학 교수)  
Kim, Dong-Hoon  
김봉철(영국 런던대 킹스칼리지 연구원)  
Kim, Bong-Chul  
류창호(부연구위원)  
Ryu, Chang-Ho

2007. 4. 30.

## 국문 요약

WTO의 출범과 함께 국제경제질서는 다수국 공동의 규범이 각국의 무역행위 등을 이전보다 훨씬 세밀하게 규율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WTO의 규율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FTA로 대표되는 지역 무역협정의 체결추세라는 새로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FTA란, 국제경제법상 ‘두 국가 또는 몇 개의 소수 국가들 사이에 관세 및 기타 규범 등을 공유하면서 서로간의 무역장벽을 상당부분까지 제거하는 조약’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체결하고 국회를 통과한 FTA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특별한 국내법적 수용절차 없이 효력을 가진다.

FTA 등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 체제의 근거규정으로는 GATT 제24조, GATS 제 5 조 등을 들 수 있다. WTO는 증가하는 지역무역협정을 적절히 규율하고 다자주의 체제와 조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설치도 바로 그러한 예이다.

FTA와 함께 최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BRICs이다. ‘BRICs’라는 단어는 2003년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래, 향후 국제경제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세계무역질서에서 개발도상국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BRICs가 주목받고 있는 것과 관계가 깊다.

BRICs를 구성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은 큰 규모의 시장, 많은 인구, 다량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빠른 경제성장 속도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들은 선진국 못지않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FTA 또는 다양한 지역무역협정들을 체결하면서 경제적 유대관계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BRICs 국가들의 FTA는 상대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허용조항을 비롯한 FTA 및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 규범이 모호한 면이 많다는 사실과 함께 많은 무역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BRICs 국가들의 FTA에 대한 법적인 분석에서는 이들 분쟁가능성의 예방과 적절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석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오래전부터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왔으며, 그 대표적인 규범적 틀은 SAARC이다. SAARC는 인도를 중심으로 한 남아시아의 무역 및 경제협력체로서, 회원국들 사이의 무역에 특별한 혜택을 부과하는 SAPTA를 형성하였다. 이후 SAPTA는 SAFTA로 발전하여 역내무역의 자유화를 이루었다. 이와는 별도로, 인도는 남아시아의 각국과 개별적인 FTA 및 지역무역협정도 체결하였다.

또한 인도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 방콕협정이라 불리는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방콕협정은 중국의 가입으로 더욱 발전하였다. 회원국의 확대와 함께 방콕협정도 변화를 거듭하여 APTA로 재탄생하였다. APTA는 SAFTA와 함께 인도의 주요 지역무역협정이다. 이밖에 인도는 이른바 ‘동방정책’을 통하여, ASEAN 회원국 및들과의 협력과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마쳤거나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칠레 및 MERCOSUR, 다른 지역의 국가들과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의 법적 특징은, 주로 기본협정을 체결한 이후 FTA 등 보다 견고한 협정의 형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고, 주변 개발도상국들과의 협정이 많은 이유로 최저개발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규정하는 조항들이 나타나며, 양자간 협정과 복수국간의 협정이 혼재하는 동시에 협정의 상대국들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WTO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예외규정인 허용조항(Enabling Clause)을 마련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개발도상국들인 BRICs 국가들은 일반적인 지역무역협정보다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WTO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인도는 WTO의 회원국으로서 이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WTO에 허용조항을 근거로 지역무역협정을 통보한 예가 있다.

한국은 FTA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라는 원칙 아래 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FTA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가 이미 발효되었으며, ASEAN과의 FTA 체결을 위한 상품무역 분야의 협상이 마무리 된 상황이다. 또한 얼마전 한-미 FTA 협상이 국민적 관심과 논란 속에서 타결된 바 있다.

한국과 인도 사이의 무역은 양국 사이의 무역협정 체결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FTA 체결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양국의 공동연구는 한-인도 CEPA의 조속한 체결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한-인도 CEPA는 양국 및 한국의 남아시아 진출 확대를 가져올 것이며, 이에 관한 법적 측면의 대비도 필요하다.

※ 키워드 : 자유무역협정, 지역무역협정, 지역주의, 개발도상국, 브릭스, 인도, 관세제거, 무역자유화, 허용조항,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 보조금 상계조치.

# Abstract

Regional Trade Agreement(RTA) or Free Trade Agreement(FTA) recently became new paradigm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According to recent statistics, the vast majority of WTO members are party to one or more RTAs. The surge in RTAs has continued unabated since the early 1990s until now.

On the other hand, we can hear often another new term, BRICs(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No less a financial judge than the Goldman Sachs investment bank concluded in its 2003 report that the economies of the BRICs could surpass the G6 in less than 40 years, leaving only the US and Japan among the globe's six largest economies.

After that, much attention has been placed on the growth potential of the BRICs, but there is no consensus about whether these countries will be significant economies in the coming decades. These countries have quite different economic histories and strategies for stimulating economic growth, but all have seen high growth rates and have the potential to continue.

India grew at an average rate of growth relative to other developing countries for a number of decades. The leaders managed to hold a relatively high savings rate, which allowed the government to gather some resources and capital. During the 1960s and 1970s India had an inward-looking trade and investment policy, which included tight controls on imports and exports like Brazil. This import substitution strategy allowed the country to be self-sufficient, but the costs of many goods for

consumers were high because the industries did not face competition from abroad.

In 1980, India began a liberalisation strategy. Therefore, tariffs and import and export controls were relaxed. This reduced the costs to import inputs, which reduced the costs of some consumer goods. By the late 1980s, licensing requirements were relaxed and price controls were lifted from basic industrial goods. The result of these reforms was real GDP growth, export growth, productivity increases, along with increased government borrowing and spending and an ever-expanding fiscal deficit.

India is now making an effort to expand its emerging IT industry, along with maintaining the industrial sector. Focus has been placed on education specifically for the high technology sector in order to encourage productivity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focus on service industries has allowed India to work around its infrastructure and foreign investment constraints. India has been a WTO member since 1 January 1995.

India had been the main focus of RTA activities in south Asia, with its SAARC counterparts. It has signed the South Asian Free Trade Agreement (SAFTA) designed to revamp the SAPTA, and a Framework Agreement under the name BIMSTEC. The country is also engaged in APTA which is the new name of Bangkok Agreement. Further afield, India has signed more FTAs or RTAs with MERCOSUR, Chile, Singapore, Thailand, etc.

The WTO Agreements contain special provisions which give developing countries special rights and which give developed countries the possibility to treat developing countries more favorably than other WTO Members. These are calle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provisions. These special provisions include, for example, longer time periods for implementing

Agreements and commitments or measures to increase trading opportunities for developing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can also receive technical assistance. The delivery of WTO technical assistance is designed to assist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and low-income countries in transition to adjust to WTO rules and disciplines, implement obligations and exercise the rights of membership, including drawing on the benefits of an open, rules-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official name of Enabling Clause in WTO legal system is ‘the 1979 Decision on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This decision by GATT contracting parties in 1979 allows derogations from the MFN treatment obligation of Article I of the GATT.

The conditions that RTAs under Enabling Clause must meet are less demanding and less specific than those set out in Article XXIV of GATT. In particular, its paragraph 2(c) permits preferential arrangements among developing countries in goods trade. It has continued to apply as part of GATT 1994 under the WTO, and is therefore still in force. The RTAs under the Enabling Clause include COMESA, MERCOSUR and AFTA.

Through analysing the articles of WTO agreements on FTAs, We can detect the problems of the articles that could cause trade disputes. These investigations would be grounding to make legal solutions. Especially speaking, the Enabling Clause for developing countries is still ambiguous in legal point of view.

Korea recognised the importance of FTAs at late 1990s. The government is carrying out several ambitious FTA policies since then. Korea-Chile



FTA in 2002 became the first fruit of this FTA policy. Two more FTAs (Korea-Singapore FTA and Korea-EFTA FTA) had effect in 2006. The government has already started the negotiation for CEPA with India.

There have been some partial amendments of Korean national laws regarding the FTA policies. Moreover, several new acts have made for the policies. However, it is still needed to have take a long term view for both the Korean FTA policy and legal infrastructure which is related the Korea-India CEPA or FTA.

※ Key words : FTA, RTA, SAPTA, BRICs, India, WTO, Regionalism, Developing Country, GATT, Enabling Clause. SAFTA, Bangkok Agreement, Korean FTAs, CEPA, Trade remedy, Antidumping, Safeguards, Countervailing duty.

# 목 차

국 문 요 약 .....	3
Abstract .....	7
제 1 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9
제 1 절 연구의 배경 .....	19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대상 .....	21
제 2 장 FTA에 관한 법적 분석과 무역장벽 .....	23
제 1 절 FTA의 법적 분석 .....	23
1. 의 의 .....	23
2. WTO의 출범과 FTA의 변화 .....	24
3. FTA의 법적 성격 및 근거 .....	25
4. FTA의 국내법적 효력 .....	28
제 2 절 FTA와 무역장벽 .....	30
1. 무역장벽으로서의 관세 .....	30
(1) FTA와 규범적 측면에서 관세의 중요성 .....	30
(2) FTA의 최적대외관세 .....	32
(3) FTA의 대내관세 유예기간 .....	33
2. 비관세 무역장벽의 중요성 .....	35
3. 긴급수입제한조치 .....	37
(1) 의 의 .....	37
(2) FTA의 긴급수입제한조치 .....	39
4. 반덤핑조치 .....	42
(1) 의 의 .....	42

(2) FTA의 반덤핑조치 .....	43
5. 보조금 상계조치 .....	47
(1) 의 의 .....	47
(2) FTA의 보조금 상계조치 .....	48
<b>제 3 장 BRICs 국가로서 인도 .....</b>	<b>51</b>
<b>제 1 절 BRICs .....</b>	<b>51</b>
1. BRICs의 출현과 의미 .....	51
2. BRICs 경제의 성장원인 .....	53
(1)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 .....	53
(2) 외국인투자 유입과 수출 확대 .....	55
(3) 인구증가 .....	56
3.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	56
4. BRICs 사이의 협력 확대 .....	58
5. BRICs와 한국경제 .....	60
(1) BRICs와의 협력 .....	60
(2) 협력의 주요 특징 .....	61
<b>제 2 절 인 도 .....</b>	<b>63</b>
1. 인도 경제의 발전 가능성 .....	63
2. 한-인도 무역 전망 .....	64
<b>제 4 장 인도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고찰 ...</b>	<b>67</b>
<b>제 1 절 SAFTA .....</b>	<b>67</b>
1. 남아시아 경제협력체(SAARC) .....	67
2. SAPTA의 체결 .....	69
3. SAFTA의 체결과 그 구조 .....	72
4. 제 7 조에 의한 무역자유화 내용과 제 8 조의 추가조치 .....	74

5. 부속서 .....	76
6. 협정의 이행 .....	77
제 2 절 방콕협정과 APTA .....	78
1. 방콕협정의 체결 .....	78
2. 중국의 가입과 인도의 양허내용 .....	79
3. 방콕협정문의 내용 .....	81
4. APTA의 체결과 협정문의 내용 .....	82
제 3 절 기타의 FTA 및 무역협정 .....	86
1. 인도-스리랑카 FTA .....	86
2. 인도-MERCOSUR PTA .....	87
3. 인도-칠레 PTA .....	89
4. 인도-싱가포르 CECA .....	91
5. 인도-아프카니스탄 PTA .....	98
6. 인도-태국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기본협정 .....	99
7. 기타 무역협정들 .....	100
(1) 인도-부탄 무역 및 상업 협정 .....	100
(2) 인도-네팔 사이의 협정들 .....	100
(3) 인도-방글라데시 무역협정 .....	101
(4) 인도-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력을 위한 기본협정 .....	101
(5) BIMSTEC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기본협정 .....	102
8. 진행중인 협정들 .....	103
(1) 인도-말레이시아 .....	103
(2) 인도-모리셔스 .....	103
(3) 인도-인도네시아 .....	103
(4) 인도-일본 .....	103
(5) 인도-중국 .....	104
(6) 인도-GCC .....	104

(7) 인도-SACU .....	104
(8) 인도-EU .....	104
제 4 절 인도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들의 법적 특징 .....	105
1. 지역무역협정의 단계별 발전 .....	105
2. 복수국간 협정에서 최저개발체약국에 대한 배려 .....	107
3. 양자간 협정과 복수국간 협정의 혼재 .....	109
4. 협정 상대국의 중복 .....	110
제 5 장 인도의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의 특별규정 적용 검토 .....	113
제 1 절 개발도상국에 관한 WTO의 특별취급 .....	113
1. WTO와 개발도상국 .....	113
(1) 개발도상국에 관한 WTO 협정의 특별규정 .....	113
(2) 무역 및 개발 위원회 .....	114
(3) WTO 사무국의 기술적 지원 .....	115
2. WTO 출범 후의 최빈개도국(최저개발국)에 대한 대우 .....	115
3.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허용조항 .....	116
제 2 절 인도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 특별규정의 적용 .....	119
1. 허용조항의 적용요건 검토 .....	119
(1) WTO 회원국 .....	119
(2) 개발도상국 사이의 지역무역협정 .....	120
(3) 내용상의 검토 .....	120
2. 인도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허용조항 적용 사례 .....	121
3. GATT 제24조 제11항 .....	121
제 6 장 한-인도 FTA에 대한 법적 분석과 대응 .....	123

제 1 절 한국의 FTA .....	123
1. FTA 정책의 추진 .....	123
(1) 정책의 추진 배경 .....	123
(2) 대외경제조정위원회와 FTA 정책 .....	124
(3) FTA 정책의 추진과 전략 .....	124
2. 한-칠레 FTA .....	125
(1) 협정의 체결 .....	125
(2) 협정의 의미 .....	126
(3) 협정의 구조 .....	127
3. 한-싱가포르 FTA .....	130
(1) 협정의 체결 .....	130
(2) 협정의 의미 .....	130
(3) 협정의 구조 .....	132
4. 한-EFTA FTA .....	134
(1) 협정의 체결 .....	134
(2) 협정의 의미 .....	134
(3) 협정의 구조 .....	136
제 2 절 한-인도 FTA .....	140
1. 한-인도 무역진흥과 경제기술협력 협정 .....	140
2. 한-인도 공동연구보고서 .....	141
3. 한-인도 CEPA 협상 경과 .....	143
4. 한-인도 CEPA의 의미와 기대효과 .....	145
제 3 절 FTA 체결에 따른 무역구제 관련 국내법적 대응책 ...	147
1. 국내 무역구제 관련 법규 .....	147
2. FTA 관련 무역구제법규에 관한 분석 .....	149
3. FTA의 체결과 이행에 따른 무역구제법규의 개편방안 .....	151

제 7 장 결론 및 요약 ..... 155

참 고 문 헌 ..... 159

▣ 부 록

[부록1] AGREEMENT ON SOUTH ASIAN FREE TRADE AREA (SAFTA) ..... 165

[부록2] AGREEMENT ON SAARC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SAPTA) ..... 189

[부록3] INDIA-MERCOSUR PTA ..... 205

[부록4] 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 ..... 217

[부록5] INDIA-SRI LANKA FTA ..... 243

[부록6] INDIA-CHILE PTA ..... 253

## 표 차례

< 표 1 > GATT 제24조의 주요 내용 .....	27
< 표 2 > BRICs의 경제성장을 전망 .....	52
< 표 3 > BRICs의 개혁개방정책 .....	54
< 표 4 > 한국의 연도별 대인도 수출액 현황 .....	65
< 표 5 > SAARC 정상회담일자 및 장소 .....	68
< 표 6 > SAPTA 협정문의 구성 .....	70
< 표 7 > SAFTA 협정문의 구성 .....	73
< 표 8 > SAFTA 제 7 조에 의한 무역자유화계획 .....	75
< 표 9 > 방콕협정의 구조 .....	81
< 표 10 > APTA 협정문의 본문 구성 .....	83
< 표 11 > 인도-스리랑카 FTA 협정문 본문의 구성 .....	86
< 표 12 > 인도-MERCOSUR PTA 협정문의 본문 구성 .....	88
< 표 13 > 인도-칠레 PTA 협정문의 본문 구성 .....	90
< 표 14 > 인도-싱가포르 CECA 본문의 구성 .....	92
< 표 15 > 인도-아프카니스탄 PTA 본문의 주요 구성 .....	98
< 표 16 > 인도-태국 자유무역지대 설립 기본협정 본문의 주요 구성 ...	99
< 표 17 > 인도가 체결한 주요 지역무역협정 .....	105
< 표 18 > 허용조항을 근거로 GATT 및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 협정 .....	118
< 표 19 > GATT 제24조 제11항의 내용 .....	122



< 표 20 > 한-칠레 FTA 협정문의 구성 .....	128
< 표 21 >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의 구성 .....	132
< 표 22 > 한-EFTA FTA 협정문의 구성 .....	136
< 표 23 > 한-EFTA 국가간 투자와 농업에 관한 개별 협정의 구성 .....	137
< 표 24 > 한-인도 공동연구보고서의 분야별 주요내용 .....	142
< 표 25 > 한-인도 CEPA 협상경과 .....	144
< 표 26 > 한-인도 CEPA의 경제적 효과 .....	146
< 표 27 > FTA 관련 국내 무역구제법규 .....	149

## 제 1 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 1 절 연구의 배경

최근 국제무역질서에는 WTO의 출범과 비슷한 시기부터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확산현상이 나타났다. 현재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 규범에 대비되는 이른바 지역주의(Regionalism)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WTO 체제가 다자주의에 기반을 둔 경제규범인 까닭에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체제의 부적절성 내지 불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다. FTA를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 국가 또는 몇 개의 소수 국가들 사이에 관세 및 기타 규범 등을 공유하면서 서로간의 무역장벽을 상당부분까지 제거하는 조약을 의미한다. FTA를 체결하는 주체들은 협정을 통하여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하거나 축소하여 역내시장을 형성하고, 그들만의 역내무역을 확대하려고 한다. 반면에 이들과 FTA를 체결하지 못하여 역내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국가들은 상대적인 무역장벽을 감수해야 하므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이미 많은 FTA가 체결되어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간 연계현상도 확산되어 가고 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체결된 FTA가 300여개를 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범형태는 WTO와 견줄만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현재의 국제경제질서는 WTO와 같은 다자주의 규범과 FTA로 대표되는 지역무역협정이 규범의 두 축을 이루고 있으며, 많은 수

의 국가들은 대부분 이 두 체제에 동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기존의 FTA는 주로 당사국 사이의 무역규범에 관한 공유를 의미하였으나, 최근의 FTA는 무역규범뿐만 아니라 투자 및 경제일반분야, 노동,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까지 포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같은 다자주의 협상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었다. 따라서 FTA의 체결은 단순히 무역분야에서의 관세제거에서 벗어나 당사국 사이의 경제외적인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조로 이어지는 것이다.

FTA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라는 원칙 아래 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FTA 체결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2002년 체결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06년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가 이미 발효되었으며, ASEAN과의 FTA 체결을 위한 상품무역 분야의 협상이 마무리 된 상황이다. 최근에는 논란 끝에 미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밖에 거대한 시장을 보유하거나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국가들과의 FTA 역시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

세계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 즉 BRICs 국가들이 최근 들어 국제경제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큰 규모의 시장, 많은 인구, 다량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빠른 경제성장 속도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BRICs 국가들 역시 FTA 확산 현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BRICs 국가들은 선진국 못지않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 FTA 또는 이와 유사한 다수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경제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지역주의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와 BRICs라는 두 단어의 연결점을 법적 관점에서 찾는 일은 큰 의미가 있다.

인도는 SAARC 체제를 통해서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왔다. SAPTA에서 SAFTA로 이어지는 지역무역협정들은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규범적 틀로 작용하였다. 한편 인도는 SAFTA 이외에 남아시아 국가들과 개별적인 협정을 통해서도 무역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SAFTA가 남아시아 주변국들에 국한된 것이라면, 방콕협정과 그것이 발전된 APTA는 한국 및 동아시아 국가도 포함하는 지역무역협정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인도의 APTA에 대한 관심증가와 중국의 참여는 APTA의 확대와 발전을 예상하는 기초가 된다. 이밖에, 최근 ASEAN 소속 국가들과의 연계 확대는 인도의 이른바 동방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인도를 중심으로 한 BRICs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을 분석하고 특성을 도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현재 진행중인 한-인도 CEPA 및 FTA의 체결에 대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대상

본 연구시리즈의 주된 목적은, BRICs 국가들이 체결한 FTA에 관하여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WTO 규범체제와 연계하여 그 특성 및 법적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FTA에 관한 법적인 분석과 WTO 체제의 관련 규범들에 대한 파악을 전제로 한다. 다만, FTA 또는 지역주의 일반에 관한 법적인 연구내용을 다른 본 연구시리즈들과 분배하여,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꾀하면서도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FTA를 포함한 각종 지역무역협정들은 그 목적과 범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들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특혜를 부여하고 관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무역규제들을 축소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역장벽 제거와 경제협력’이라는 목적을 가지는 지역무역협정들을 넓은 의미에서 FTA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러한 협정들의 협정문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시리즈 중에서 인도의 FTA 분석에 관한 제 3 편은,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 일반에 관한 법적 분석에서 출발한다. 이후 인도의 경제 상황 등을 BRICs 전체 및 WTO 체제와 연계하여 검토한다. 또한 인도가 SAFTA 및 APTA를 중심으로 체결한 각종 FTA 또는 이와 유사한 지역무역협정들에 관하여 전면적인 법적 분석을 통하여, 인도 FTA의 특성을 도출한다. 아울러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인도의 동방정책에 의한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상에 관해서도 법적인 관점에서 고찰한다.

WTO의 개발도상국 FTA에 관한 특별규정인 허용조항(Enabling Clause)의 내용을 분석하고, 인도의 FTA와 관련하여 이 조항의 적용요건과 적용가능성 및 그 사례를 검토한다. 이후 현재 국내에서 발효되고 있는 FTA의 내용들을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한-인도 CEPA의 추진에 따른 우리의 법적 대응책을 비관세 무역장벽, 특히 무역구제조치 관련 규범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제 2 장 FTA에 관한 법적 분석과 무역장벽

### 제 1 절 FTA의 법적 분석

#### 1. 의 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란, 당사국 사이의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 등의 제거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협정 또는 조약이다.

FTA는 1960년에 형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FTA는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체결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당시까지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던 미국이 몇 개의 FTA를 체결하였고,<sup>1)</sup> 이러한 미국의 입장 변화는 그동안 FTA에 큰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던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WTO의 성립과 함께 FTA가 체결되는 수는 크게 늘어났다.

FTA는 당사국 사이의 무역을 저해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거에 체결된 FTA의 내용은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의 상품무역에 관한 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또는 이와 관련된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많은 FTA는 기존의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 이외에도 서비스, 투자는 물론

---

1) 미국이 FTA를 체결하고 추진하는 것은 경제적 목적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FTA처럼 정치적인 관점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GATT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1980년대 미국의 FTA 추진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의 철폐 외에도 WTO와 같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체제의 추구, 쌍무적인 무역관계 개선과 균형 있는 무역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무역정책상의 목적이 있었다. 1990년대 들어 NAFTA가 발효되어 북미지역의 무역 자유화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미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였다[정인교,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대외정책연구원, 1998, 49~50면].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에 관한 다양한 무역규범 분야를 포괄한다. 이에 더하여 전자상거래, 노동기준, 환경 등 새로운 분야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sup>2)</sup>

이와 같이 FTA의 범위가 확대되는 주된 원인은, GATT 체제에서 이루어진 다자간 무역협상<sup>3)</sup>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각국이 협력의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sup>4)</sup> 그러나 FTA가 반드시 모든 규범들을 포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협정의 구체적인 범위는 체결국의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 2. WTO의 출범과 FTA의 변화

WTO의 출범으로 인하여 FTA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났다. WTO 출범 이전의 전통적인 FTA의 목적은 관세인하 또는 무역의 확대에 있었으나, WTO의 규범들이 무역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각국은 FTA를 단순한 무역규범이 아닌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또는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

2) 대표적 FTA인 북미지역의 NAFTA는 관세철폐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상계관세조치, 원산지규제,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분쟁해결, 환경, 노동, 수량제한금지, 관세평가와 세관수속, 기준과 인증, 위생식물검역, 일반예외, 합동위원회, 인적이동 등을 포괄하여 그 대상 범위가 넓다.

3) 다자간 무역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이란 무역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다수의 국가들이 모여 추진하는 무역협상을 의미하며, ‘라운드(round)’라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자간 협상의 목적은 국제무역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관세와 비관세장벽 등의 요소를 제거·완화하여 무역을 확대하고 각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국제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WTO 설립 이전 GATT 체제에서의 다자간 무역협상은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모두 여덟 차례 진행되었는데, GATT의 중요 목표가 관세의 인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논의를 관세 중심으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세수준은 점진적으로 인하되어 왔다. 특히 1964년의 케네디 라운드는 평균 35%, 1973년의 동경 라운드는 평균 33%, 1986년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도 평균 33%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졌다.

4) 김병섭,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추진 전략』,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의의와 전망□□, 200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심포지엄, 2003. 5. 13, 25면.

과거 FTA는 유사한 경제발전단계의 국가 사이에 체결되거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관세 등의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WTO 체제의 출범 이후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도 많은 FTA가 체결되었고,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국가들이나 서로 다른 지역주의에 속하는 국가들 사이에도 FTA가 체결되고 있다. 또한 두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양자간 협정의 방법이 FTA의 기본적인 체결방식이었으나, 여러 국가가 FTA를 체결하는 경우도 많아졌다.<sup>5)</sup>

WTO 출범으로 FTA의 대상 범위도 넓어졌다.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무역장벽의 철폐를 기본으로 하였던 기존 FTA의 틀에서 벗어나 투자보장협정, 조세조약, 상호인증협정, 경제협력협정을 포함하기도 하며, 노동과 환경의 문제들을 무역과 연계하거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sup>6)</sup>를 첨가하는 경우도 생겼다.

이와 같은 현상은 WTO 체제의 시작과 함께 FTA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 과거에는 FTA에 대하여 각국에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지역간 무역마찰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그러나 WTO 출범 이후에는 FTA의 체결에 따른 무역자유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강조되어, FTA를 통한 체결국 사이의 무역자유화가 WTO 차원의 무역자유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게 되었다.

### 3. FTA의 법적 성격 및 근거

FTA는 체결 당사자가 관세 등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무역의 확대를 위해 여러 조치를 약속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국제법적 기본 단

5) 현재 추진중인 FTAA는 북미지역과 남미지역의 34개국에 참여하고 있다.

6) 무역촉진과 원활화를 위한 조치에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정보의 공유,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인력·사회·문화의 교류 등이 있다.



위인 국가가 체결하는 조약이라고 할 것이다. 조약이라 함은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sup>8)</sup> 따라서 FTA은 조약의 성립요건<sup>9)</sup>을 충족하고 국내법상의 절차를 통해서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국제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국제경제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다.

FTA를 체결하는 경우 협정의 서명권자는 국가원수이거나 국가원수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이어야 하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FTA에 서명하는 경우에는 서명 후 체결국의 국가원수가 FTA의 효력에 국가가 구속받겠다는 비준을 하여야 한다.<sup>10)</sup> 또한 일반적으로 국가원수의 비준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sup>11)</sup>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 체결된 FTA는 국내법적인 근거를 가진다.

FTA에 대한 WTO 차원의 근거규정은 상품무역에 적용되는 GATT 제24조, 서비스무역에 적용되는 GATS 제 5 조, GATT 제24조 규정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하여 1979년 도쿄라운드에서 합의된 허용조항(Enabling Clause), GATT 제24조의 해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된 마라케시협정 부속서 1A 중 GATT

---

7) 물론 국가 이외에도 지역주의 경제 조직체가 FTA를 체결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결국은 FTA의 체결 조직체에 대하여 소속 국가가 권한을 부여하고 국내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가 FTA를 체결하는 것과 법률적 효과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8)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제 2 조 제 1 항.

9) 조약의 성립요건은 첫째, 조약당사자가 조약을 체결할 능력을 가질 것, 둘째, 조약을 체결하는 대표자가 조약체결의 정당한 권한을 가질 것, 셋째, 대표자간 하자 없는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조약의 내용이 가능하고 적법할 것, 다섯째, 조약이 국내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절차에 따라 체결될 것 등이다[김명기, □□국제법원론(하)□□, 박영사, 1996, 849면].

10)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73조].

11)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 60조 제 1 항].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등이 있다. 다음은 GATT 제24조의 주요 내용이다.

< 표 1 > GATT 제24조의 주요 내용

GATT 제24조	내 용
제 1 항 · 제 2 항	제24조는 동일한 관세영역에 적용되며, 서로 상이한 관세영역은 비록 동일한 관세주권에 속하더라도 다른 체약국으로 간주한다.
제 3 항	제24조는 인접국 사이에 국경인근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제 4 항	자발적인 협약으로 인하여 보다 밀접한 통합과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며, 관세동맹이나 FTA의 목적은 당사국 사이의 무역을 촉진하는 것이지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무역장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제 5 항	관세동맹이나 FTA 그리고 이를 위한 잠정협정에 있어서 협약당사국이 아닌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 상업적 규제가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높거나 제한적이어서는 안 되고, 잠정협정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설립계획을 갖추어야 한다.
제 6 항	제2조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관세의 인상이 관세동맹 당사국에 의하여 제안되었을 때에는 제28조의 보상과 교섭절차가 적용된다.
제 7 항	관세동맹이나 FTA 또는 이를 위한 잠정협정에 가입하고자 결정한 회원국은 이를 다른 회원국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협정의 검토 후 권고안을 작성하여 협정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하고, 협정당사국은 이러한 권고안에 따른 수정을 하여야만 협정들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제 8 항	<p>관세동맹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을 단일한 관세영역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고,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제(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0조에 의한 허용은 제외)는 구성지역의 모든 무역에 관하여 폐지된다. 관세동맹국은 제 9 항을 조건으로 비동맹국에 대하여 동일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규제를 적용한다.</p> <p>FTA는 관세 및 기타 상업적 규제(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0조에 의한 허용을 제외하고)가 구성지역의 모든 무역에 관하여 폐지되는 것이다.</p>
제 9 항	<p>제 1 조 제 2 항에 규정된 특혜는 관세동맹 또는 FTA의 형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지만, 협상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다.</p>
제10항	<p>제 5 항부터 제 9 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관세동맹이나 FTA 설립을 위한 제안도 회원국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인정할 수 있다.</p>
제11항	<p>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p>
제12항	<p>각 WTO 회원국의 지방정부가 위의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p>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체결되는 FTA는 협정체결국이 아닌 국가와의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제가 FTA의 체결로 인하여 그 이전의 규제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높지 않아야 하고, FTA의 체결국가 사이의 관세나 기타 규제가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분야에 걸쳐 철폐되어야 한다.<sup>12)</sup>

#### 4. FTA의 국내법적 효력

미국이나 EU와 같이 FTA가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별도의 국내 입법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한국과 같이 별도의 입

12)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시리즈 [러시아의 FTA 제 2 장]을 참고할 것.

법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 별도의 입법을 요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조약의 체결과 비준, 그리고 의회의 동의는 조약의 국내적 효력발생을 위한 요건이다.<sup>13)</sup> 따라서 조약의 체결 또는 비준과 의회의 동의는 국제법상 그 효력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국내법상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서명·비준되고 의회의 동의를 얻은 FTA는 국내법으로서 직접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국내 재판에서 FTA가 사안의 전제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FTA의 규정이 직접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sup>14)</sup> 또한 기존의 국내법이 제시하는 기준과 FTA의 체결로 인하여 생겨난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기존 국내법과 FTA 사이에 특별법·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 FTA 규정이 선택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EU와 같이 국내적 효력을 위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국가에서는 FTA의 체결이 곧 국내법적 효력의 발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sup>15)</sup>

FTA가 직접적인 국내법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완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FTA의 내용이 바로 적용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 내용이 지나치게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집행력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FTA라는 조약의 내용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관련 국내법이 개정절차를 밟지 않고

13)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 6조 제 1항].

14) 대법원도 조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별도의 입법조치를 하지 않고도 국내법으로서 직접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관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GATT의 직접적용을 인정하였다(1992. 7. 14, 대판 91누10763 ; 1998. 8. 21, 97누13115 사건 참조).

15)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국내입법을 촉구하는 의회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바로 효력이 상실되거나, FTA에 의해 직접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FTA의 이행을 위해서는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이 제정하는 등 법령의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sup>16)</sup> 결국 FTA가 국내법상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든 그렇지 않은 FTA를 체결한 당사국은 이에 따라 국내법 차원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제 2 절 FTA와 무역장벽

### 1. 무역장벽으로서의 관세

#### (1) FTA와 규범적 측면에서 관세의 중요성

GATT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주의의 대표적 유형인 관세동맹과 FTA는 관세 부과 원칙에서 차이가 있다.<sup>17)</sup> 관세동맹은 회원국 사이의 역내무역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합의한 공동대외관세(Common External Tariff, CET)를 부과한다. 따라서 관세동맹 역외국의 상품이 관세동맹 역내로 수입된다면, 회원국 중 어느 국가로 수입되든지 같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관세동맹과 비교해 볼 때, FTA에 있어서 관세와 관련하여 과생되는 문제점이 다양하다. FTA도 관세동맹과 마찬가지로 상대국과의 역내무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sup>18)</sup> 역외국가와의 무

16) 서헌재, □□국제경제법□□, 율곡출판사, 1996, 181면.

17) 지역주의의 발전단계별 유형 및 관세동맹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시리즈 [브라질의 FTA 제 2 장]을 참고할 것.

18) FTA를 체결한 후, 당사국 사이의 역내무역에 적용하는 관세를 대내관세(internal tariff)라 하고 역외국의 상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를 대외관세라고 한다. FTA를 체결한 국가 사이의 역내무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내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역에 대해서만 대외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역외국에게는 대외관세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FTA가 관세동맹과 다른 점은, 역외국에 대한 대외관세가 같은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들 사이에도 다르다는 점이다. 즉, 관세동맹에서는 회원국이 역외국에 대해 동일한 공동대외관세를 부과하지만, FTA에서는 원칙적으로 역외국에 대해 당사국들의 정책에 의하여 각기 다른 대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FTA 체결국은 FTA를 체결한 이후에도 자국에 가장 유리한 대외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이다.<sup>19)</sup>

관세와 관련된 FTA의 이러한 특징은 WTO 등 다자주의 규범과 조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동맹에서는 역내국 사이의 관세철폐와 역외국에 대한 동일한 관세부과라는 명료한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나 FTA의 경우에는 역내국 사이의 원칙적인 관세철폐와 예외적인 유예기간의 문제, 당사국마다 다른 역외국에 대한 대외관세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sup>20)</sup> 그리고 GATT 제24조의 위반가능성의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FTA는 국내 관세법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온다. 즉, FTA로 각국의 관세법은 변동이 불가피한데, 이것은 역내국에 대한 관세철폐와 역외국에 대한 관세부과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FTA를 체결한 국가는 협정의 유보사항과 관련하여 변동되는 대내관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최적의 대외관세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대내관세와 대외관세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

것이 원칙이지만, FTA의 체결과정에서 유보사항이나 이행기간을 설정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경우가 많다.

19) 정재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유인 - Grossman & Helpman 모형의 일반화』, □□재정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1, 51면.

20) 이것은 결국 최적대외관세의 설정과 원산지규정이 관련되는 문제로 귀결된다.

## (2) FTA의 최적대외관세

FTA를 체결한 이후에도 원칙적으로 당사국들은 역외무역에 대하여 여전히 자국에 유리한 개별적인 대외관세를 부과한다.<sup>21)</sup> FTA로 인한 경제여건의 변화는 당연히 각국의 대외관세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최적의 대외관세를 부과하는 기준도 당사국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된다.

FTA의 체결 이후 대부분의 국가는 대외관세를 인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FTA로 수출이 증가하여 국내 생산자들의 이윤도 증가하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의 목적이 점차 사라지므로 관세를 인하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FTA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대외관세를 높게 부과하면, 상품의 국내시장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의 당사국이 아닌 역외국 상품을 국내로 수입하려면 수입자는 높은 역외관세를 피해서 대외관세가 비교적 낮은 FTA의 다른 당사국으로 우선 상품을 수입한 후에 FTA로 인한 무관세 혜택을 받거나 축소된 역내관세의 혜택을 받아 국내시장으로 수입하려고 할 것이다.<sup>22)</sup>

FTA로 인하여 이와 같은 무역굴절 현상이 발생하고 다른 당사국이 이익을 얻는 무임승차효과가 발생하므로, 결국은 최종 수입국의 관세 수입은 감소한다. 따라서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에 높은 대외관세를 부과한다면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대외관세를 낮추는 것이 최적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sup>23)</sup>

---

21) 그러나 FTA에서 공동대외관세의 성격을 가지는 조치를 설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NAFTA 제308조에 의하여 반도체와 지방지역 네트워크 데이터처리 설비에 대해서는 1994년부터 무관세의 공동대외관세를 실시하고 있으며, 컴퓨터와 그 부품에 대한 대외관세를 조정함으로써 2004년까지 이들 제품에 대한 대외관세가 동일하게 된다.

22)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산지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3) 정재호, □□자유무역협정하의 최적 관세 및 관세 유예기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FTA 체결과는 별도로, 대외관세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WTO와 같은 다자주의 관세규범이다. GATT 체제 또는 WTO는 그동안 회원국의 일반적인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서 수차례의 다자간 협상을 실시하였고, 회원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다자간 규범을 형성하였다. GATT 제24조는 FTA 체결로 인하여 새롭게 부과되는 관세가 협정의 체결 이전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보다 높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점은 당사국이 FTA를 체결하고 대외관세를 설정하는데 있어서의 한계를 나타낸다.

실제로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대외관세를 인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관세인하가 FTA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자주의 관세인하협상의 결과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sup>24)</sup>

### (3) FTA의 대내관세 유예기간

FTA가 체결되면 원칙적으로 협정이 발효되는 순간부터 역내의 모든 상품에 대하여 관세가 사라진다. 그러나 자국의 상황에 따라 더욱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던 것을 일시에 제거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FTA에서는 협상을 통해서 대내관세 부과대상의 예외를 정하고 유보사항으로 이것을 규정하는데, 유보사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대내관세 제거의 유예기간이다. 즉, FTA 상대국과의 역내무역에 있어서 일정 품목에 대해 무관세로 전환하는 것을 일정기간 후로 연기하는 것이다.

FTA의 협상과정에서 관세유예 혜택의 품목과 기간을 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관세유예기간의 설정은 해당 분야의 대외관세 수준,

2001, 167면.

24) FTA와 주요국의 대외관세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 FTA에 관한 법적 분석과 대응□□, 인텔에듀케이션, 2004, 120면 이하]를 참고할 것.



당사국의 무역규모, 역외국가와의 무역규모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요소 외에도 당사국의 협상력, 대외여건의 변화, FTA 자체의 이해관계 등이 영향을 준다.

다자주의 차원에서는 유예기간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WTO 권고안에 의하면 대내관세 유예기간은 최장 10년으로 한다. WTO는 대내관세 유예기간이 10년보다 길어지면 FTA 체결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FTA에서 대부분의 관세 유예기간은 1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하게 설정된다.<sup>25)</sup> 대내관세 유예기간의 설정으로 관세장벽을 이용하여 보호받고 있는 자국 산업은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거나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는다.

대내관세 유예기간은, 설정된 기한이 도래하면 관세가 제거되는 기본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관세를 인하할 품목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로 관세인하일정을 설정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관세인하를 미루다가 그 이후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같은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하거나, 수입할당량을 정하여 한정된 양에 대해서만 관세를 인하하여 수량조절을 통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이밖에 계절관세, 혼합관세를 적용하는 등 관세인하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가능하다.

대내관세 유예기간의 설정에 관한 다양한 방법과 그 취지를 고려하면, 관세유예기간의 설정은 취약산업의 보호나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국내법규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sup>26)</sup> 한국도 한-칠레

---

25) 예외적으로 10년을 초과하는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NAFTA에서는 멕시코의 민감한 품목에 대해 15년 내지 18년의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하기도 하였으며, 칠레와 캐나다의 FTA과 칠레와 MERCOSUR 사이의 FTA에서도 칠레는 밀과 밀가루에 대해 18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였다.

26) FTA와 주요 FTA의 대내관세 유예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의 [김봉철, 앞의 책, 123면 이하]를 참고할 것.

FTA의 국내적 수용과 관세 적용을 위해 한-칠레 FTA 관세특별법(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후의 모든 FTA 체결에 따른 관세적용을 위한 일반적인 관세특별법인 FTA 관세특별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sup>27)</sup>

## 2. 비관세 무역장벽의 중요성

GATT의 성립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여덟 차례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각국의 관세는 평균 약 35%에서 약 4% 수준으로 인하되었다. 게다가 FTA 등 지역주의의 영향도 각국의 관세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결국 각국은 관세라는 무역장벽을 상당부분 제거하였으며, 관세의 축소는 무역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 중반부터 비관세 무역장벽이 확대되어 관세의 축소를 통한 무역확대 효과를 줄이기 시작하였다. 원산지규정, 통관규정, 위생·검역 기준, 기술규범,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조치, 보조금 상계관세조치 등 비관세 무역장벽은 GATT의 규정과 WTO의 규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할 수 있는 자국 산업의 보호수단으로 남아있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비관세 장벽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였다.

비관세 장벽의 증가는 다자주의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의 상황에 이어서 일어났기 때문에, 국제무역규범에서 규제완화에 따른 무역확대효과를 더욱 현저하게 경감시켰다. 실제로 각국은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이용하고 있다.<sup>28)</sup>

27) 김봉철, 『FTA 정책의 추진과 이행을 위한 통일적 법규개선에 관한 연구』, □□한미 FTA 논문공모□□, 외교통상부 한미 FTA 추진위원회, 2006. 12, 22~23면.

28) 김관원, 『반덤핑 폐지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검토 - 지역무역협정에 있어서의 반

FTA의 체결 증가로 위와 같은 추세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FTA로 인하여 당사국은 역내무역에 있어서 대체로 다자주의 차원의 관세수준보다 더욱 낮은 관세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으며, 비관세 무역장벽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당사국 사이의 무역장벽의 축소로 인한 역내무역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역외무역에서는 새로운 무역장벽의 발생과 무역의 축소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무역장벽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조치, 보조금 상계조치와 같은 무역구제제도에서는 FTA의 확대로 인하여 매우 복잡한 문제가 나타난다. 무역구제제도는 각국이 WTO 체제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sup>29)</sup>이기 때문에 각국의 입장 차이로 분쟁이 빈번한 부분이다. 게다가 FTA가 가지고 있는 역외국에 대한 배타성은 무역 분쟁의 가능성을 한층 높인다. 즉 배타성에 바탕을 둔 차별적인 무역구제조치로 인한 역외국의 피해, 그리고 각 FTA마다 다른 무역구제조치의 요건과 조치유형 등은 WTO 규범과의 조화라는 문제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역외국에 대해 차별적일 수 있는 FTA 체결 당사국 사이의 무역구제제도가 GATT 제24조의 내용인 ‘제한적인 무역규제를 일반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인가 하는 점이 무역구제제도와 관련하여 WTO와 FTA 사이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무역구제제도 중에서도 반덤핑조치와 보조금 상계조치는 상대방 국가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규제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FTA와 관련하여 서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

덤핑정책과 경쟁정책』, □□외법논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338면.  
29) 무역구제제도는 덤핑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이나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산업을 받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당해 수입품에 대해 수량제한이나 관세부과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며, GATT 및 WTO 규범으로 보장된 거의 유일한 국내산업 보호장치이다[변중립, 『반덤핑제도의 이해와 활용방안』, □□월간 기계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01. 4, 67면].

그러나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상대방의 불공정한 무역행위가 원인이 아니라, 자국 산업의 긴급한 보호 필요성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반덤핑 조치나 보조금 상계조치와는 다른 문제가 나타난다.

### 3. 긴급수입제한조치

#### (1) 의 의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는, 특정물품의 수입량이 증가함으로써 동종 혹은 직접 경쟁적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에 그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구제조치이다. 수입제한의 방법은 수입수량규제, 수입가격규제, 행정적 규제 등이 있다. 수량규제에는 수입쿼터, 수출자율규제 등이 있고, 가격규제로는 관세인상, 가격감시제, 최소가격설정제 등이 있으며, 행정적 규제로는 수입허가, 통관절차, 수입감시제도 등이 사용된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피해를 입은 국내 경쟁산업에 적절한 조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수입규제를 통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국내 산업이 국제경쟁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국제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국제경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국내경제에 대한 충격을 국가가 차단함으로써 국내의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원만한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GATT 제19조는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이 체결되어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상 수입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

하기 위해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발전’(unforeseen developments)으로<sup>30)</sup> 특정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의 동종 또는 경쟁 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주거나 피해의 위협이 있어야 하고,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수입의 증가는 수입량의 절대적 증가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증가도 포함한다.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는 수입증가량, 시장점유율, 판매량, 생산량, 생산성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시간적으로 급박한 경우에는 예비판정에 근거하여 잠정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잠정조치는 반드시 관세인상의 방법만이 가능하다. 긴급수입제한조치로서 수입국은 수량제한이나 관세인상을 통한 수입의 제한과 산업구조조정 지원조치를 한다.

일반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대상범위를 기준으로 다자간 조치(global measures), 양자간 조치(bilateral measures), 지역적 조치(regional measures)의 형태로 구분된다.<sup>31)</sup>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모든 수입원을 대상으로 조치를 발동하는 것으로서 WTO의 최혜국대우 원칙과 일치한다.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에 따르면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이를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필요한 정도만 인정되고,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상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조치로서, 무역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발동요건, 사전협의, 보상

---

30) 원래 GATT 제19조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수입의 증가가 협정의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태의 결과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후 제정된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에는 이러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혼합분유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사건과 아르헨티나의 신발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사건에서 WTO 패널 및 상소보고서는 ‘예상하지 못한’의 요건을 조치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별도의 요건이라고 판정하였다.

31) 다자간 조치를 ‘포괄조치’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양자간 조치를 ‘쌍무조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수준 등을 상당히 탄력적으로 규율한다. 지역적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다자간 및 양자간 조치 이외의 모든 경우로서 수입국 또는 수출국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sup>32)</sup>

## (2) FTA의 긴급수입제한조치

GATT 제19조와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 2 조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는 경우 수입원과는 상관없이 특정 상품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다자간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 2 조 주석 1 33)을 통해 관세동맹에서는 지역간 조치도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FTA에도 적용된다고 본다.<sup>34)</sup>

대부분의 FTA에서는 일반적으로 WTO 협정과 유사한 다자간 조치를 인정하고 있으나, 양자간 조치 또는 지역간 조치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NAFTA는 10년의 이행기간에 한하여 협정 체결국의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국내 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양자간 조치가 가능하며, 다자간 조치의 경우에도 협정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상당한 양이 아니고 심각한 피해의 주요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

32) EU가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EU내 일부 지역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이 가능하며, EU와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의 경우도 EU내 일부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33) Kaye Scholer · 최진혁, 『자유무역협정(FTA)하에서의 세이프가드제도 운용방안』, □□무역구제□□ 7호, 무역위원회, 2002. 7, 41면.

34) 한국과 미국 사이의 탄소강관 긴급수입제한조치 사건에서, 패널은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 2 조 주석 1의 마지막 문장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GATT 제 19조와 GATT 제24조 제 8 항의 관계에 대한 해석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관세동맹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제24조 제 8 항(a)만이 아니라 FTA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제24조 제 8 항(b)를 포함한 제24조 제 8 항을 지칭하고 있는 만큼, 주석 1의 첫 세 문장이 관세동맹의 경우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마지막 문장에 의해 FTA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본 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봉철, 『한국의 자유무역협정과 무역구제법규의 개편』, □□무역구제□□ 13호, 무역위원회, 2004. 1, 206면]을 참고할 것.

제되도록 규정하였다. EC-남아프리카공화국 FTA는 지역간 조치를 취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다자간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칠레-멕시코 FTA는 양자간 조치와 다자간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sup>35)</sup> EC-멕시코 사이의 FTA는 WTO 협정의 적용가능성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양자간 조치만을 허용하고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 요건 중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전’(unforeseen developments)은 대부분의 FTA에서 명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NAFTA는 양자간 조치에 대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수입의 증가가 협정 체결의 결과에 의한 것이면 된다고 한다.<sup>36)</sup> 또한 EC-멕시코 FTA는, 피해를 야기하는 수입증가의 원인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 없이 수입증가가 산업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요건이 충족된다고 규정하는데,<sup>37)</sup> 이점은 협정 체결국에게 조사의 부담을 줄이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FTA 체결국에 소규모의 무역국가 또는 개발도상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 9 조처럼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거나 예외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NAFTA는 다자간 조치를 취하는 경우 경제규모나 개발도상국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량에 의해 적용배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sup>38)</sup> 현재 논의 중인 FTAA 협정안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전체 수입의 8% 이하가 되면 그 적용을 배제한다.<sup>39)</sup> 이것은 개발도상국가인 남미지역 국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이다.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협의의 시기에 있어서,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12조는 협의가 조치의 최종 결정이전에 행해져야 하

---

35) 칠레와 멕시코의 FTA 제 6 장 제 2 조 · 제 3 조[신용대 · 서동혁, □□칠레-멕시코 · 남미 공동시장(Mercosur) 자유무역협정□□, 산업연구원, 1999, 69 ~ 72면].

36) NAFTA 제801조.

37) EC-멕시코 FTA 제15조.

38) NAFTA 제802조.

39) FTAA안 제10조.

고 조사는 협의과정에서 지속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EFTA-터키 FTA는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이가 종료되기 전에는 조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한다.<sup>40)</sup> EC-남아프리카공화국 FTA는 감시절차의 발동 이후 실제 조치의 개시 이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협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양자의 입장을 절충하고 있다.<sup>41)</sup>

피해의 기준과 관련하여, NAFTA는 WTO 협정과 마찬가지로 수입의 증가가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초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EC-남아프리카공화국 FTA는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에 더하여 ‘국내경제 상황에 심각한 악화’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조치가 가능하다고 한다.<sup>42)</sup> EC-멕시코 FTA와 EFTA-터키 FTA에서는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의 우려’로 인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불가능하지만,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이외에도 ‘국내경제의 일부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경우에도 조치가 가능하다.<sup>43)</sup>

긴급수입제한조치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GATT 제19조는 GATT 체결에 따른 의무 또는 양허의 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WTO 협정 제 5 조는 수량제한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NAFTA의 경우, 양자간 조치에 관해서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부여의 정지 또는 관세 인상만을 허용하고 있으나,<sup>44)</sup> 다자간 조치에 관해서 WTO와 같이 수량제한조치도 취할 수 있다.<sup>45)</sup> EC-멕시코 FTA는

---

40) EFTA-터키 FTA 제23조.

41) EC-남아프리카공화국 FTA 제26조.

42) EC-남아프리카공화국 FTA 제24조.

43) EC-멕시코 FTA 제15조 제 1 항.

44) NAFTA 부속서 제801조.

45) NAFTA 제802조.



특혜관세 적용의 정지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칠레-멕시코 FTA나 카리브 공동시장(CARICOM)-콜롬비아 FTA는 특혜관세 적용의 정지와 관세인상도 허용하고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은 FTA마다 다양하다. WTO 협정은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기간동안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NAFTA의 경우 10년의 이행기간 동안 3년 이내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행기간 이후에는 수출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조치가 가능하다. EC-멕시코 FTA는 원칙적으로 1년 예외적으로 최대 3년까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칠레-멕시코 FTA는 예외 없이 1년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EC-남아프리카공화국 FTA는 남아프리카에 한정하여 국가의 유치산업이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산업에 한하여 12년 동안 4년을 초과하지 않는 조치를 할 수 있다.<sup>46)</sup>

#### 4. 반덤핑조치

##### (1) 의 의

덤핑(dumping)이란 수출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에 있어서 덤핑행위는 개별 국가의 경제에 피해를 주고 국제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WTO는 GATT 제 6 조 및 WTO 반덤핑 협정을 두어 덤핑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로 간주하고 규제하고 있다.

반덤핑(Anti-dumping)조치는 특정물품의 불공정한 덤핑수출에 대하여 수입국에서 특별관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덤핑의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역구제조치이다. 따라서 반덤핑조치는 일반적인 관

---

46) EC-남아프리카공화국 FTA 제25조.

세조치와는 다른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sup>47)</sup>

첫째, 반덤핑조치는 차별적으로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구제수단이다. 일반 관세는 수출국·수출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덤핑조치의 관세는 특정국·특정인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부과하게 된다.

둘째, 반덤핑조치의 부담은 수출국으로 전가된다. 반덤핑조치의 원인이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한 수출국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수출국으로부터의 항의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셋째, 반덤핑조치는 큰 수입제한효과를 가진다. 반덤핑조치는 사전에 알고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예기치 못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것이다.

넷째, 반덤핑조치는 관세부과가 용이한 편인데, 그 이유는 반덤핑관세가 여론상의 부담도 적고 부과방식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WTO 반덤핑 협정상 반덤핑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덤핑수입(dumped imports)이 있고,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나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또는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인 지연이 존재하며, 국내산업의 피해가 덤핑수입으로 유발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덤핑의 최종적인 판정이 있기 이전에 잠정적인 관세조치가 가능하며, 수출업자의 적절하고 자발적인 가격인상 약속이 있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나 반덤핑조사를 중단하거나 종결한다.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수입국은 덤핑에 대하여 일정액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 (2) FTA의 반덤핑조치

일반적으로 FTA는 반덤핑조치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제도에 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와는 다르게 WTO 규범의 내용을

47) 조영정, □□국제통상법의 이해□□, 무역경영사, 2000, 154면.

대부분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 유형에 있어서도 반덤핑조치는 양자간 조치와 다자간 조치를 구별하는 것이 긴급수입제한조치처럼 중요하지 않다. WTO의 반덤핑 규범이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규범보다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반덤핑조치의 목적이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달리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FTA 당사국 사이에도 특수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sup>48)</sup> 그러나 FTA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각국은 WTO 반덤핑 협정을 발전시켜 더욱 구체화하거나, 필요한 부분에 관한 예외 조항을 만들기도 한다.<sup>49)</sup>

반덤핑조치는 상대방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요건인 ‘국내산업에 해를 줄 수 있는 특별한 또는 예상하지 못한 무역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일정한 이행기간이나 적응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의 FTA에서 반덤핑조치에 관해서도 FTA에서 이행기간을 설정하려는 경우가 있다. FTAA 협상안을 보면 북미지역과 남미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조율하고 적응시키기 위하여 이행기간을 설정하는 부분이 많은데, 반덤핑조치에 대한 이행기간의 설정도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

칠레-캐나다 FTA처럼 당사국 사이에서는 반덤핑조치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다. 반덤핑조치가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FTA에 충실하기만 한다면 당사국 사이의 무역에 있어서는 불

---

48) Kaye Scholer,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Rules in Free Trade Agreements - FTA Negotiation Workbook,” Korea Trade Commission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2001, p. 14.

49) 덤핑과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FTA의 접근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U나 EFTA 등에 나타나는 유럽식의 접근방법은, 긴급수입제한제도와 마찬가지로 협상절차에서부터 대체로 WTO 규범의 내용을 협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그 규율범위가 비교적 좁다. 그러나 NAFTA로 대표되는 다른 유형은 WTO 규범의 내용을 확인하면서도, EU 방식보다는 폭넓게 수출국 사인과 협정 체결국 사이의 문제, 그리고 FTA 당사국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부분까지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 규율한다.

공정한 무역행위가 있을 수 없다고 가정하거나, 반덤핑조치 등의 보복성 무역조치 보다는 FTA가 설정한 분쟁해결방법으로 당사국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반덤핑조치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반덤핑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을 FTA 당사국의 상품에도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점도 문제이다. 이점은 어느 FTA의 당사국이 국내반덤핑규범을 다른 FTA 체결국이나 비협정국에 언제 적용할 것인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하다.

호주-뉴질랜드 FTA인 ANCERTA 제 4 조는 상대국의 상품에 대해서 반덤핑법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으며, 양국은 1990년 7월 이 규정을 시행하는 국내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캐나다-칠레 FTA M-03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덤핑에 관한 국내 무역법규를 다른 FTA 체결국에 적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특별한 경우’에는 ‘최근의 무역조건에 대한 심각한 변화’가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코스타리카-캐나다 FTA는 당사국의 반덤핑 관련 국내법규가 WTO 규범에 합치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며,<sup>50)</sup> NAFTA 제1904조는 협정의 내용을 협정 당사국의 국내법에서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FTA 당사국의 반덤핑 관련 국내법규의 신설이나 개정을 다른 당사국이 검토할 권한이 있는가에 관하여, NAFTA는 당사국의 새로운 무역법규나 개정된 무역법규를 분쟁해결절차와 협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sup>51)</sup> 반면에 EC-멕시코 FTA는 이러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으나, 당사국의 무역규범은 WTO 규정에 합치하여야 한다고 한다. 코스타리카-캐나다 FTA도 EC-멕시코 FTA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이를 위한 지침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캐나다-칠레 FTA는 당사국 사이의 반덤핑법규 적용은 금지되지만, 무역구

50) 코스타리카-캐나다 FTA 제 7 조 제 1 항.

51) NAFTA 제1902조 제 2 항.

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자간 조치 또는 당사국의 무역장벽 제거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협의하여 특정한 지침을 설정한다고 규정한다.<sup>52)</sup>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확정하기 위해서 고려할 요소에 관하여 나열하고 있다.<sup>53)</sup> 이에 대해 FTA에서는 WTO 반덤핑협정에 나열되어 있는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거나, 당사국이 자유롭게 고려할 요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카리브 공동시장(CARICOM)은 덤핑에 의한 피해를 특정한 요소나 특정한 평가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사국이 자유롭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54)</sup>

어느 한 분야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발동된 반덤핑조치가 경쟁력 있는 다른 국내산업이나 국내산업이 아닌 경제요소에 대하여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국가기관은 덤핑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산업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해서 WTO 규정은 관련 소비자나 제3자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데, FTA 역시 반덤핑조치에 따른 경제적 영향의 평가를 조치 전에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NAFTA 부속서 제803.3조는 관련 기관이 반덤핑조치로 인한 공적 이익(public interest)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드시 문제된 상품의 소비자 또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들로부터 의견을 접수하도록 한다.

FTA가 반덤핑조치에 관한 독자적인 분쟁해결기관을 포함하여야 하는 점도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WTO 반덤핑협정은 분쟁에 관한 독자적인 해결기관을 구성한다고 규정하며,<sup>55)</sup> EC-남아프리카공화국 FTA 제23조나 NAFTA는 반덤핑조치에 관한 독자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명

---

52) 캐나다-칠레 FTA 제M-05조.

53) WTO 반덤핑 협정 제3 조.

54) CARICOM 제30조.

55) WTO 반덤핑협정 제13조.

시하고 있다. 그러나 코스타리카-캐나다 FTA는 반덤핑조치 분쟁에 관한 독자적인 분쟁해결기관을 두지 않고, 당사국이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56)</sup>

## 5. 보조금 상계조치

### (1) 의 의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의 산업 및 경제활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말한다. 보조금 지원은 고용안정, 수출촉진, 중소기업보호, 첨단산업육성, 환경문제의 해결, 연구개발지원, 지역개발 등 다양한 목적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보조금은 단순히 개별기업에 일정량의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지만, 조세의 감면이나 금융상의 우대조치와 같이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방법도 있다.

무역과 관련하여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수출보조금과 생산보조금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는 국제무역상의 규제측면에서 허용보조금, 조치가능보조금, 금지보조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많은 국가에서 자국 산업의 보호와 자국수출의 지원수단으로 보조금을 이용하고 있다.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는 제품의 생산 또는 수출에 부여된 수출국의 보조금으로 인하여 수입국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상계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별 관세를 의미하며 보조금에 대한 주요한 무역구제수단이다.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의 지급으로 경쟁력이 강화된 상품이 자국으로 유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해당 상품에서 보조금만큼 상계관세를 부여하여 보조금 지급효과가 상쇄되도록 하는 것이다.

<sup>56)</sup> 코스타리카-캐나다 FTA 제 7 조 제 1 항.

보조금에 대한 상계조치는 GATT 설립 이후부터 국제적인 차원에서 규율되었다. GATT 제16조에서는 보조금에 관하여, 제6조에서는 상계관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79년 도쿄라운드에서는,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VI, XVI and XXIII of GATT)이 마련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이 제정되었다.

상계조치의 발동을 위해서는 보조금의 성격에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 특정성이란 보조금의 수혜자격과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조건을 사전에 설정하지 않고 특정기업, 특정산업 또는 특정지역의 산업이나 기업에만 불공정하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WTO 보조금 상계조치 협정상 상계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의 혜택으로 생산된 물품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어야 한다. 또한 보조금과 실질적인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와 인과관계의 요건은 반덤핑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sup>57)</sup>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 지급으로 피해가 초래된다고 판정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무차별적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 (2) FTA의 보조금 상계조치

보조금에 대한 상계조치는 반덤핑조치와 마찬가지로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수입국의 무역구제조치라는 점에서 기본적 성격이 같기 때문에, FTA와 관련하여 반덤핑조치가 가지는 문제점은 보조금 상계

---

57) 즉, 반덤핑조치와 마찬가지로 상계조치에도 잠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일 수출국 정부가 보조금을 철폐 또는 제한하거나 이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조치를 취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또 수출업체가 수출가격을 조정하기로 약속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정지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조치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즉, 보조금 상계조치를 규정한 FTA 체결국의 국내법을 다른 협정 당사국의 상품에 적용할 것인가, 협정 당사국이 보조금 상계조치 관련 법규를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것을 다른 당사국에서 검토할 권한이 있는가, 피해를 확정하기 위해 고려할 요소를 FTA로 제한할 것인가, 보조금 상계조치가 다른 국내 산업이나 국내 산업이 아닌 경제요소에 대하여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를 취해야하는가 등의 문제와,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FTA에서의 보조금 상계조치의 문제는 반덤핑조치와 다를 바 없이 FTA의 체결과정에서 또는 이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검토할 문제가 된다.

대부분의 FTA에서는 반덤핑조치와 병행하여 보조금 상계조치규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거나 반덤핑조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보조금 상계조치에 관해서도 준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반덤핑조치와 보조금 상계조치가 성격이 유사하고 FTA에서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보조금 상계조치를 규율하는 과정에서 반덤핑규정과 다소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캐나다-칠레 FTA M-05조는 반덤핑조치와 보조금 상계조치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고 있으나, (c)항에서는 당사국 사이에 반덤핑조치 제거의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고 규정하여 보조금 상계조치는 제외하고 있다. 이것은 각각의 FTA 당사국들이 처한 상황과 협상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제 3 장 BRICs 국가로서 인도

### 제 1 절 BRICs

#### 1. BRICs의 출현과 의미

최근 들어 BRICs라는 용어는 세계경제에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BRICs는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의 영문 국가명 첫 글자를 묶어서 만든 단어이다. 2003년 10월 미국의 투자자 문화사인 Goldman Sachs가 작성한 보고서<sup>58)</sup>는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위 4개국이 각 대륙을 대표하여 신흥경제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향후 세계경제의 구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BRICs의 경제규모는 2039년에 현재의 주요 선진국들인 G6(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합친 경제규모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는 중국은 2015년에 일본을 추월하고 2039년까지는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보고서는 성장 속도가 가장 느린 브라질도 2040년까지는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의 경제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58) 이 보고서는 [Dreaming with BRICs: The Path to 2050, Global Economics Paper No. 99, Goldman Sachs, 2003]이며,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추세 속에서 장기적으로 개발도상국 경제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각 대륙별로 가장 중요한 개도국들을 뽑아 경제성장 추세를 전망하였다. 또한 2005년 12월에 발표된 'How Solid are the BRICs?'라는 보고서에서는 BRICs 국가들의 최근 수년간의 성장세가 기존의 예상을 넘어서는 속도라고 재확인하였다[이동휘, 『BRICs의 국제 정치경제적 중요성과 우리의 대응』,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6. 11. 10, 2면].

&lt; 표 2 &gt; BRICs의 경제성장을 전망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브라질	0.5	4.9	2.3	3.1	3.7	3.6	3.8	3.9
러시아	7.3	7.2	6.4	6.4	5.2	4.5	4.1	4.0
인도	8.6	7.5	8.4	7.6	7.2	6.8	6.4	6.3
중국	10.0	10.1	9.9	10.6	9.0	8.3	8.0	7.8

BRICs 국가들의 공통점은, 이들 국가들이 모두 인구와 국토면적에서 세계 7위권 내에 속해있는 대국이라는 점이다. BRICs 4개국을 합한 인구 점유율은 세계의 약 42.5%, 국토면적은 약 28.7%에 달한다. 또한 경제규모는 2004년 국민총소득을 기준으로 중국이 2위, 인도가 4위, 브라질이 9위, 러시아가 10위 등으로 BRICs 4개국이 모두 10위권 내에 포함되고, 이 수치는 세계 전체의 약 24.6%에 해당한다. 한편 BRICs 국가들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등의 매장량이 풍부하고 생산량도 많다. 농산품에서도 브라질이 사탕수수, 중국이 쌀, 인도가 밀에서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다. 이밖에도 인구의 평균연령이 선진국들보다 낮아 미래의 노동력 공급에서도 우위를 보일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 4개국은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언제나 대국들로 인식되어 왔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개발 국가들로서 상대적으로 별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국가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세계를 주도할 새로운 대국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것이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최근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하면서 세계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많은 관심을 모았다.

대외경제의 비중이 매우 큰 한국의 입장에서 세계경제의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BRICs의 부상은 이미 상당 부분 현실로 다가왔으며, 이는 중국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에게는 제 1의 무역 및 투자대상국이 된 점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 2. BRICs 경제의 성장원인

BRICs 경제가 주목받는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이 국가들이 추진해온 시장지향적 개혁, 개방정책을 들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급속한 증가와 수출확대가 역시 큰 역할을 하여 왔다. 또한 선진국의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 이 국가들의 높은 인구증가율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sup>59)</sup>

### (1)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

최근 BRICs의 인상적인 성장은 공통적으로 각국의 내부에서 시장지향적인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되어 온 점과 관련이 깊다. 중국의 경우 1970년대 말부터, 그리고 인도와 러시아는 1990년대 초부터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쪽으로 개혁과 개방정책이 추진되어 온 결과 외국인투자의 유입이 늘어나고 산업과 무역이 확대되면서 빠른 성장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브라질은 1990년대부터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수행해 오고 있다.

과거 BRICs는 사회주의 정책(러시아, 중국) 또는 수입대체 위주의 공업화 정책(인도, 브라질)을 추진해 왔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경제적인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해왔다. 그

59) 주동주, □□신흥 경제대국 BRICs와 한국경제□□, 산업연구원, 2005. 12, 22면.

런데 20세기의 최후반기에 들어서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장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 표 3 > BRICs의 개혁개방정책

	내 용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폐개혁을 통한 경제안정화 정책 추진</li> <li>- 공공부채 축소와 물가안정을 최우선</li> <li>- 연금 및 세제개혁으로 정부지출 축소</li> </ul>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자유화와 사유화</li> <li>- 변동환율제 도입, 상품가격 및 임금에 대한 국가통제 철폐, 무역 자유화</li> <li>- 시장경제 정착과 기업 활동을 위한 제도 및 법규의 개혁</li> </ul>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에 대한 국가통제의 완화와 대외개방</li> <li>- 통제완화 - 산업인가제도 철폐, 독점규제 완화, 시장진입 및 퇴출장벽 완화,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 확대</li> <li>- 대외개방 - 수입규제 완화, 관세 인하, 외환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 유치</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유기업 주식화, 농업 집단화 해체, 임금에 시장 논리 도입 등 소유와 분배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경제 도입</li> <li>- 조세 및 금융제도 개혁으로 사유화와 상업 활동의 자유화 촉진</li> <li>- 무역의 국가독점 완화, 외국인투자·관광·차관 등에 대한 규제 완화</li> <li>- 경제특구 및 경제기술개발구 등의 설치</li> <li>- WTO 가입과 각종 국제행사 유치 등 대외개방 가속</li> </ul>

각국마다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성과가 다르기는 하지만, 뚜렷하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는 과거의 국가 중심 경제체제에서 시장 중심 체제로의 전환과 세계경제에 대한 개방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적극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구소련이 붕괴되고 사회주의경제의 실패가 확인된

1990년대 이후로는 세계화의 물결에 이들 국가들도 적극 동참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2) 외국인투자 유입과 수출 확대

최근 BRICs 각국의 주목할 만한 경제 성장은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의 유입에 의한 산업 성장과 수출 신장에 힘입은 바 크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중국과 인도의 인상적인 성장에 외국인투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외국인투자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크게 늘어왔다.

중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외국인 직접투자가 연간 30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1990년대 후반에는 400억 달러를 넘어서고, 2002년부터는 5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535억 달러를 기록하여 미국, 프랑스 등을 제치고 사상 최초로 세계 1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국이 되었는데, 2005년에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액수는 724억 달러가 되었다. 인도의 경우는 1990년대 초반부터 외국인 직접투자가 10억 달러를 넘어서고 1990년대 후반에 20억 달러를 넘어섰다. 다시 2001~2002년에는 30억 달러를 넘어서고 2005년에는 66억 달러로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 개방정책 초기부터 외국인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각 산업 부문의 빠른 성장과 수출 확대가 이루어져 왔고, 이것이 두 국가 경제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sup>60)</sup> 2005년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는 146억 달러였고, 브라질은

60) 중국의 수출은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줄곧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다. 개방정책 초기인 1979년에 100억 달러를 처음 넘어섰던 수출은 1994년에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4년에는 5,934억 달러를 기록하여 25년 만에 무려 44배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차지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은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에 외국인 투자가 매우 큰 기여를 해왔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의 경우도 개방정책 도입 이

15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sup>61)</sup> 러시아와 브라질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의 증가 추세가 일정하지 않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두 국가의 경우도 최근 수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다.

### (3) 인구증가

BRICs 경제의 성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노동력의 공급을 나타내는 인구의 증가이다. BRICs의 인구 변동 전망을 본다면, 러시아의 경우 2000년 이후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중국은 2040년 이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도와 브라질은 2050년까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경부터는 인도가 중국을 추월하여 세계 제 1위의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선진국의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BRICs의 인구 증가 추세는 그 자체가 BRICs 경제의 부상에 커다란 동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sup>62)</sup>

## 3.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BRICs 국가들은 동서 냉전시대에 미국 중심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립하던 국가들이었거나 최소한 자립적 노선을 추구하였다. 이들이 현

---

후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각 산업 부문의 성장과 수출 확대에 큰 기여를 해왔다. 특히 최근 인도 경제의 성장을 상징하는 IT 산업의 빠른 발전에 외국인투자가 결정적 역할을 해왔음은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

61) 조양현, 『OECD 회원국 및 신흥경제권의 2005년도 외국인 직접투자 유출입 동향 분석』, □□수은해외경제□□, 2006. 8, 14면.

62) 특히 브라질의 경우 다른 BRICs 국가들보다 낮은 연평균 3~4% 내외의 성장 추세하에서도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인구증가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는 모두 개혁과 개방의 정책을 통해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적극적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구체화되어 온 상황은 우선 BRICs 각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현황에서 드러난다. 4개국 모두 최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선진국들이다. 이는 BRICs 국가들이 이미 미국 등 기존의 선진국들과 경제적 이해를 공유하면서 세계경제 체제에 깊숙이 편입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세계 3위의 무역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그 자체가 높은 경제성장으로 무역 수요를 창출하면서 세계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BRICs 각국의 주요 국제기구 가입 현황도 이들 국가들이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우선, 구소련의 몰락 후 이를 승계한 러시아가 IMF와 World Bank에 가입한 점은 사회주의체제의 종주국이 자본주의체제의 일원으로 편입하였음을 시사한다.<sup>63)</sup> 러시아는 GATT를 승계한 WTO에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현안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 지체되고 있다.<sup>64)</sup>

중국은 IMF와 World Bank에는 일찍 가입한 상태였으나, WTO의 가입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렸다. 중국은 1983년 GATT의 옵서버 자격을 얻은 뒤, 1986년에 가입을 정식 신청했으나 미국 등 회원국들과의 이견으로 성과를 얻지 못했다. WTO 출범 후인 1999년이 되어서야 미국과 협상이 타결되었고, 2000년에는 유럽연합과 협상을 마친 후 실무 작업을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마침내 중국의 WTO 가입이 승인되었다.<sup>65)</sup>

63) 구소련은 이 체제에 대항해 COMECON 체제를 주도하면서 동맹국 경제를 이끌어 왔었다.

64) 현재 러시아의 WTO 가입 승인을 놓고 이견이 빚어지고 있는 주요 사안은 농업 및 에너지부문에 대한 보조금 삭감, 금융, 보험, 통신시장의 개방 등이다.

65) 이 밖에 개방 이전인 1977년에 21개의 국제기구와 71개 비정부기구에 가입하고 23개의 조약에 서명하였던 중국이, 1994년에는 50개의 국제기구와 955개의 비정부

IMF와 World Bank, 그리고 WTO 등의 국제기구에 가입한다는 것은 미국 주도의 국제경제체제에 동맹국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는 이를 통해 무역과 금융에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무역에서는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 대우에 의해 회원국들로부터 무차별적인 관세 인하가 자동 적용되며, 금융에서는 차관 및 투자 유치가 한결 쉬워진다는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중국 역시 WTO 회원국들에게 관세를 인하하고 각종 비관세장벽을 제거하여 국내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평균 관세율을 40%에서 15.3%로 대폭 인하했으며, 2005년 말까지는 이를 다시 9.4%로 인하할 계획이다.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경제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대 시장의 개방을 통해 그 자체가 세계경제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제 3 세계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인도와 브라질은 IMF, World Bank, WTO 등에 모두 창설 멤버로 가입하였다.

#### 4. BRICs 사이의 협력 확대

최근 BRICs 국가들간의 교류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BRICs 라는 용어가 등장한 2003년 말 이후 그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BRICs간의 교류 확대가 각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발생적 현상이다 BRICs라는 집단의 자의식 형성에 따른 인위적 유대 강화 노력이 더해진 결과인 점도 있다. 실제로 최근 BRICs 국가들은 미국과 유럽 중심의 국제경제질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제를 다자간 또는 양자간의 외교 무대에서 빈번히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BRICs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

기구에 가입하고 125개의 다자조약에 서명하였다. 1996년에 이르면 중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의 숫자가 미국의 80%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9월 멕시코의 칸쿤에서 개최된 제 5 차 WTO 각료회의에서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20개 개발도상국그룹 회의를 주도하면서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일방적인 개방 요구를 반박하고 선진국의 농산물 시장도 개방할 것을 촉구했다.<sup>66)</sup> 또한 BRICs 국가들은 인도, 브라질, 남아공화국 등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배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UN과 WTO 등 각종국제기구가 개도국의 목소리를 적절히 대변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다. 2004년 개최된 중국-브라질, 중국-인도간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공동성명에 채택하였다.

최근 BRICs 국가들 사이의 교류 확대를 중심으로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최근 러시아, 인도, 브라질과 모두 정상들간의 교환방문을 실현하면서 BRICs간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주도해왔는데, 중국과 BRICs 국가들 사이의 무역은 최근 들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인도, 러시아, 브라질 무역은 2000년에서 2004년 동안 각각 연평균 46.9%, 27.5%, 44.3% 증가하였다. 중국은 2004년 말 현재 인도와 브라질의 2대 수출시장이고, 러시아의 3대 수출시장이며, 수입 면에서는 인도, 러시아, 브라질에서 각각 3위, 2위, 4위를 차지하고 있다.<sup>67)</sup>

브라질이 주축이 되어 있는 MERCOSUR도 각각 인도, 중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중국과 인도는 2005년 4월의 정상회담에서 2008년까지 양국간 무역규모를 20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04년에 FT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그룹을 설치하였다. 또한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은 석유, 알루미늄 등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66) 이 그룹에 참가한 국가들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인도, 멕시코,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남아프리카, 대만, 터키, 베네수엘라 등이다.

67) 주동주, 앞의 책, 62면.

## 5. BRICs와 한국경제

### (1) BRICs와의 협력

한국의 BRICs에 대한 무역은 2000년대에 들어와 수출과 수입 모두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중국과의 무역이 전체 무역 신장세를 주도해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세 국가와의 무역도 모두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2004년 이후에는 대 브라질 무역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중국과의 무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68)</sup>

BRICs에 대한 수출 증가 추이는 지난 10여년간 전체 수출증가율의 두 배를 오르내렸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1995~2004년간 전체 수출증가율의 세 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였고, 그 결과 2003년 이후로 중국은 우리의 전통적 최대 수출시장이었던 미국을 제치고 제1위 수출시장으로 떠올랐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인도, 러시아에 대한 수출도 매우 빠르게 늘어났고, 브라질에 대한 수출도 2004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BRICs 전체에 대한 품목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에 대한 수출은 집적회로반도체 등의 전자부품과 합성수지 등의 석유화학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학기기 부품, 무선통신기기 부품, 자동차 부품등 주로 산업용 부품과 소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우리로부터 부품과 소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지니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다.

나머지 3개국에 대한 수출도 거의 모든 품목에 걸쳐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과 특히 다른 점이 있다면 소재 및 부품 분야뿐만 아니

---

68) 대중국 수출은 2005년 1~9월 기준 총수출의 21.9%, 그리고 대 BRICs 수출의 85.0%에 달하고 있다. 나머지 3개국이 우리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 내외로 미미하다.

라 자동차, 무선전화기, 컬러TV 등 고가의 소비재 수입도 동시에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각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공업화진전에 따른 수요 확대로 최종재와 산업용 소재 및 부품의 수입 수요가 모두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황은 거의 비슷하다. 중국을 중심으로 해마다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용 원자재와 부품의 수입이 주를 이루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으로부터는 철강제품과 IC 회로 등 산업용 부품과 직물의류 등 일부 소비재의 수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기타 3개국으로부터는 원유, 철광석, 알루미늄 등 일차 산품과 나프타, 면사 등 일차 가공품의 수입이 중심을 이룬다.

투자 역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해마다 투자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중국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작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건수에서 1위, 금액에서 미국에 이어 2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과 투자 이외에 BRICs 국가들에 대한 산업협력의 주요한 사업으로는 플랜트 수출과 자원개발을 위한 협력 사업들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BRICs 국가들과 모두 정상외교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경제·통상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 (2) 협력의 주요 특징

BRICs 국가들과의 협력에서 도출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sup>69)</sup>

### - 압도적인 중국 의존도

한국의 BRICs와의 경제협력 현황을 놓고 볼 때, 무엇보다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은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69) 주동주, 앞의 논문, 82~88면 참고.

BRICs 무역 중에서, 4개국 전체에 대한 수출의 약 80% 그리고 수입의 약 76%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투자에서는 이러한 중국집중도가 더욱 심하다. 한국의 총투자 현황을 보면, 전체 투자건수의 약 97%, 그리고 금액의 약 90%가 중국에 집중되었다.

- 대규모 무역흑자

한국과 BRICs 사이의 무역은 압도적인 한국의 수출 우위를 기록하여 한국의 전체적인 무역수지 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즉, 한국과 BRICs의 무역은 한국과 중국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흑자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해오고 있다. 한국은 전체 무역흑자의 약 70% 정도를 대BRICs 무역에서 기록하였다. 특히 적자를 기록해오던 러시아, 브라질과도 2005년을 넘어서면서 흑자를 기록하여 BRICs에 대한 무역이 모두 흑자로 전환되고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 BRICs 국가들이 한국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외화가득을 위한 시장으로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 일방적인 수출 특화

BRICs와의 무역은 한국이 공산품(최종재 및 소재, 부품)을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전형적인 선후진국간 무역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의 무역수지가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상황은 BRICs 국가들이 한국의 공산품을 수요하는 시장으로서 BRICs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지난 수년 동안 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었다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공업국가로서 해외시장에 의존하고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추구해나가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제조업의 거의 모든 제품 분야에서 강한 수출 특화 구조를 지니고 있는 BRICs 국가들은 이상적인 무역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해외생산기지로서의 BRICs

BRICs에 대한 한국 투자의 90% 내외가 중국에 집중되고 있고, 업종면에서는 80% 이상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어 BRICs가 무엇보다도 한국의 제조업체들의 해외생산기지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BRICs내에서 본다면 국가별로 다소간 다른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인도의 경우 업종은 여전히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으나, 대기업들이 해외투자를 선도하면서 건당 규모가 중국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같은 해외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더라도 인도의 경우 중국보다 현지시장 개척을 노린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의 경우 1인당 소득이 중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낮은 생산비를 구현할 수 있음에도 아직 중소기업들의 투자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 제 2 절 인 도

### 1. 인도 경제의 발전 가능성

인도는 1991년 7월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최근 10년 이상 연평균 6%를 넘는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인도경제는 농업부문의 역할이 크게 줄어든 반면,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 부문이 GDP의 약 55%를 담당하면서 경제 전체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했던 폐쇄적 자립경제정책을 버리고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인도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인도의 경제발

전에 대하여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인도가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국제경쟁을 회피하면서 서비스업과 관련 산업을 성장의 축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개도국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 및 세계 주요 기관들에 따르면, 인도는 중장기적으로 평균 5~8%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는 현재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인도는 6%대 중반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며, 경제개혁과 효율적인 자원 동원이 수반되면 8~9%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신흥개도국과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나타났던 두 자릿수의 경제성장이 인도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인도 정부가 강력한 성장 정책보다 여러 사회부문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sup>70)</sup>

인도 정부가 제시한 수출입 정책의 목표는, 세계 경제로의 통합 가속화, 원자재와 자본재 등의 선점 또는 안정적 공급원 확보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추구, 효율성 증진을 위한 기술발전, 국제 수준의 품질 확보와 충분한 공급 등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도 경제정책의 기반에는 국내산업 보호, 시장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불신과 과도한 개입 등이 원활한 개방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2. 한-인도 무역 전망

한국과 인도의 무역규모는 2002년 이후 크게 증가해왔다. 2006년 기준으로, 인도는 한국의 9위 수출국이며 18위 수입국이다. 한국의 인도에 대한 주요 수출 품목은,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제

70) 유태환·최윤정·M. Pant·V. Balaji, □□인도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방안□□, 정책연구 05-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34면.

품, 합성수지, 냉난방기기 등이며, 인도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품목은, 석유제품, 천연섬유, 아연광, 식물성 물질, 기타 금속광물 등 원자재류이다.

< 표 4 > 한국의 연도별 대인도 수출액 현황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1~9월)
금액(백만불)	1384	2853	3632	4598	4665
증가율(%)	-1.7	106.1	27.3	26.6	24.9

인도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인도의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산업자본재, 부품중심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인도 CEPA가 체결되면, 인도에 대한 수출이 약 28억달러, 수입은 약 5억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up>71)</sup>

투자 분야에서 보면, 한국은 인도의 다섯 번째 해외직접투자국으로서, 1991년 이후 누적 투자신고건수 132건에 투자신고금액 10.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진출 유망분야로는, 제조업 중 자동차와 부품,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이 있고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정보기술, 통신, 건설·인프라와 자원개발 등을 들 수 있다.

71) KOTRA, 『한-인도 CEPA 체결과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유망품목』, 기획조사 06-004, 2006. 1, 4면.

## 제 4 장 인도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고찰

### 제 1 절 SAFTA

#### 1. 남아시아 경제협력체(SAARC)

남아시아 지역협력체(The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는 남아시아 7개국(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의 대표가 공동으로 채택한 1985년 12월 8일의 설립헌장으로 형성되었다. SAARC는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남아시아 국가들의 교류와 이익증진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각국의 관심사들에 관한 다방면의 협력과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SAARC의 설립헌장은 SAARC의 목적으로, 남아시아 국민들의 복리와 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문화의 발전, 각 분야에서 상호협력의 확대, 다른 개발도상국가들과의 교류강화, 국제회의에서의 공동이익을 위한 협력 등을 명시하고 있다.<sup>72)</sup> 이와 같은 목적 아래 SAARC 회원국들은 수차례의 정상회담과 장관급회담, 그리고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여왔고,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sup>73)</sup> 현재까지 진행된 정상회담과 선언서 채택의 일자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sup>74)</sup>

---

72) SAARC 헌장 제 1 조.

73) SAARC의 협력분야는 크게, 농업, 생물, 통신 및 정보, 경제, 자원, 환경, 노동, 법률, 빈곤, 과학기술, 사회, 여행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74) <http://www.saarc-sec.org/main.php?t=4>



< 표 5 > SAARC 정상회담일자 및 장소

< Summit Declarations >
- Summit 1, Dhaka, December 8, 1985
- Summit 2, Bangalore, November 17, 1986
- Summit 3, Kathmandu, November 4, 1987
- Summit 4, Islamabad, December 31, 1988
- Summit 5, Male', November 23, 1990
- Summit 6, Colombo, December 21, 1991
- Summit 7, Dhaka, April 11, 1993
- Summit 8, New Delhi, May 4, 1995
- Summit 9, Male', May 14, 1997
- Summit 10, Colombo, July 31, 1998
- Summit 11, Kathmandu, January 6, 2002
- Summit 12, Islamabad, January 6, 2004
- Summit 13, Dhaka, November 13, 2005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내 무역에서 각국의 관세를 인하하고 기타 무역장벽을 축소해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도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첫 번째 성과물이 남아시아 특혜무역협정(SAPTA)이다. 이후에도 남아시아 지역의 협력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2006년에 발효된 기타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협정(SAFTA)은 기존에 남아있던 역내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의 많은 부분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SAPTA와 SAFTA로 이어지는 SAARC의 경제협력과 협정들은 남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과 무역의 확대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나, 본 지역의 낙후된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SAPTA부터 줄곧 이용되어온 ‘최저개발국’ 개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단적인 예이다.

남아시아 지역의 협력은 SAARC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각국 사이의 양자간 협정 체결 등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인도가 체결한 스리랑카와의 FTA는 SAARC의 규범적 테두리 안에서 양국의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또한 각국 및 SAARC 차원에서 남아시아 지역 외의 국가 또는 지역협력체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현상 역시 새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가 실시하고 있는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에 따라 진행되는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sup>75)</sup>과 동북아시아 각국과의 협력,<sup>76)</sup> 그리고 ASEAN과의 협력이나 방콕협정 이후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의 발전은 인도 및 남아시아 지역이 다른 국가 및 지역과 연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더 나아가 인도는 남미의 MERCOSUR 및 칠레와 특혜무역협정(PTA)를 체결하여 원거리 지역협력에도 힘을 쏟고 있다.

## 2. SAPTA의 체결

1991년 12월, SAARC의 콜롬보 정상회담에서는, SAARC의 무역자유화 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간그룹(Inter-Governmental Group, IGG)의 설치를 승인하였다. 이 그룹은 SAARC 특혜무역협정(the Agreement on SAARC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SAPTA)의 초안을 마련하였고, 이 초안은 1993년 4월 11일 SAARC의 일곱 번째 정상회담에서 공식 체결되었다. SAPTA는 각국의 국내절차를 통해 1995년 12월 7일부터 발효되었다.<sup>77)</sup> SAPTA 협정문의 구조 및 부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5) 태국과 싱가포르와의 협력이 그러한 예이다.

76) 한국과의 FTA 협상 및 일본, 중국과의 공동연구 등이 그러한 예이다.

77) <http://www.saarc-sec.org/main.php?t=2.1.5>

< 표 6 > SAPTA 협정문의 구성

서 문

제 1 조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한 정의

제 2 조 형성과 목적

제 3 조 원 칙

제 4 조 구성요소

제 5 조 협 상

제 6 조 추가적 조치

제 7 조 양허사항

제 8 조 합의된 양허의 확대

제 9 조 참가국 위원회

제10조 최저개발체약국에 대한 특별대우

제11조 적용제한

제12조 통 신

제13조 외환조치

제14조 긴급수입제한조치

제15조 양허가치의 유지

제16조 원산지 규정

제17조 양허사항의 변경과 취소

제18조 양허의 유보 또는 취소

제19조 협 의

제20조 분쟁의 해결

제21조 SAPTA의 탈퇴

제22조 발 효

제23조 유 보

제24조 개 정

제25조 기 탁

부속서 I 최저개발체약국들을 위한 추가조치

부속서 II 국가별 양허목록  
부속서 III 원산지 규정

SAPTA의 특징은 최저개발채약국(the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LDCs)들에 대한 특별한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최저개발채약국이란, UN의 결정에 따라 ‘최빈국’의 범주에 들어가는 본 협정의 채약국을 말한다.<sup>78)</sup> 본 협정 제1조에서는 최저개발채약국에 대해서 특혜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원칙을 선언하면서, 제10조에서 다음과 같이 최저개발채약국에 대한 특별대우 규정을 두어 이를 명시하였다.

- (a) 수출품에 대한 무관세 접근, 배타적 관세특혜 또는 더 나은 관세 특혜
- (b) 비관세 장벽의 제거
- (c) 적절한 경우 우회관세 장벽의 제거
- (d) 최저개발 채약국이 상당한 정도의 생산품 수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의 장기협정을 위한 협상
- (e)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에 있어서, 최저개발채약국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특별한 배려
- (f) 다른 채약국으로부터 수입에 있어서, 최저개발채약국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한시적인 수량 또는 기타 제한조치의 실행이나 유지에 관한 더욱 큰 융통성

이밖에도, 협정의 본문 다른 규정들에서도 최저개발채약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약속하고 있다.<sup>79)</sup> 아울러, 부속서 I는 최저개발채약국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조치를 규정하며, 부속서 III 원산지규정에서도 최저개발채약국은 특혜조치의 대상이 된다.

78) SAPTA 제 1 조.

79) SAPTA 제 6 조 및 제16조.

최저개발체약국들에 대한 특별한 우대조치 외에도, 체약국들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나 외환관리조치 등이 SAPTA에 포함되었다.<sup>80)</sup> 또한 체약국 사이의 의견조율이나 구체적인 협상, 기타 분쟁해결을 위하여 당사국들이 서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sup>81)</sup> 이에 따른 절차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82)</sup>

1995년 본 협정의 발효 이후, IGG는 SAARC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여러 가지 협상을 진행하였다. 수차례의 회의와 협상을 통해서 협정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논의되었고, 협정에 따른 무역자유화 계획에 따라 많은 수의 품목들에 관하여 SAARC 체약국에 대한 특혜적 무역자유화 조치가 실시되었다.<sup>83)</sup>

### 3. SAFTA의 체결과 그 구조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South Asian Trade Area, SAFTA)은 SAPTA를 체결했던 SAARC 7개국(인도,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은, 1995년 제6차 장관급 회담<sup>84)</sup>에서 SAARC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이후 1998년 7월의 정상회담은 전문가 위원회(Committee of Experts)가 현실적인 목적과 범위 내에서 SAARC의 FTA 체결이 가능하도록 초안을 작성하도록 결의하였다. 여기서 마련된 초안은 2004년 1월 4일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제12차 정상회담 중 체결되었다.<sup>85)</sup>

---

80) SAPTA 제13조 내지 제14조.

81) SAPTA 제19조.

82) SAPTA 제20조.

83) <http://www.south-asia.com/saarc/chapter4.htm>

84) 1995년 12월 18-19일, 뉴델리.

85) <http://www.saarc-sec.org/main.php?t=2.1.6>

SAFTA 협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서문에 이어 다  
음과 같이 본문 25개조와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있다.

< 표 7 > SAFTA 협정문의 구성

제 1 조 정 의
제 2 조 설 립
제 3 조 목적과 원칙
제 4 조 수 단
제 5 조 내국민 대우
제 6 조 구성요소
제 7 조 무역자유화계획
제 8 조 추가조치
제 9 조 합의된 양허의 확대
제10조 기구규정
제11조 최저개발체약국에 대한 특별대우
제12조 몰디브에 관한 특별규정
제13조 비적용
제14조 일반적 예외
제15조 외환조치
제16조 긴급수입제한조치
제17조 양허가치의 유지
제18조 원산지규정
제19조 협 의
제20조 분쟁해결절차
제21조 탈 퇴
제22조 발 효
제23조 유보사항
제24조 개 정
제25조 기 탁
부속서 I 민감품목목록
부속서 II 최저개발체약국을 위한 기술지원

부속서 II 최저개발체약국의 관세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장치  
부속서 IV 원산지규정

SAFTA 협정은, SAPTA 협정과 마찬가지로, 체약국을 UN이 설정한 최저개발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로 나누어 취급한다. 본 협정에서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네팔은 최저개발체약국(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으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는 비최저개발체약국(Non-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으로 분류된다. 이 분류에 따라서, 최저개발체약국들은 무역자유화계획 및 본 협정상의 여러 가지 조치에 있어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sup>86)</sup>

본 협정은 기존의 SAPTA를 대체하며,<sup>87)</sup> 주로 관세, 우회관세, 비관세장벽, 직접무역조치에 관한 합의내용으로 구성된다.<sup>88)</sup> 국가안전, 공공도덕, 인류·동물·식물의 생명과 건강, 예술적·역사적·고고학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배제된다.<sup>89)</sup>

#### 4. 제 7 조에 의한 무역자유화 내용과 제 8 조의 추가 조치

SAFTA 협정 제 7 조는 최저개발체약국이 아닌 국가가 무역자유화계획(Trade Liberalization Programme, TLP)을 실행하여 2년 내에 관세수준을 20%로 낮추도록 명시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최저개발체약국은 30% 수준의 관세로 인하된다. 최저개발체약국이 아닌 회원국은 이후 5년(스리랑카는 6년) 내에 20%의 관세수준에서 0-5% 미만으로, 최저개발 체약국은 8년 동안 30%에서 0-5% 미만으로 인하하여야 한다.

86) SAFTA 제 3 조 제 2 항 및 제 11 조.

87) SAFTA 제 22 조.

88) SAFTA 제 6 조.

89) SAFTA 제 14 조.

&lt; 표 8 &gt; SAFTA 제7조에 의한 무역자유화계획

기 한	내 용	해당 국가
2008년	20%로 관세인하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30%로 관세인하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네팔
2012년	0-5% 미만으로 관세인하	인도, 파키스탄
2013년		스리랑카
2015년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네팔

이밖에 최저개발체약국이 아닌 국가는 최저개발체약국의 물품에 대하여 3년 동안 관세를 0~5% 수준으로 인하하여야 한다.<sup>90)</sup> 위와 같은 무역자유화계획은 체약국 사이에 합의한 민감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제 7 조의 관세에 관한 무역자유화계획 이외에도, SAFTA는 역내무역의 자유화와 이행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규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91)</sup>

- a) 표준제도의 조화, 검사 및 검사기관의 상호인정, 물품의 인증
- b)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
- c) 상품분류체계에 기초한 국내통관기준의 조화
- d) 세관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한 협조
- e) 수입면허와 등록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
- f) 자본 수입을 위한 은행절차의 간소화
- g) 효과적인 SAARC 역내 무역, 특히 내륙체약국들을 위한 운송편의

90) SAFTA 제 7 조 제 6 항.

91) SAFTA 제 8 조.



- h) SAARC 사이의 투자에 대한 장벽의 제거
- i) 거시경제의 협의
- j) 공정거래와 투기자본확대를 위한 규제
- k) 통신체계와 운송기반시설의 개선
- l) GATT XVIII조와 국제통화기금(IMF) 협정의 관련규정들에 의한 권리로서 대금의 본국송환을 비롯한 SAFTA 체제하의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 관련 외환 관리에 대한 예외 설정
- m) 사업비자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 5. 부속서

### - 민감품목목록표(부속서 I)

부속서 I은 각 체약국이 제출한 민감품목목록(Sensitive List or Negative List)으로 구성된다. 민감품목 역시 무역자유화계획과 마찬가지로, 최저개발체약국과 그렇지 않은 체약국을 분리하여 취급한다.

인도는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8백만장의 의류 등 상품에 대한 수입을 허용하였는데, 3백만장은 인도에서 생산된 원료를 이용한 것, 3백만장은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원료를 이용한 것, 나머지 2백만장은 자유롭게 하였다.

### - 최저개발체약국에 대한 기술지원(부속서 II)

지원 분야는 생산인증, 노동자원의 훈련, 자료관리, 제도 및 규범체계, 행정, 관세절차 등의 개선, 무역 및 시장의 진흥 등이다.

### - 최저개발체약국에 대한 관세수입손실에 대한 보상제도(부속서 III)

a. 몰디브를 제외한 최저개발체약국에 대한 보상은 4년동안 이용가능하다.

b. 이러한 보상은 미화(US dollar)로 지급한다.

c. 보상은 1년단위로 양자간 무역에서 민간품목이 아닌 물품에 대한 관세수입의 1%, 3%, 5% 등을 보상하는 것이다.

- 원산지규정(부속서 IV)

SAFTA 협정의 특혜를 체결국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수출체약국 내에서 ‘상당부분’의 생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상당부분의 생산절차는 4단계 상품분류체계에서 관세변환의 범주와 물품의 40% 이상의 가치(최저개발체약국은 30%)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일반적 기준과는 달리, 부속서는 몇몇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다변화되지 못한 산업구조를 가진 최저개발체약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191개의 관세기준을 위한 생산품 특정규정(Products-Specific Rules, PSR)을 마련하였다. 본 규정은 4단계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원료와 산물이 같은 경우 등에 적용된다.

## 6. 협정의 이행

SAPTA의 양허사항들은 3년내에 최저개발체약국이 아닌 회원국이 최저개발체약국을 위한 무역자유화계획을 완료하면 효력이 상실된다. 최저개발체약국이 이용할 수 있는 SAPTA 양허사항의 어느 품목이 최저개발체약국이 아닌 회원국의 민감품목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 7조 제 3 항 a에 의하여 기존의 양허내용을 유지하고 민감품목목록에도 명시해야 한다. 또한 무역자유화계획의 대상이 되는 품목이 SAPTA에서 특혜를 받는 것이라면, 최저개발체약국이 아닌 회원국은 그 품목에 대한 관세를 SAPTA에서 최저개발체약국을 위해 적용되는 수준 이하로 줄여야 한다.

관세인하의 비율은 2006년 1월 1일 발효부터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적용한다. 2006년 1월 1일 발효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예산기간이 다른 이유로 관세자유화 계획은 2006년 7월 1일부터(네팔은 8월 1일부

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최초 2년 기간의 무역자유화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협정문에 따른 이러한 무역자유화계획이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은 2016년 1월 1일 이전이 된다.<sup>92)</sup>

## 제 2 절 방콕협정과 APTA

### 1. 방콕협정의 체결

방콕협정(the First Agreement on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Member Countri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Agreement)은 UN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들의 모임인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ESCAP)의 회원국들이 무역확대를 추구하기 위해 1975년 7월 31일에 체결하였다. 방콕협정은 회원국들의 무역확대의 목적으로 양허를 통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sup>93)</sup>

방콕협정은 UN의 주도 아래 체결되어 현재까지 발전하고 있는 오랜 역사를 지닌 영향력 있는 지역무역협정이다. 1963년 UN 아시아 및 극동지역 경제위원회(UN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 ESCAPE)<sup>94)</sup>는 첫 번째 아시아 경제협력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 ESCAPE 사무국장은 지역협력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이후 ESCAP의 국제무역 분과는 본 지역의 무역자유화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1971년에는 무역확대계획 실현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가 설치되어 무역협상그룹의 설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설치된 협상그룹은

---

92) [http://commerce.nic.in/india\\_rta.htm#h18](http://commerce.nic.in/india_rta.htm#h18)

93) <http://www.doc.gov.lk/regionaltrade.php?mode=inop&link=bangkok>

94) 이후에 ESCAPE는 ESCAP로 바뀌었다.

1972년 첫 회의를 시작하였다. 1975년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한국, 스리랑카, 필리핀, 태국 등 7개국이 방콕에서 회의를 갖고, 상호 무역에서 관세를 축소할 것을 약속하는 양허목록표를 작성하였다. 이것이 바로 ESCAP 회원 개발도상국 사이의 무역협상에 관한 첫 번째 협정으로 이어졌다.

방콕협정으로 불리는 이 협정은, 필리핀과 태국이 ASEAN과 관련된 문제로 비준하지 못하였다. 또한 라오스는 충분한 관세양허 내용을 통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효력을 향유할 수 없었다. 결국 본 협정은 최초 참여하였던 7개국 중에서 방글라데시, 인도, 한국, 스리랑카 등 4개국만으로 발효하였으며, 1978년 3월에 GATT로부터 승인을 얻었다.

## 2. 중국의 가입과 인도의 양허내용

방콕협정은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개방하면서 운영되는데, 기존 체약국의 3분의 2 이상이 새로운 국가의 가입희망을 찬성하면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1993년 12월에 파푸아뉴기니가 본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비준을 하지 못하였다. 중국은 2000년 4월에 협정에 참여하였고, 2001년 10월 방콕에서 개최된 일곱번째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이 가입하였다.

중국은 방콕협정에 가입하면서 739개 품목의 일반양허와 18개 품목에 있어서 최빈개도국(최저개발체약국)에 대한 특별양허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양허사항은 200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중국의 양허로, 방콕협정이 아우르는 양허분야는 1670여 품목을 넘게 되었고, 112개 품목에 관해서는 최빈국(최저개발회원국)에 대한 특별한 양허가 적용되었다.<sup>95)</sup>

95) Harish Iyer, "The Bangkok Agreement: Prospects for trade expans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Bulletin on Asia-Pacific Perspectives 2003/04, UN ESCAP, 2003, p. 58.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은 본 협정의 여러 분야에서 큰 도약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이제 세계적인 무역대국이며 그 경제발전 속도 역시 매우 빠르다. 또한 중국의 가입으로 방콕협정은 약 25억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초대형 지역무역협정이 되었다. 본 협정의 3대 주요 회원국인 중국, 인도, 한국의 무역 규모와 경제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중국의 가입은 본 협정의 해당 지역의 상호 무역 확대에 있어서도 매우 큰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본 협정을 체결하면서 중국은 인도에 대해서 217개의 관세기준으로 평균 13.5%의 관세양허를 실시하였다. 반면 인도는 188개의 관세기준으로 106개 품목에 관하여 모든 체약국에 대한 관세양허를 실시하였다. 인도와 중국 양자간의 협상은 2003년 2월에 마무리되었고, 위의 양허사항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SCAP는 방콕협정을 바탕으로 1975년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의 관세인하 등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2001년 10월부터 2004년 7월까지의 세 번째 협상으로 양허사항 등을 교환하였다. 인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인도와 스리랑카는 이미 양자간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양허사항을 교환하지 않았다.
- (b) 방글라데시는 방콕협정 내 유일한 최저개발체약국이며, 인도는 25개의 품목에 관해 상호주의에 입각하지 않은 특혜관세를 제공한다.
- (c) 인도는 중국에 대한 311개의 품목에 관해 양허를 하였고, 중국은 589개 품목에 관해 양허를 하였다.
- (d) 한국에 대해서는 88개 품목에 관한 양허를 하였고, 한국으로부터는 138개의 품목에 관한 양허를 받았다.

### 3. 방콕협정문의 내용

방콕협정의 목적은, ESCAP의 개발도상국 회원국들 사이의 무역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의 추구, 상호이익이 되는 무역자유화 조치를 통한 국제경제협력의 증진, 그리고 제 3 세계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무역이익을 확대하는 것이다.<sup>96)</sup>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은 본 협정 제 3 장 이하에서 규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무역자유화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sup>97)</sup>

본 협정의 본문은 서문을 포함하여 총 8장 3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회원국의 무역자유화 계획과 무역확대를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본 협정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 < 표 9 > 방콕협정의 구조

제 1 장 일반 규정
제 1 조 - 제 2 조
제 2 장 무역자유화 계획
제 3 조 - 제 8 조
제 3 장 무역의 확대
제 9 조 - 제 12 조
제 4 장 긴급조치와 조율
제 13 조 - 제 17 조
제 5 장 상설위원회 및 협정의 관리
제 18 조 - 제 19 조
제 6 장 검토 및 개정
제 20 조 - 제 24 조
제 7 장 가입과 탈퇴

96) 방콕협정 제 2 조.

97) 방콕협정 제 3 조 내지 제 8 조.

제25조 - 제26조  
제 8 장 기타 최종조항  
제27조 - 제39조

방콕협정의 회원국들은 무역자유화를 위하여 다른 회원국들에 대한 관세 비관세 양허사항을 정리한 양허목록표를 본 협정의 부속서로 제출하며,<sup>98)</sup> 이러한 양허목록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에 영향을 주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완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sup>99)</sup> 이 밖에, 회원국들은 무역확대와 다양화를 위해서 본 협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치들을 취할 의무를 가진다.<sup>100)</sup>

본 협정의 이행을 관리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설위원회를 설치한다.<sup>101)</sup> 본 위원회는 협정의 적용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검토하며, 이에 관련하여 필요한 권고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 4. APTA의 체결과 협정문의 내용

1975년 방콕협정이 체결된 이후, 여러 가지 상황 변화와 함께 개정 필요성이 커졌고, 몇 가지 개정들이 있었다. 2005년 11월 2일 북경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서는 ‘방콕협정’을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Asia Pacific Trade Agreement, APTA)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세 번째 협상에 따른 새로운 양허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APTA는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라오스, 한국, 스리랑카 등 6개국이 체결하였으며, 협정문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

98) 방콕협정 제 3 조.

99) 방콕협정 제 4 조.

100) 방콕협정 제 9 조.

101) 방콕협정 제18조.

< 표 10 > APTA 협정문의 본문 구성

서 문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정 의
제 2 조 목 적
제 3 조 원 칙
제 2 장 무역자유화계획
제 4 조 양허의 협상
제 5 조 양허사항의 적용
제 6 조 비관세조치
제 7 조 최저개발체약국에 대한 특별한 양허사항
제 8 조 원산지규정
제 9 조 양허가치의 보존
제 10 조 특혜의 재설정
제 11 조 협정의 범위
제 3 장 무역의 확대
제 12 조 무역의 확대와 다양화
제 13 조 편의, 수익, 독점권, 면제, 특권 등의 확대
제 14 조 특혜의 비적용
제 15 조 최저개발체약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
제 16 조 관세 및 비관세 특혜의 확대
제 4 장 긴급수입제한조치와 협의
제 17 조 양허의 금지
제 18 조 외환지급제한조치
제 19 조 무역불이익에 대한 구제
제 20 조 요구의 불응
제 21 조 분쟁 해결
제 5 장 상설위원회와 협정의 관리
제 22 조 상설위원회
제 23 조 장관급회의
제 24 조 결 정
제 6 장 검토 및 개정
제 25 조 협정의 검토



제26조	협정의 개정
제27조	양허적용기간
제28조	양허사항의 변경
제29조	양허의 개선과 참여
제 7 장	가입과 탈퇴
제30조	가 입
제31조	가입, 비준, 발효의 통보
제32조	협정의 탈퇴
제 8 장	기타 최종조항
제33조	국가별 양허사항의 개정
제34조	양허사항의 발효
제35조	예 외
제36조	협정의 비적용
제37조	유보사항
제38조	기 탁
제39조	협정의 등록
제40조	협정의 명칭

APTA의 목적은, ESCAP의 개발도상국 회원국들 사이의 무역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회원국의 현재 또는 미래의 개발과 무역의 필요에 부합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무역자유화 조치를 채택하여 국제경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sup>102)</sup> 본 협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용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sup>103)</sup>

- 본 협정은 회원국들에게 균등하게 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상호성에 바탕을 둔다.
- 투명성,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의 원칙들은 회원국들 사이의 관계에 적용된다.

---

102) APTA 제 2 조.

103) APTA 제 3 조.

- 최빈국(최저개발회원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특혜조치를 취해야 한다.

APTA는 무역자유화 계획으로, 상호 무역에 대한 양허협상과 그 적용, 비관세 조치의 축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빈국(최저개발회원국)에 대한 특별 양허를 작성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sup>104)</sup> 또한 무역자유화와 다양화를 위한 조치는 방콕협정의 내용과 많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WTO의 규정과 조화되어야 함을 규정하였다.<sup>105)</sup> 이러한 조치에 있어서도 최빈국(최저개발회원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sup>106)</sup>

회원국들은 긴급수입제한조치로서 본 협정에 부속된 양허사항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만약 90일 이내에 관련 회원국들이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상설위원회가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상설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이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만족할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영향을 받은 회원국은 상설위원회에 대한 통지와 함께 해당 조치를 취한 회원국에 대해서 상응하는 양허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상설위원회는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결정을 채택해야 한다.<sup>107)</sup> 이밖에도 회원국은 외환지급 위기에 따른 무역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sup>108)</sup>

상설위원회는 본 협정의 적용을 감시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 대표로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분쟁해결, 일방 회원국의 요구 불응 사건, 무역불이익에 대한 구제 등의 문제에 관해서도 결정과 권고의 권한을 보유한다.<sup>109)</sup>

---

104) APTA 제 4 조 내지 제11조.

105) APTA 제12조.

106) APTA 제15조.

107) APTA 제17조.

108) APTA 제18조.

109) APTA 제19조 내지 제22조.

### 제 3 절 기타의 FTA 및 무역협정

#### 1. 인도-스리랑카 FTA

인도는 스리랑카에 대한 가장 큰 수출국이며 오랫동안 큰 규모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국은 SAARC와는 별도로 양자간 FTA를 준비하였다. 인도와 스리랑카의 양자간 FTA는 1998년 12월 28일에 체결되어, 2000년 3월부터 발효되었다. 인도-스리랑카 FTA 협정문의 본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있다.

< 표 11 > 인도-스리랑카 FTA 협정문 본문의 구성

서 문
제 1 조 목 적
제 2 조 정 의
제 3 조 관세의 제거
제 4 조 일반적 예외
제 5 조 내국민대우
제 6 조 국영무역회사
제 7 조 원산지규정
제 8 조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9 조 국내규범
제 10 조 외환조치
제 11 조 공동위원회
제 12 조 협 의
제 13 조 분쟁의 해결
제 14 조 협정의 기간과 소멸
제 15 조 개 정
제 16 조 완결되어야 할 부속서
제 17 조 발 효

이밖에, 협정의 부속서는 ‘차에 관한 관세율 할당’과 ‘의류에 관한 관세율 할당’에 관한 내용이다.<sup>110)</sup>

본 협정의 특징은, 협정문의 전반에 GATT 1994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sup>111)</sup> 즉, 본 협정을 통해서 양국은 WTO의 무역체계에서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무역을 추구하고자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목적과 예외에서 내국민대우 등 GATT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해서, 양국은 협의에 의한 원만한 해결을 우선하였고, 60일 이내에 그러한 해결이 불가능하면 서로에 대한 특혜조치를 취소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sup>112)</sup> 본 협정은 특별한 유효기간 없이 양국이 6개월 이전에 통보하여 효과가 중단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sup>113)</sup>

## 2. 인도-MERCOSUR PTA

인도는 최근 들어 남미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한 좋은 예가 바로 MERCOSUR<sup>114)</sup>와의 특혜무역협정 체결이다. MERCOSUR와의 기본협정은 2003년 6월 17일에 체결되었으며, 2004년 1월 25일에 특혜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인도의 대 MERCOSUR 주요 수출품은 의약품, 광물, 운송장비, 면화제품, 수제직물과 의류, 염료 등이다. 반면 인도가 MERCOSUR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콩기름 등 식용기름, 금속광물, 비전자 기계류

110) <http://commerce.nic.in/agree.htm>

111) 인도-스리랑카 FTA 제 1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9 조.

112) 인도-스리랑카 FTA 제 8 조.

113) 인도-스리랑카 FTA 제 14 조.

114) MERCOSUR(남미공동시장)은, 1980년대 중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논의에서 시작하여, 1991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남미 4개국이 체결한 아순시온 협약(the Treaty of Asunción)으로 구성된 경제공동체이다. MERCOSUR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시리즈 [브라질의 FTA 제 4 장]을 참고할 것.

등이다.

인도-MERCOSUR 특혜무역협정은 본문과 총 5개의 부속서를 포함한다.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표 12 > 인도-MERCOSUR PTA 협정문의 본문 구성

서 문
제 1 장 협정의 목적
제 1 조 - 제 2 조
제 2 장 무역자유화
제 3 조 - 제 8 조
제 3 장 일반적 예외
제 9 조
제 4 장 국영무역기업
제10조 - 제11조
제 5 장 원산지규정
제12조
제 6 장 국가별 조치
제13조
제 7 장 관세평가
제14조
제 8 장 긴급수입제한조치
제15조 - 제16조
제 9 장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
제17조
제10장 기술장벽
제18조 - 제20조
제11장 위생 및 검역조치
제21조 - 제22조
제12장 협정의 관리
제23조 - 제26조
제13장 개정과 변경
제27조 - 제28조

제14장 분쟁의 해결  
제29조  
제15장 발 효  
제30조 - 제31조  
제16장 탈 퇴  
제32조  
제17장 기 탁  
제33조 - 제34조  
제18장 이행규정  
제35조

부속서들은 협정의 이행을 돕기 위해서 6회의 협상 끝에 2005년 3월 19일에 서명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속서 I - 인도 생산품에 대한 MERCOSUR의 관세양허목록표. 총 452개의 품목

부속서 II - MERCOSUR 생산품에 대한 인도의 관세양허목록표. 총 450개의 품목

부속서 III - 원산지규정

부속서 IV - 긴급수입제한조치

부속서 V - 분쟁해결절차

### 3. 인도-칠레 PTA

양국간 특혜무역협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기본 협정은 2005년 1월 20일에 체결되었으며, 이후 2005년 11월까지 네 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인도-칠레 특혜무역협정은 본문 외에 물품에 대한 양국의 관세특혜를 정한 두 개의 부속서와 원산지 규정, 긴급수입제한조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세 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 본 특혜무역협정은 2006년 3월 8일에 체결되었다. 협정문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표 13 > 인도-칠레 PTA 협정문의 본문 구성

서 문
제 1 조 목 적
제 2 조 정 의
제 3 조 범 위
제 4 조 관세의 제거
제 5 조 국가별 조치
제 6 조 국영기업
제 7 조 원산지규정
제 8 조 수입 및 수출의 제한
제 9 조 농업수출보조금
제10조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
제11조 특혜 긴급수입제한조치
제12조 기술장벽
제13조 위생 및 검역조치
제14조 관세평가
제15조 관세협력
제16조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
제17조 공동관리 위원회
제18조 분쟁의 해결
제19조 일반적 예외
제20조 개 정
제21조 부속서
제22조 협정의 기간과 소멸
제23조 발 효

협정의 내용을 보면, 인도는 칠레에 대해서 178개의 관세기준으로 10-50% 범위의 특혜관세를 제공하고, 칠레는 296개의 관세기준으로 유사한 범위의 특혜관세를 인도에 제공한다. 이에 해당하는 물품은, 2004년/2005

년 기준으로, 양국간 전체 무역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정도이다.

인도와 양허시장은 주로 육류와 생선류, 암염, 구리, 가죽제품, 화학제품 등이다. 반면에 칠레는 농산품, 화학 및 약품류, 가죽제품, 섬유 및 의류 등에 관하여 양허를 하였다. 이밖에 양국은 보다 넓은 무역자유화를 위해 FTA를 체결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한 공동연구를 2005년 1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 4. 인도-싱가포르 CECA

인도와 싱가포르 사이의 경제협력에 관한 구상은 비교적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양국간의 공동연구그룹은 2002년 4월에 설치되었다. 본 연구그룹은 2003년 4월에 공동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보고서는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이 경제협력을 위한 FTA 또는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협정 체결이 이루어져야 할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a) 역내의 물품 및 서비스 무역과 투자에 관한 FTA
- b) 투자진흥, 보호 및 협력에 관한 양자간 협정
- c) 이중과세 방지 협정
- d) 항공서비스 협정
- e) 보건, 교육, 여행 등에 관한 협력 계획

위의 권고에 따라, 양국은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CECA)을 체결하기로 하고, 2003년 5월 27일부터 총 12회의 협상을 진행하였다. 인도와 싱가포르는 2005년 6월 29일에 협정을 체결하였다. 본 협정의 본문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방대한 분량으로 자세한 규정들을 두었다. 본 협정의 조항들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및 기타 양국의 경제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협정문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표 14 > 인도-싱가포르 CECA 본문의 구성

서 문
제 1 장 목적과 일반적 정의
제 1 조 일반 정의
제 1.2 조 목 적
제 2 장 상품무역
제 2.1 조 정 의
제 2.2 조 내국민대우
제 2.3 조 관세의 축소 및 제거
제 2.4 조 원산지 규정
제 2.5 조 비관세 조치
제 2.6 조 관세 평가
제 2.7 조 반덤핑
제 2.7.1 조 조사신청서의 통보 및 정보의 교환
제 2.7.2 조 불완전 정보
제 2.7.3 조 정보의 이용
제 2.7.4 조 반덤핑조치에 관한 WTO 위원회의 권고
제 2.8 조 보조금
제 2.9 조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2.9.1 조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과
제 2.9.2 조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의 조건과 제한
제 2.9.3 조 보 상
제 2.9.4 조 긴급조치절차
제 2.9.5 조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2.10 조 외환지급에 관한 긴급제한조치의 제한
제 2.11 조 최혜국대우 조치
제 2.12 조 관세 분류
제 2.13 조 일반 및 보안상의 예외
제 2.14 조 국영무역사업
제 2.15 조 한시적 허가
제 3 장 원산지 규정
제 A 부 정 의

- 제3.1조 정 의
- 제 B 부 원산지 규정
- 제3.2조 원산지 물품
- 제3.3조 전부 수확 및 생산된
- 제3.4조 전부 수확 및 생산되지 않은
- 제3.5조 간접적 물질
- 제3.6조 부가적 공정
- 제3.7조 비원산지 물질의 평가
- 제3.8조 원산지 결정
- 제3.9조 누 적
- 제3.10조 부속품, 부가물 및 도구
- 제3.11조 포장의 취급
- 제3.12조 식별가능하고 교환가능한 물질
- 제3.13조 사전 규제
- 제3.14조 탁송 기준
- 제 C 부 필요서류
- 제3.15조 원산지 증명서
- 제 D 부 원산지 증명
- 제3.16조 원산지 증명의 확인에 관한 협력
- 제3.17조 특혜관세조치의 거부
- 제 E 부 협의와 변경
- 제3.18조 협의와 변경
- 제 4 장 관 세
- 제4.1조 범 위
- 제4.2조 투명성
- 제4.3조 위험관리
- 제4.4조 무서류 무역
- 제4.5조 특혜관세조치의 거부
- 제4.6조 원산지 증명의 확인
- 제4.7조 사전규제
- 제4.8조 최선의 공유
- 제4.9조 기 밀
- 제 5 장 표준 및 기술 규제, 위생 및 검역조치
- 제5.1조 범 위

- 제5.2조 정 의
- 제5.3조 일반적 예외
- 제5.4조 적 용
- 제5.5조 적합성 평가의 상호 인정
- 제5.6조 물품제조공정
- 제5.7조 의무요건의 등가
- 제5.8조 상호인정에 관한 공동위원회
- 제5.9조 정보교환과 협력
- 제5.10조 기 밀
- 제5.11조 규제기관의 유지
- 제5.12조 최종규정 및 부속서

제 6 장 투 자

- 제6.1조 정 의
- 제6.2조 적용범위
- 제6.3조 내국민대우
- 제6.4조 손실보상
- 제6.5조 수 용
- 제6.6조 송 환
- 제6.7조 외환지급 긴급제한조치에 대한 제한
- 제6.8조 대 위
- 제6.9조 이익의 거절
- 제6.10조 공공이익을 위한 조치
- 제6.11조 일반적 예외
- 제6.12조 보안상 예외
- 제6.13조 정보의 공개
- 제6.14조 특별요건과 정보요구
- 제6.15조 투명성
- 제6.16조 특정 행위와 예외
- 제6.17조 행위와 예외의 검토
- 제6.18조 법원의 이용
- 제6.19조 고위 담당자 위원회
- 제6.20조 수입관세의 예외요청
- 제6.21조 투자분쟁
- 제6.22조 기타 의무

- 제6.23조 행위요구의 금지
- 제6.24조 발효, 기간과 소멸
- 제 7 장 서비스 무역
  - 제7.1조 정 의
  - 제7.2조 범 위
  - 제7.3조 시장접근
  - 제7.4조 내국민대우
  - 제7.5조 부가사항
  - 제7.6조 최혜국대우 사항의 검토
  - 제7.7조 특정 사항의 계획
  - 제7.8조 계획서의 변경
  - 제7.9조 점진적 자유화
  - 제7.10조 국내 규제
  - 제7.11조 승 인
  - 제7.12조 독점적 서비스 공급자
  - 제7.13조 사업행위
  - 제7.14조 긴급수입제한조치
  - 제7.15조 보조금
  - 제7.16조 지급과 송금
  - 제7.17조 외환지급 긴급제한조치의 제한
  - 제7.18조 투명성
  - 제7.19조 비밀정보의 공개
  - 제7.20조 정부조달
  - 제7.21조 일반적 예외
  - 제7.22조 안보적 예외
  - 제7.23조 이익의 거절
  - 제7.24조 서비스-투자 연계
- 제 8 장 항공서비스
  - 제 8 조
- 제 9 장 자연인의 이동
  - 제9.1조 일반원칙
  - 제9.2조 범위와 정의
  - 제9.3조 한시적 입국 승인에 관한 일반 원칙
  - 제9.4조 단기간 한시적 입국

- 제9.5조 장기간 한시적 입국
- 제9.6조 배우자 및 동반자의 고용
- 제9.7조 규제의 투명성
- 제9.8조 이민 조치
- 제9.9조 신속적용절차
- 제9.10조 적용결과의 통보
- 제9.11조 문제의 해결
- 제9.12조 분쟁의 해결
- 제9.13조 유 보
- 제10장 전자상거래
  - 제10.1조 일 반
  - 제10.2조 정 의
  - 제10.3조 전자적 서비스의 제공
  - 제10.4조 디지털제품
  - 제10.5조 예 외
  - 제10.6조 투명성
- 제11장 지적재산권 협력
  - 제11.1조 협 력
  - 제11.2조 협력의 확대
- 제12장 과학과 기술
  - 제12.1조 과학과 기술 분야의 협력
  - 제12.2조 협력행위의 분야와 형태
  - 제12.3조 지적재산권과 기타 재산권의 보호와 분배
  - 제12.4조 협력행위의 비용
  - 제12.5조 협정의 이행
- 제13장 교 육
  - 제13.1조 협 력
  - 제13.2조 협력의 범위와 형태
  - 제13.3조 교육 관련 공동위원회
- 제14장 미디어
  - 제14.1조 협 력
  - 제14.2조 규제기관 사이의 의견 교환
  - 제14.3조 협력의 구조

제15장 분쟁의 해결
제15.1조 범 위
제15.2조 정 의
제15.3조 협 의
제15.4조 상품국, 조정 또는 화해
제15.5조 중재심판소의 임명
제15.6조 중재심판소의 구성
제15.7조 중재심판소의 기능
제15.8조 중재심판소의 절차
제15.9조 절차의 중지와 소멸
제15.10조 시간적 구조
제15.11조 이 행
제15.12조 이익의 보상과 중지
제15.13조 비 용
제16장 일반 및 최종조항
제16.1조 의무의 이행
제16.2조 의사전달방법
제16.3조 검 토
제16.4조 협정의 참여
제16.5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제16.6조 부속서
제16.7조 개 정
제16.8조 발효, 기간과 소멸

본 협정은 대외적으로 2005년 8월 1일에 발효되었으나, 인도에서는 그동안 싱가포르와의 협정이 발효되면서 경쟁력이 약한 분야의 싱가포르를 경유한 제 3 국 제품의 국내유입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우려하여 의회 승인이 지연되고 있었다. 2006년 6월 20일 인도 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발효되었다.<sup>115)</sup>

115) 본 협정의 발효로 인하여, 2004년 71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한 양국간 무역이 50% 이상 확대될 전망이며, 인도와 싱가포르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개정함으로써 싱가포르 기업들의 대인도 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5. 인도-아프카니스탄 PTA

인도와 아프카니스탄 사이의 특혜무역협정은 2003년 3월 6일에 체결되어, 양국간 관세인하를 통해 경제관계 발전과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발효되었다. 본 협정의 본문은 서문과 전체 1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무역에 대한 규제를 그 중심 범위로 하고 있다. 본 협정 본문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 < 표 15 > 인도-아프카니스탄 PTA 본문의 주요 구성

서 문
제 1 조 목 적
제 2 조 정 의
제 3 조 관세의 제거
제 4 조 일반적 예외
제 5 조 내국민 대우
제 6 조 국영무역사업
제 7 조 원산지규정
제 8 조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9 조 국내규범
제10조 외환지급조치
제11조 공동위원회
제12조 협 의
제13조 분쟁의 해결
제14조 협정의 기간과 소멸
제15조 개 정
제16조 부속서
제17조 발 효

본 협정에 따라 아프카니스탄은 인도에 대해 차, 항혈청 및 의약품, 정제설탕, 시멘트 등 8개의 품목의 특혜를 인정하였고, 인도는 건포도, 건과일, 신선과일, 향료 등 38개 품목을 아프카니스탄에 대해 인정하였다.

## 6. 인도-태국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기본협정

인도는 1990년대부터 태국 등과 BISTEC 협력을 주도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태국과의 개별적 경제협력을 위한 노력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2001년 11월 인도와 태국 정상의 합의로 공동연구그룹이 설치되었다. 본 연구그룹은 양국간 FTA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 협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 무역에 대한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기 위한 기본 협정이 2003년 10월 9일에 체결되었다. 본 기본협정은 물품과 서비스 그리고 투자와 경제협력에 관한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품 무역 분야의 상당부분에서 관세를 자유화하였다. 본 기본 협정의 본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표 16 > 인도-태국 자유무역지대 설립 기본협정 본문의 주요 구성

서 문
제 1 조 목 적
제 2 조 포괄적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조치
제 3 조 상품 무역
제 4 조 서비스 무역
제 5 조 투 자
제 6 조 기타 경제협력



- 제 7 조 조기자유화 계획
- 제 8 조 일 정
- 제 9 조 일반적 예외
- 제10조 분쟁해결구조
- 제11조 협상을 위한 기구 설치
- 제12조 기타 규정
- 제13조 협정의 기간과 소멸
- 제14조 발 효

인도와 태국은 기본협정을 발전시켜 양국간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기 위하여 무역협상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본 위원회는 FTA 협정안 규정, 원산지규정, 분쟁해결절차, 민감품목 목록 등에 관한 협상을 최근 까지 10여 차례 정도 진행해오고 있다.

## 7. 기타 무역협정들

### (1) 인도-부탄 무역 및 상업 협정

본 협정은 양국 사이의 무역, 상업, 운송에 관한 FTA이며, 양국간 합의로 개정이 가능하다. 본 협정의 특징은 내륙국인 부탄이 제 3 국과의 무역을 하는 경우, 그 편의를 위해 인도가 자국 영토 내 특정지점의 운송설비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가장 최근의 협정은 2006년 7월 28일에 체결되어 십년의 유효기간으로 발효되고 있다.

### (2) 인도-네팔 사이의 협정들

인도는 네팔과 무역, 운송, 협력에 관한 개별적인 협정들을 체결하였으며, 각 협정마다 수차례의 개정으로 현재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

고 있다. 가장 최근의 무역협정과 협력협정은 2002년 3월 6일에 각각 발효되어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운송협정은 7년의 유효기간으로 2006년 3월에 개정되었다.

### (3) 인도-방글라데시 무역협정

방글라데시와의 양자간 무역협정은 1980년 10월 4일에 체결되었다. 이후 몇 번의 개정이 되었고, 현재 발효 중인 협정은 2006년 3월 30일에 체결되어 향후 3년 동안 유효하다.

### (4) 인도-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인도가 동남아시아 협력기구(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와 연계논의를 시작한 것은 1991년이다. ASEAN은 1967년부터 부르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2년에 각 분야별로 논의를 한 바 있으며, 1996년에는 전 분야별로 확대되었고, 2001년 1월에 정상들 사이의 회담이 있었다.

인도와 아세안의 첫 번째 경제장관회의는 2002년 9월 15일에 부르나이에서 열렸으며, 공동연구보고서 작성에 이어 인도-ASEAN 경제연계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작업반은 다음 경제장관회의까지 인도-ASEAN 사이의 무역과 경제협력을 위한 포괄적 협정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한 인도-ASEAN 사이의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ASEAN) and India)은 2003년 10월 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체결되었다. 본 협정의 주요 내용은 체약국 사이의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상품, 서비스, 투자에 있어서 FTA를 목표로 하는 것들이다.

기본 협정의 체결 이후, 인도-ASEAN 사이의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ng Committee, TNC)가 설치되었고, 현재까지 총 11회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위원회는 인도-ASEAN 지역무역 및 투자지대(India-ASEAN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Area, RTIA) 설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5) BIMSTEC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기본협정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태국을 잇는 경제협력(BIST-Economic Cooperation, BISTEC)은 1994년 환 벵갈만 동남·남아시아 경제협력으로 시작되었다. 1997년 미얀마가 참여하면서 그 명칭이 (BIMSTEC)로 변경되었고, 2004년 7월 정상회담에서는 부탄과 네팔의 참여로 확대되었다.

BIMSTEC의 구성은 SAARC 회원 5개국(인도,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스리랑카)과 ASEAN 소속 2개국(태국, 미얀마)이 된다. 따라서 BIMSTEC는 기존의 SAARC와 ASEAN이라는 두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역할을 하는 셈이다. BIMSTEC는 인도의 동아시아 정책과 맞물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 새로운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1998년 8월의 첫 경제무역 장관급회담이 개최된 이후, BIMSTEC는 FTA의 체결과 무역, 투자, 기술협력 등을 위한 다각도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중 6개의 중요분야인 무역, 투자, 기술, 운송과 통신, 자원, 여행, 수산은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된 분야이다. 2003년 3월 7일에 개최된 제 4 차 장관급회담에서는 BIMSTEC FTA 체결을 위한 전문가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전문가그룹은 FTA 체결을 위한 기본협정 초안을 마련하였고, 2004년 2월 8일에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이 참여한 가운데 본 기본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부탄과 네팔이 공식적으로 BIMSTEC에 가입한 것이다. 방글라데시는 전문가그룹에는 참여하였으나, 본 협정에는 서명하지 못하였다.

기본협정은 물품, 서비스, 투자에 관한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무역협상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태국이 본 위원회의 의장국이다. 물품에 관한 협상은 이미 마무리되었고, 나머지 분야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 8. 진행중인 협정들

### (1) 인도-말레이시아

2004년 12월 20일 양국간 정상회담 이후 합의된 공동연구그룹이 2005년 3월에 설치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2) 인도-모리셔스

2003년 11월 양국간 공동연구그룹이 설치되어 2004년 11월에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이후 2005년 4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경제협력 및 동반자협정(CECA) 체결을 위한 협상개시를 선언하였고, 현재 까지 수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 (3) 인도-인도네시아

ASEAN과의 협력을 진행하는 것과는 별도로, 2005년 8월 8일 양국간 협력을 위한 장관급 회담이 개최되었다. 본 회담에서는 양국 사이의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4) 인도-일본

양국간 공동연구는 2005년 6월부터 시작되어, 물품 및 서비스 무역, 자본의 이동, 경제관계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5) 인도-중국

양국간 공동연구는 2003년 6월에 시작되었고, 2005년 3월 23일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후 2006년 3월 13일에 공동작업반이 설치되었다.

### (6) 인도-GCC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로 구성된 관세동맹이다. 이들 지역은 인도의 세 번째 무역 상대이고, 인도 해외수출의 3-4%, 수입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는 2006년 3월 21일부터 걸프협력회의와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7) 인도-SACU

SACU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레소토, 스와질랜드, 보츠와나, 나미비아로 구성된 남아프리카 관세동맹이다. 인도와 SACU는 공동연구그룹을 설치하여 특혜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2004년 9월 6일 협정 초안을 마련하였다.

### (8) 인도-EU

인도와 유럽연합(EU)<sup>116)</sup>은 2006년 10월 13일 정상회담을 통하여 FTA를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양측간 FTA 협상은 1년 내에 타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2007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2009년 최종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도는 섬유, 의복, 농화학품 등을 EU에 수출하고 있으며, EU는 인도가 통신, 소매 유통, 보험, 은행, 항공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

---

116) 인도는 EU의 10번째 무역 시장으로 지난해 양측 사이의 무역 규모는 500억 달러 정도이다.

하고 있다며 이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인도와의 FTA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EU 25개 회원국 협의체인 EU 이 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4 절 인도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들의 법적 특징

### 1. 지역무역협정의 단계별 발전

인도가 체결한 주요 지역무역협정들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면, 이러한 지역무역협정들이 FTA의 체결이나 특혜무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발전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 표 17 > 인도가 체결한 주요 지역무역협정

명 칭	상대국	체 결	성 격
SAPTA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1993년 4월 11일	PTA
SAFTA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2004년 1월 4일	FTA
인도-스리랑카 FTA	스리랑카	1998년 12월 28일	FTA
APTA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한국, 스리랑카, 중국	2005년 11월 2일	TA
인도-MERCOSUR	MERCOSUR	2004년 1월 25일	PTA

제 4 장 인도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고찰

PTA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인도-칠레 PTA	칠레	2006년 3월 8일	PTA
인도-부탄 무역협정	부탄	2006년 7월 28일	FTA
인도-싱가포르 CECA	싱가포르	2005년 6월 29일	CECA
인도-아프카니스탄 PTA	아프카니스탄	2003년 3월 6일	PTA
인도-ASEAN 기본협정	ASEAN (부르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베트남)	2003년 10월 8일	FA
인도-태국 기본협정	태국	2003년 10월 9일	FA
BIMSTEC 기본협정	부탄,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2004년 2월 8일	FA

예를 들어, 1993년에 체결된 SAPTA는 체결 당시부터 계약국 사이의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역내무역의 특혜를 인정한 것(Preferential Trade Agreement, PTA)이었다. SAPTA가 발효될 당시, 이미 FTA 체결을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2004년 체결된 SAFTA는 바로 그 결과이다. SAFTA는 이행규정을 두어 자연스럽게 기존의 SAPTA를 대체하였다.<sup>117)</sup>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인도와 칠레 사이의 PTA를 들 수 있는데, 인도는 칠레와 2006년 PTA를 체결하

117) SAFTA 제22조.

면서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PTA 이전 또는 유사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일반무역협정(Trade Agreement, TA)이 PTA 등으로 변화한 예도 있다. 1975년 체결된 방콕 협정은 체약국들의 관계발전, 지역협력 강화 등의 국제경제질서 변화, 중국 등 새로운 참여국의 영향과 같은 요소로 인하여 보다 특혜적이고 체약국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APTA로 바뀌었다. 또한 인도-싱가포르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는 발전된 수준의 FTA로 나아가기 위한 협정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인도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을 보면,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FA)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FTA를 체결하기 위한 당사국 사이의 공동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2003년 체결된 인도-ASEAN의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은 FTA 체결을 목표로 하여, 그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협정이다. 인도-ASEAN 사이의 무역협상위원회(TNC)의 설치에 위 FA에 근거한 것이다.

인도-태국의 FA는 물품에 대한 관세자유화를 실시하면서, 서비스무역 및 투자, 경제협력 분야까지의 범위를 규율하려는 FTA로 나아가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FA를 근거로 한 양국간 TNC가 FTA 규정 마련을 위한 협상을 비롯하여 원산지규정 등 이에 필요한 공동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BIMSTEC의 기본협정문에서는 FTA의 체결을 목표로 할 것임을 명시하여, 본 FA가 그 기초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 2. 복수국간 협정에서 최저개발체약국에 대한 배려

인도가 체결한 복수국간 지역무역협정들에서는, 최빈국들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는 규정들이 많다. SAFTA 제11조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 중에서 UN이 규정한 최저개발체약국들(the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에 대해서는 예외적이고 특별한 대우를 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한 대우에는, SAFTA 제7조사의 무역자유화계획을 이행하



는데 있어서 보다 긴 이행기간과 보다 낮은 비율의 관세인하 이외에도 양허확대에 있어서의 예외,<sup>118)</sup>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특별한 조치,<sup>119)</sup> 그리고 부속서상 민감품목목록에 대한 특별대우,<sup>120)</sup> 기술지원,<sup>121)</sup> 관세수입손실에 대한 보상제도,<sup>122)</sup> 원산지규정<sup>123)</sup> 등이 있다. SAFTA의 전신인 SAPTA 역시 이러한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최저개발체약국에 대한 특별대우 조항은 또다른 복수국간 협정인 APTA에서도 찾을 수 있다. APTA 제 7 조의 최저개발체약국에 대한 특별양허규정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면제 및 독점권 등의 확대에 있어서의 예외,<sup>124)</sup> 기술지원과 협력에 관한 특별대우<sup>125)</sup> 등도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규정들이 많은 이유는, 지정학적으로 인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관련이 깊다. 즉, 남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지역무역협정 체결 정책을 시작한 인도가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네팔 등 인접해 있는 최빈국들과 SAPTA, SAFTA 등의 협정체결을 하면서, 이들 최빈국들의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인도가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들 주변국가들과 함께 참여한 APTA 등에도 최빈국들에 대한 우대조항을 삽입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최빈국이 포함된 남아시아 지역이 다른 국가 또는 지역협력체와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예정인 경우, 이와 같은 최빈국 고려조항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

118) SAFTA 제 9 조.

119) SAFTA 제16조 제 8 항.

120) SAFTA 부속서 I.

121) SAFTA 부속서 II.

122) SAFTA 부속서 III.

123) SAFTA 부속서 IV.

124) APTA 제14조.

125) APTA 제15조.

### 3. 양자간 협정과 복수국간 협정의 혼재

인도가 체결한 FTA 및 지역무역협정은, 상대국이 하나인 경우도 있고 복수인 경우도 있다. 인도-스리랑카 FTA, 인도-칠레 PTA, 인도-싱가포르 CECA, 인도-태국 기본협정 등이 인도가 양자간 협정을 체결한 경우이다. 반면에 인도는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SAFTA, MERCOSUR 국가들과의 PTA, ASEAN 국가들과의 기본협정 등 복수국 또는 지역협력체와의 협정도 다수 체결하였다.

양자간 지역무역협정이 가지는 가장 큰 규범적 기능은, 당사국 사이의 공통적 무역규범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당사국은 무역규범을 공유하여 보다 완전한 지역협력체로 발전하기 위한 규범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sup>126)</sup> 인도와 스리랑카의 FTA는 이러한 기능은 물론, 양국이 SAARC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또한 양국 사이의 FTA가 인도를 둘러싼 SAFTA 체결국들 사이의 FTA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확산, 즉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도미노 현상’<sup>127)</sup>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다른 지역과의 협력이나 협정의 체결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sup>128)</sup>

국가와 지역협력체 사이에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체결국에게 기존의 지역주의 체제에 포함되는 계기를 마련해주거나, 인접한 지역주의에 의해서 고립되는 것을 방지한다. 만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와 지역협력체가 서로 인접하거나 공동의 역내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면, 체결국은 상대방 지역협력체에 보다 쉽게 편입될 수 있을 것이다.<sup>129)</sup>

126) 김봉철, 앞의 책, 110면.

127) 김봉철, 위의 책, 109면 참고.

128) APTA에서 인도와 스리랑카는 양자간 FTA 체결로 상호간 양허사항을 교환할 필요가 없었다.

129) 김봉철, 앞의 책, 110면.

인도가 체결한 SAFTA는, 인도가 남아시아지역 역내시장을 형성하여 보다 큰 규모의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해 주었다. 더 나아가, 인접 지역협력체인 ASEAN과의 기본협정 체결은 인도의 시장을 더욱 키우는 역할뿐만 아니라, 규범적으로도 인도가 ASEAN과의 거리를 좁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와 지역협력체가 인접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양자는 기존의 지역주의 체제 밖으로 역외무역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규범적 측면에서 볼 때, 결국 이러한 현상은 지역주의의 배타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은 지역주의가 WTO와 같은 다자주의로 수렴하거나 발전하는데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sup>130)</sup> 인도와 MERCOSUR의 PTA는 이와 같은 규범적 기능을 하고 있다.

지역협력체 사이에도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데, 지역협력체 사이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각 지역협력체가 더욱 큰 규모로 통합·발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현상 역시 지역무역협정이 지역주의에서 다자주의로 수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과도기적인 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31)</sup> SAARC의 회원국들과 ASEAN의 회원국들이 협력하여 체결한 BIMSTEC 기본협정은 ‘지역협력체+지역협력체’와 유사한 규범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4. 협정 상대국의 중복

인도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들에서 상대국이 중복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인도-스리랑카 FTA, SAFTA, APTA, BIMSTEC 기본협정에는 모두 스리랑카가 상대국이 되거나 체약국 중 하나가 되어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인도와 CECA를 체결한 동시에 인도-ASEAN 기본협정의

130) 김봉철, 위의 책, 111면.

131) 김봉철, 위의 책, 111면.

체약국이다. 태국 역시 인도-ASEAN, 인도-태국 기본협정, BIMSTEC 기본협정의 체약국으로 중복되어 인도와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상대국 중복현상은, 우선 지역주의 및 지역무역협력체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인도와 스리랑카는 양국의 FTA를 바탕으로, SAARC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공동의 무역규범원칙을 주장하기 용이할 것이다. 반면에 이와 같은 상대국 중복현상이 지역무역협력체의 확장 또는 지역협력체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도와 태국은 양자간 협력과 동시에 SAARC의 중심국과 ASEAN의 중심국으로서 두 지역협력체 사이의 연계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양국이 체결한 협정들에서 상대국으로서 중복되는 경우, 이 협정들은 인도와 태국의 결속 강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SAARC와 ASEAN의 연계 및 규범조화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물론 상대국 중복현상이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도미노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 제 5 장 인도의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의 특별규정 적용 검토

### 제 1 절 개발도상국에 관한 WTO의 특별취급

#### 1. WTO와 개발도상국

150여 WTO 회원국들 중에서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은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이들은 WTO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간이 흐를수록 국제무역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도상국 스스로도 무역을 생존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WTO는 공식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 회원국들 스스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고 분류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 국가들에게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WTO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sup>132)</sup>

- a. 장기간의 이행기간,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개발도상국들에 관한 WTO 협정의 특별규정
- b. WTO 조직 내 ‘무역 및 개발 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구 및 지원
- c. WTO 사무국의 기술적 지원

#### (1) 개발도상국에 관한 WTO 협정의 특별규정

WTO 협정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하고 특혜적인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약속하는 다수의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sup>132)</sup>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dev1\\_e.htm](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dev1_e.htm)

GATT는 무역과 개발에 관한 제4장에서, 선진국들에 양허를 제공하는 경우에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양허를 기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무역협상에 있어서 호혜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서비스에 관한 협정인 GATS 역시 이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특별취급 규정을 두고 있다.

이밖에 WTO 협정들이 개발도상국에 관련하여 포함하는 규정들의 내용은, 의무이행에 있어서 장기간의 이행기간 허용, 일부 품목에 있어서 개도국에 대한 유리한 시장접근 기회제공,<sup>133)</sup> 국내 또는 국제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요건<sup>134)</sup> 등이다.

## (2) 무역 및 개발 위원회

WTO의 무역 및 개발 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 개발도상국과 관련한 것은, 개발도상국 관련 WTO 협정의 규정 이행 감시, 기술지원에 관한 지침 제시, 개발도상국의 무역질서 참여유도 등이다. WTO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특별계획을 본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개발도상국들 사이에 체결된 지역무역협정 역시 본 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이를 검토한다. 이밖에, 본 위원회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품을 우대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에 관련 계획을 검토한다.

개발도상국은 다시 일반적인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y)과 ‘최빈개도국’(최저개발국, Least Developed Country)으로 나누어진다. WTO 무역 및 개발 위원회에는 최빈개도국(최저개발국)의 문제를 전담하는 하부위원회(Sub-committee)가 설치되어 있다. 본 위원회는 최빈개도국

133) 섬유, 서비스,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분야가 여기에 해당한다.

134) 반덤핑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분야가 여기에 해당한다.

(최저개발국)이 다자주의 규범체계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WTO 협정들에 포함된 최빈개도국(최저개발국) 관련 특별 규정들의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

### (3) WTO 사무국의 기술적 지원

WTO 사무국(WTO Secretariat)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하여 분쟁해결절차에서 도움을 주고 법률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WTO의 교육 및 기술협력원(Training and Technical Cooperation Institute)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2001년에는 32개의 WTO 회원국이 함께 WTO 법률자문센터를 설치하였다. 모든 최빈개도국(최저개발국)은 자동적으로 이곳의 자문을 얻을 수 있으며, 기타 개발도상국들은 일정 요금을 지급하고 자문을 얻을 수 있다.<sup>135)</sup>

## 2. WTO 출범 후의 최빈개도국(최저개발국)에 대한 대우

WTO는 UN이 지정한 최빈개도국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UN이 지정한 최빈개도국은 50개국이며, 이중 32개국이 WTO 회원국이다. 또한 8개국이 가입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개국이 옅저버의 지위를 획득하였다.<sup>136)</sup> 최빈개도국(최저개발국)에 대해서는 WTO가 더 높은 수준의 대우와 지원을 약속하는데, 모든 WTO 협정들에는 최빈개도국의 수출에 대해 최대한의 융통성과 최저의 무역장벽을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금까지 최빈개도국에 대해 호의적인 수차례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135)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dev2\\_e.htm](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dev2_e.htm)

136)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7\\_e.htm](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7_e.htm)

1996년 WTO 싱가포르 각료모임에서는 최빈개도국을 위한 행동계획(Plan of Action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이 합의되었다. 그 내용은 다자주의 무역체계 참여를 위한 기술적 지원과 최빈개도국 상품의 시장접근 증진을 위한 선진국들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1997년에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연합 무역과 개발 위원회(United Nations Conference for Trade and Development), 국제연합 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세계은행(World Bank), WTO 등 여섯 개의 국제기구들이 최빈개도국을 위한 공동기술지원계획인 ‘통합 구상’(Intergrated Framework)을 발족하였다.

2002년에는 WTO가 최빈개도국에 대한 작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시장접근 증진, 기술지원, 최빈개도국 경제의 다양화를 위한 단체의 지원, WTO 업무참여를 위한 도움, 최빈개도국의 WTO 가입협상 신속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동시에, 더욱 많은 국가들이 최빈개도국 수출에 대하여 관세 또는 기타 제한을 축소하고 있다.

### 3.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허용조항

허용조항(enabling Clause)은 개발도상국들이 세계무역에 참여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이들 국가들이 다자주의의 일원으로서 보다 완전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쿄라운드에서 합의하여 GATT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조항이다.<sup>137)</sup> 이 조항은 1971년에 채택된 일반특혜 관세제도(GSP)에서 인정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

137) 허용조항은 1979년 11월 28일 GATT 결정(L4903)으로, 공식명칭은 ‘개발도상국의 우호적인 대우, 상호주의, 전면적 참여에 관한 결정’(Decision on Differential and Most-Favou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이며 수권조항 또는 권능부여조항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허용조항은 개발도상국 사이에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의 인하와 철폐를 통한 특혜적인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허용한다.<sup>138)</sup> 허용조항 제 3 항은 GATT 제24조 제 4 항과 유사한 조건을 마련하여, 개발도상국 사이의 지역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려고 하였다. 본 항에서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지역무역협정에 관해 두 가지 요건을 제시하는데, 첫째 이러한 협정은 개발도상국 사이의 무역을 촉진시키고 장려하기(facilitate and promote) 위한 것이어야 하며, 둘째 다른 회원국에 대한 장벽이나 부당한 어려움(undue difficulties)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허용조항은 GATT 제24조와 달리 이러한 지역무역협정들이 최혜국대우 감소조치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의 철폐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 4 항에서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정의 도입과 수정 또는 철폐의 경우에는 통보되어야 하며, 제 3 국이 협의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통보는 WTO 무역 및 개발 위원회에 해야 한다. 본 위원회는 통보 내용을 검토하고, 일반적인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것과 같이 심층적인 검토절차를 자동으로 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상품무역 위원회(Council for Trade in Goods)에 대한 통보와 지역무역협정 위원회(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CRTA)의 구체적 검토를 요하는 GATT 제24조에 근거한 일반적인 지역무역협정의 절차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GATT 제24조나 GATS 제 5 조와 달리 허용조항은 당사국 사이의 무역자유화에 관한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 요건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 상당한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허용조항에 근거하여 체결된 지역무역협정 중에서 GATT 또는 WTO에 통보된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sup>139)</sup>

138) 허용조항 제 2 항.

139)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provision\\_e.xls](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provision_e.xls)

< 표 18 > 허용조항을 근거로 GATT 및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협 정	발효일	통보일	성 격
인도-스리랑카	2001. 12. 15	2002. 6. 27	FTA
아세안-칠레	2003. 7. 1	2004. 12. 21	PTA
EAC	2000. 7. 7	2000. 10. 11	PTA
CEMAC	1999. 6. 24	2000. 9. 29	PTA
WAEMU/UEMOA	2000. 1. 1	2000. 2. 3	PTA
MSG	1993. 7. 22	1999. 10. 7	PTA
COMESA	1994. 12. 8	1995. 6. 29	PTA
SAPTA	1995. 12. 7	1997. 4. 25	PTA
AFTA	1992. 1. 28	1992. 10. 30	PTA
CAN	1988. 5. 25	1990. 10. 12	PTA
ECO	-	1992. 7. 22	PTA
라오스-태국	1991. 6. 20	1991. 11. 29	PTA
GCC	-	1984. 10. 11	PTA
ALADI(LAIA)	1981. 3. 18	1982. 7. 1	PTA
SPARTECA	1981. 1. 1	1981. 2. 20	PTA
방콕협정	1976. 6. 17	1976. 11. 2	PTA
중국 가입의 방콕협정	2002. 1. 1	2004. 7. 29	PTA에 가입
GSTP	1989. 4. 19	1989. 9. 25	PTA

PTN	1973. 2. 11	1971. 11. 9	PTA
TRIPARTITE	1968. 4. 1	1968. 2. 23	PTA
ECOWAS	1995. 6. 15	2005. 9. 26	관세동맹
MERCOSUR	1991. 11. 29	1992. 3. 5	관세동맹

## 제 2 절 인도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 특별규정의 적용

### 1. 허용조항의 적용요건 검토

인도가 체결한 FTA 및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 WTO가 특별한 대우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그러한 요건들을 살펴보고,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 (1) WTO 회원국

어느 국가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 허용조항을 적용받거나 WTO가 특별한 대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국가가 WTO의 회원국일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인도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범 체계 내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협정의 체결 당사국인 인도 스스로가 WTO 회원국이어야 하는 것이다.

WTO는 2007년 1월 현재 총 150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도는 1995년 1월 1일 WTO의 출범 당시부터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sup>140)</sup>

<sup>140)</sup>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6\\_e.htm](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6_e.htm)

## (2) 개발도상국 사이의 지역무역협정

허용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당사자가 모두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이어야 한다. 즉,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자 모두 WTO가 인정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인도는 WTO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개발도상국이다. 따라서 인도가 체결하는 다른 개발도상국가와의 FTA 등 지역무역협정은 WTO의 허용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 (3) 내용상의 검토

WTO에 통보되는 지역무역협정의 내용이 WTO 체계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를 인정할 수 있는 성질이어야 한다. 즉, 해당 FTA 또는 지역무역협정은 WTO 규범 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WTO 회원국들의 용인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당사국의 무역자유화를 이룩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통보되는 지역무역협정의 내용이 WTO의 기본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다른 회원국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면, 위원회의 내용 검토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또한 그러한 협정이 WTO 질서에 배치된다면, 통보절차 이후 그 협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당사국이 취하는 조치가 제3국의 반발을 사게 될 가능성이 높다.

허용조항 제 6 항에서는 최빈개도국(최저개발국)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는 보다 특혜적인 조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무역협정의 내용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다.

## 2. 인도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허용조항 적용 사례

인도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GATT 및 WTO 체제에서 부여하는 개발도상국 관련 혜택을 잘 이용하였고, 때로는 이러한 사항들을 국제사회에 강력히 요구하기도 하였다. 1976년 체결된 방콕협정은 GATT 체제에서 허용조항을 근거로 통보된 바 있다. 2002년 본 협정에 중국이 가입한 바를 2004년 WTO에 통보한 당시에도 허용조항을 근거로 하였다.

인도는 양자간 FTA를 체결하면서도 허용조항을 근거로 한 예를 가지고 있다. 2001년 체결된 인도-스리랑카 FTA를 2002년에 WTO에 통보할 당시, 인도는 허용조항을 근거로 WTO가 인정하는 개발도상국의 혜택을 원하였다.

현재 체결되었거나 진행 중인 인도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 중에서 상당수가 개발도상국을 상대방으로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앞으로도 인도는 허용조항을 근거로 WTO가 부여하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즉, 다수의 ASEAN, APTA, BIMSTEC 소속 국가들과의 협정이 체결되었거나,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인도가 허용조항을 이용할 경우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 3. GATT 제24조 제11항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상황에서 파키스탄이 분리되었다. 당시 인도와 파키스탄은 정치적인 이유로 분리되어 독립하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이미 오랫동안 단일 경제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GATT 체제가 출범하면서, 체약국들은 이러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제적 특수성을 인정하였다.

GATT 1947 협정문은 이와 같이 GATT 체약국들이 인정한 인도와 파키스탄 경제의 특수성을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GATT 제24조 제11항

은 관세동맹과 FTA를 인정하는 규정들 사이에 인도와 파키스탄에 관한 특별 예외를 설정하여, 양국이 무역에 관한 특별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의 요건들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다음은 GATT 1947 제24조 제11항의 내용이다.<sup>141)</sup>

< 표 19 > GATT 제24조 제11항의 내용

체약당사자들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독립국가로서 수립된 데서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양국이 오랫동안 하나의 경제단위를 구성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여, 그들 상호간의 무역관계가 확정적인 기초 위에 수립될 때까지는 이 협정의 규정은 양국이 양국의 무역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데 동의한다.

GATT 1947의 내용은 우루과이 라운드와 함께 태어난 WTO 체제에서도 대부분 수용되었다. 즉, GATT 1947의 내용을 약간 수정하거나 보강한 GATT 1994에서도 제24조 11항은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141) [http://www.mofat.go.kr/mofat/mk\\_a013/mk\\_b067/mk\\_c082/1142381\\_1496.html](http://www.mofat.go.kr/mofat/mk_a013/mk_b067/mk_c082/1142381_1496.html)

## 제 6 장 한-인도 FTA에 대한 법적 분석과 대응

### 제 1 절 한국의 FTA

#### 1. FTA 정책의 추진

##### (1) 정책의 추진 배경

한국은 오랫동안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적 국제무역질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sup>142)</sup>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FTA 체결을 비롯한 이른바 지역주의 현상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무역차별을 받게 되었다. 즉, 역외국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대외관세율과 비관세 무역장벽은 우리 기업들의 해당 시장의 접근을 점차 어렵게 하였고, WTO 규범을 통하여 이러한 역외차별적 요소를 제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서 WTO 차원의 무역환경 개선만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WTO의 출범 이후 변화하는 무역현실에 대처하고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FTA 체결을 통한 개방정책이 필수적이고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FTA가 다양한 무역 분야에서 WTO보다 발전된 규범형태를 포함하므로, 개방정책에 수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WTO 스스로 FTA의 체결 등이 세계무역자유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한 사실도 한국이 FTA 정책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상황은,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국내 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무역시장을

142) 즉, 1996년 WTO 싱가포르 각료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WTO의 지역주의 관련 규범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자유무역협정에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많은 국내 기업들은 외국과의 협정 체결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세계적인 기업들과 제휴하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FTA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비교적 좋은 수단으로 평가되었다.<sup>143)</sup>

### (2) 대외경제조정위원회와 FTA 정책

정부가 FTA 정책을 추진하기로 공식 결의한 것은 1998년 11월 5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대외경제조정위원회가 처음이었다. 동 위원회에서는 국내 산업과의 상호보완성, 해당지역에서의 비중, FTA의 체결의사 등을 감안하여 칠레와의 FTA 협상을 우선 시작하기로 의결하였다. 칠레와의 무역은 공산품 위주의 수출과 원자재 수입으로 상호보완적이고, 칠레가 중남미 각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농수산물 중에서 일부 취약품목은 FTA의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로 기본방향을 정하였다.

한편 대외경제조정위원회는, 칠레와의 FTA를 진행하면서 주요 무역국인 미국, 일본, 중국 등 기타 국가와의 FTA 체결 타당성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협상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대외경제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FTA 정책을 진행하기 위한 새로운 FTA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후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FTA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 (3) FTA 정책의 추진과 전략

정부는 칠레 이외에도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여러 국가들과 함께 FTA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조사를 실

---

143) 김봉철, 앞의 책, 155~156면.



시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한-칠레 FTA<sup>144)</sup> 체결 이후 한-싱가포르 FTA,<sup>145)</sup> 한-EFTA FTA<sup>146)</sup>가 이미 발효되었고, ASEAN,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10여개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ASEAN과는 상품분야의 경우 이미 협상을 타결하고 현재 서비스 및 투자 부문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최근에는 한-미 FTA 협상이 마무리 되면서 국내외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우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FTA 전략은 첫째, 동시다발적인 추진으로 FTA 체결진도를 단기간에 만회하여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각 FTA마다 나타나는 서로 다른 효과들을 상호 상쇄·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경제의 선진화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지향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흥유망시장과의 FTA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FTA 내용에 있어 상품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WTO plus적인 FTA를 지향하는 것이다.<sup>147)</sup> 넷째, 체계적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를 추진하는 것이다.<sup>148)</sup>

## 2. 한-칠레 FTA

### (1) 협정의 체결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1998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칠레가 FTA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

144) 2004년 4월 발효.

145) 2006년 3월 발효.

146) 2006년 9월 발효.

147)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 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WTO 규범을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한다.

148) [http://www.fta.go.kr/fta\\_korea/policy.php](http://www.fta.go.kr/fta_korea/policy.php)

의하면서, FTA를 체결하기 위한 약 4년 동안의 협상이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999년 서울과 산티아고에서 각각 4월과 6월에 개최된 작업반 회의 이후, 같은 해 12월에 산티아고에서 제 1 차 협상부터 2002년 8월까지 서울과 산티아고에서 모두 다섯 차례의 협상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진행되었다.<sup>149)</sup>

2002년 9월부터는 제네바에서 상품양허안에 관한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10월에 제네바에서 있었던 제 6 차 협상을 끝으로 칠레와의 FTA 협상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공식적인 서명은 2003년 2월 15일 칠레의 라고스 대통령의 한국 방문 당시 서울에서 이루어졌다. 한국과 칠레의 FTA 협정안은 양국의 의회에서 비준동의 등 국내법적 절차를 거쳐 2004년 4월에 발효되었다.

## (2) 협정의 의미

칠레와의 FTA는 한국이 체결한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칠레와의 FTA는, 주요 무역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통합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WTO 체제의 세계경제질서 속에서도, 한국이 지역주의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자주적으로 상대국을 선택하여 FTA를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칠레는 우리와의 FTA 체결 이전부터 이미 세계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특히 MERCOSUR의 준회원국으로 제 3 국이 남미시

---

149) 협상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한국이 제시한 농산물 양허안에 대한 칠레의 반발이었다. 한국은 농업부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산물 중에서 377개의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 예외적인 조치를 요구하였고, 모두 1432개 품목 중에서 15.5%인 222개 품목은 즉시 관세를 제거하고 37.7%인 539개 품목은 5년 내에 관세를 제거하며, 나머지 품목은 10년의 관세유예기간을 두거나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이후로 협상을 미루도록 하였다. 칠레는 우리의 양허안이 농산물 분야에서 관세체거의 시한을 설정하지 않은 예외적인 조치를 다수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하였다.

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sup>150)</sup> 따라서 칠레와의 FTA는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이 빠르게 남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FTA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즉, 쌀, 사과, 배 등을 협정의 적용에 있어서 예외품목으로 설정하고, 포도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고추, 마늘, 양파, 낙농제품 등 관세율이 높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여 농업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 것이다. 반면에 승용차, 화물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등 칠레 수출의 약 66%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관세가 사라지기 때문에 칠레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의 많은 FTA 또는 지역경제협력체들은 인접한 국가 사이의 무역장벽제거와 역내무역확대를 추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지역에 속하는 국가 사이에도 FTA가 체결되어 배타성이 축소되는 최근의 현상은, 지역경제협력체 사이의 연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경제협력체의 규범과 WTO 규범의 조화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칠레의 FTA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지역을 달리하는 아시아와 남미지역 국가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FTA이라는 점에서 국제경제법적인 가치가 크다.

### (3) 협정의 구조

칠레와의 FTA 규범은 전체 6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부는

150) 칠레는 볼리비아와 함께 이후 준회원 자격으로 MERCOSUR와 자유무역시장을 형성하고 있다[Kim, Dong-Hoon/Kim, Bong-Chul, "A Study on the FTAs of BRICs in WTO Legal System". HUFs Law Review Vol. 23, Law Research Institute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06. 8, pp. 332~333]. 최근에는 멕시코가 준회원국이 되었다[Jo-Ann Crawford and Roberto V. Fiorentino, "The Changing Landscape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Discussion paper, WTO, 2005, p. 10].

‘최초조항’과 ‘일반적 정의’로 나누어지며, 여기에서는 협정 전반에 적용되는 총론적인 일반조항을 두었다.

제 2 부는 ‘상품무역’에 관한 규정이고,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과 부속서, ‘원산지규정’과 그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통관절차’를 규정하는 동시에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조치’와 ‘상계 관세조치’ 등 일반적인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표준관련 조치’와 그 부속서로 이루어진다.

제 3 부는 ‘투자 및 서비스’에 관한 부분이다. ‘투자일반’에 관한 규정과 부속서, ‘국경간 서비스 무역’과 부속서, ‘전기통신’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과 부속서, ‘기업인의 일시적인 입국’에 관한 내용과 부속서를 포함한다.

제 4 부는 ‘경쟁, 정부조달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정이다. ‘경쟁규범’, ‘정부조달’과 부속서, ‘지적재산권’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 5 부는 ‘행정 및 제도’와 관련된 규정이 나타나 있는데, ‘투명성’, ‘협정의 운영’과 그에 관한 부속서, 양 당사국 사이의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과 부속서로 구성된다. 이밖에 제 6 부에서는 예외규정과 최종조항을 두고 있다.<sup>151)</sup> 협정문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sup>152)</sup>

< 표 20 > 한-칠레 FTA 협정문의 구성

제 1 부
제 1 장 : 최초조항
제 2 장 : 일반적 정의
제 2 부
제 3 장 :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우리측 양허안/칠레측 양허안)

151) [http://www.fta.go.kr/fta\\_korea/protocol\\_kor\\_chile.php](http://www.fta.go.kr/fta_korea/protocol_kor_chile.php)

152)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2003. 3, 16-17면.

- 제 4 장 : 원산지 규정
  - 부속서
- 제 5 장 : 통관 절차
- 제 6 장 : 긴급수입제한조치
- 제 7 장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사항
- 제 8 장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제 9 장 : 표준관련 조치
  - 부속서
- 제 3 부 투자 및 서비스
- 제 10 장 : 투자
  - 부속서
- 제 11 장 : 국경간 서비스 무역
  - 부속서
- 제 12 장 : 전기통신
  - 부속서
- 제 13 장 : 기업인의 일시입국
  - 부속서
- 제 4 부 경쟁, 정부조달 및 지적재산권
- 제 14 장 : 경쟁
- 제 15 장 : 정부조달
  - 부속서
- 제 16 장 : 지적재산권
  - 부속서
- 제 5 부 행정 및 제도관련 규정
- 제 17 장 : 투명성
- 제 18 장 : 협정의 운영
  - 부속서
- 제 19 장 : 분쟁해결
  - 부속서
- 제 6 부 기타 규정
- 제 20 장 : 예외
- 제 21 장 : 최종 조항



### 3. 한-싱가포르 FTA

#### (1) 협정의 체결

한국과 싱가포르의 FTA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99년 9월 APEC 정상회담 당시 싱가포르측이 우리 정부에 FTA 체결을 제안한 것에서 출발한다. 이어 2002년 11월 시드니 WTO 소규모 각료회의시 개최된 양국간 통상회담에서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발족하기로 합의하였고, 2003년 3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의 공동연구 회의가 개최되었다.<sup>153)</sup>

2003년 10월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는 정부간 FTA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2004년 11월 라오스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담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중 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였음을 선언하였다. 본 협정안은 실무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2005년 4월에는 가서명되었으며, 2005년 8월 4일 서울에서 정식으로 서명되었다.<sup>154)</sup> 이 협정은 2005년 12월에 국회의 비준을 얻어 2006년 3월부터 발효되었다.

#### (2) 협정의 의미

한-싱가포르 FTA는 한-칠레 FTA 이후 한국의 두 번째 FTA가 되었다. 싱가포르와의 FTA는 칠레와의 FTA 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우선, 싱가포르는 동아시아의 무역센터이자 세계적인 물류·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 다국적기업의 유망 투자대상지역

153)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Korea-Singapore Joint Study Group Report, 2003. 10. 참고.

154)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싱 FTA 홍보자료□□, 2005. 8. 4, 1면.

이다. 따라서 한국은 FTA 체결을 통해서 싱가포르와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여 한국의 경제체계를 선진화시키고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투자유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동북아 허브를 지향하는 한국이 동남아 허브인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여, 국내 기업의 동남아 진출을 강화하는 기반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은, 2005년부터 개시되어 진행중인 한-ASEAN FTA 협상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는 한-칠레 FTA에 비하여 그 대상범위와 내용에 있어서 보다 포괄적인 FTA라고 할 수 있다. 즉, 한-싱가포르 FTA는 상품무역의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정부조달·지적재산권 등 기타 분야에서 다양한 무역 및 투자의 확대방안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한-칠레 FTA에서 규정하지 않은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기술표준 적합성에 대한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협력 분야 등도 추가되었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한-싱가포르 FTA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개성공단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남한을 거쳐 싱가포르로 수입될 경우에 한국산으로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어 FTA의 특혜관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점이다.<sup>155)</sup>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과 같이 취급토록 함으로써, 싱가포르를 시발점으로 하여 북한산 물품에 대해서 해외 관료를 개척하기 위한 선례를 구축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한국의 ‘WTO 이행법’(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내용과 일치한다.<sup>156)</sup> 이 조항이 특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1991년 남북한이 쌀과 시멘트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한 것을 미국이 남북한 사이의 거래가 국제거래라고 하여 GATT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sup>157)</sup>

155) 제 4 장 원산지 규칙에 대한 부속서 제4.3조.

156) 본법 제 5 조는 남북한 사이의 거래가 민족내부거래로서 WTO 협정에 의한 일반 적인 국가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 (3) 협정의 구조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은 전문과 본문 22장, 그리고 부속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분량만 약 1,600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며, 칠레와의 FTA 규정에 비교하여 보다 자세한 규정들이 많다. 협정문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sup>158)</sup>

#### < 표 21 >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의 구성

전 문
제 1 장 : 일반조항
제 2 장 : 일반적 정의
제 3 장 :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 관세철폐계획
제 4 장 원산지 규칙
- 부속서 : 품목별 원산지기준
- 부속서 : 4.3조(개성공단관련조항)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 부속서 : 4.4조(역외가공)에서 규정된 상품
제 5 장 : 통관절차
- 부속서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부속서 : 대한민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
- 부속서 : 싱가포르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
- 부속서 : 관세접촉선
제 6 장 : 무역구제
제 7 장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 8 장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
- 부속서 : 전기통신기기 관련 분야별 부속서
제 9 장 : 국경간 서비스 무역
- 부속서 : 현재조치 및 자유화약속에 대한 유보

157) 서헌제, □□대외통상환경의 변화와 법제개편□□, 집문당, 1996, 30면 참조.

158) [http://www.fta.go.kr/fta\\_korea/protocol\\_kor\\_singapore.php](http://www.fta.go.kr/fta_korea/protocol_kor_singapore.php)



- 부속서 : 미래조치에 대한 유보
- 부속서 : 제 9 장(국경간서비스무역)에 대한 추가적인 약속
- 부속서 : 전문직 서비스

제10장 : 투 자

제11장 : 전기통신

제12장 : 금융서비스

- 부속서 : 구체적 약속
- 부속서 : 금융서비스활동

제13장 : 기업인의 일시입국

- 부속서 :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4장 : 전자상거래

제15장 : 경쟁

제16장 : 정부조달

- 부속서 : 정부조달 범위
- 부속서 : 정부조달 이행

제17장 : 지적재산권

제18장 : 협력

- 부속서 : 협력(세부분야별 협력)

제19장 : 투명성

제20장 : 분쟁해결

- 부속서 : 모범 절차규칙

제21장 : 예외

제22장 : 행정 및 최종조항

일반조항과 일반적 정의를 규정한 제 1 장과 제 2 장을 제외한 협정문의 각 장은 분야별 규율과 합의사항을 담고 있는데, 제 3 장부터 제11 장까지는 각각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원산지 규칙 및 통관절차, 무역구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 국경간 서비스 무역, 투자, 전기통신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밖에, 제12장부터 제20장까지는 금융서비스, 기업인의 일시입국,

전자상거래, 경쟁,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투명성, 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한 사항이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 제21장과 제22장은 예외와 행정 및 최종조항이다. 부속서는 상품에 대한 상세한 관세제거계획, 품목별 원산지 기준, 원산지증명서 서식,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에 대한 유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4. 한-EFTA FTA

##### (1) 협정의 체결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서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연합체인 EFTA와의 FTA는, 한-칠레 FTA가 발효될 무렵인 2004년 그 추진타당성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한 것에서 출발한다. 2005년 1월부터 EFTA와의 FTA 체결을 위한 네 차례의 공식협상이 개최되었고, 협상이 비교적 빨리 진행되어 같은 해 7월 중국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의에서 FT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하였다.

2005년 12월에는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으며,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한 법적 절차도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 되었다. 즉, 2006년 2월 국무회의를 거쳐 6월에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06년 9월부터 발효된 것이다.

##### (2) 협정의 의미

한-EFTA FTA는,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에 이은 한국의 세 번째 FTA이다. 한-EFTA FTA는 이전의 칠레, 싱가포르와의 FTA와는 달리 4개국이 모인 지역경제협력체의 FTA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159)</sup> 또한 EFTA는 비교적 큰 규모의 선진경제권이며,<sup>160)</sup> 양측의 상

159) 이에 따라서 각 EFTA 구성국들의 상황에 맞춘 양자간 협정들이 포함되기도 하는 등 협정문 자체의 구조도 복잡하다.

호보완적인 산업구조로 인하여 FTA의 상호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한-EFTA FTA를 통해서 유럽지역의 본격적 진출을 위한 규범적 틀을 조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유럽시장에 국산 제품의 수출을 위한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EU시장과 사실상 동일한 경제권인 EFTA에 대한 진출이 EU시장 진출로 연계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EU와의 FTA 체결을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한-EFTA FTA 경험이 EU와의 FTA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sup>161)</sup>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WTO 및 다자주의 차원의 협상에 대비한 국내 서비스 시장의 시범적인 개방 및 EFTA의 선진기법 도입의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즉, EFTA와의 FTA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2차 양허안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을 시범적으로 개방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향후 다자주의 협상의 전면적인 개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 및 해운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EFTA로부터 선진기법을 전수받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투자협정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을 제거하고 투자자유화 대상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투자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하여, 비교적 우리에게 우호적인 투자자인 EFTA로부터의 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할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이밖에 한-EFTA FTA는, 한-싱가포르 FTA에 이어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부여를 그 내용에 반영하여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해외 판로의 확보에도 기여하였다.<sup>162)</sup>

160) 2004년 현재 EFTA 4개국의 총 GDP는 6,220억 달러로 세계 9위권이며, 1인당 GDP는 평균 3만 2,979달러 수준이다.

161)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EFTA FTA 주요 내용□□, 2006. 8, 2면.

162) 김봉철, 『FTA 체결에 의한 한국무역규제법규의 변화』, □□무역구제□□ 25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7. 1, 87면.

### (3) 협정의 구조

한-EFTA의 FTA 협정문은 전문과 본문 10개 장, 부속서 13개, 그리고 농업 및 투자와 관련한 별도 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7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협정문의 각 장은 분야별 규율과 합의사항을 담고 있는데,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무역구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 인정, 서비스, 금융서비스, 경쟁,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협력, 투명성, 분쟁 해결 등에 대한 합의사항이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

부속서는 상품에 대한 상세한 관세철폐 계획, 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지리적 적용, 적용배제상품, 가공농산물의 범위, 어류 및 수산물, 통신서비스 양허표, 상호 인정,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최혜국대우 예외조항, 정부조달에 대한 접촉선, 지적재산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문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sup>163)</sup>

< 표 22 > 한-EFTA FTA 협정문의 구성

전 문
제 1 장 : 일반조항
제 2 장 : 상품 무역
- 부속서 I :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 부속서 II : 지리적 적용
- 부속서 III : 적용배제상품
- 부속서 IV : 가공농산물
- 부속서 V : 어류 및 기타 수산물
- 부속서 VI : 관세철폐 유형

163) [http://www.fta.go.kr/fta\\_korea/protocol\\_kor\\_efta.php](http://www.fta.go.kr/fta_korea/protocol_kor_efta.php)

<p>제 3 장 : 서비스 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속서 VII : 서비스 양허표</li> <li>- 부속서 VIII : 서비스 최혜국대우 면제리스트</li> <li>- 부속서 IX : 상호 인정</li> <li>- 부속서 X : 통신서비스</li> <li>- 부속서 XI :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li> </ul> <p>제 4 장 : 금융서비스</p> <p>제 5 장 : 경쟁</p> <p>제 6 장 : 정부조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속서 XII : 정부조달 접촉선</li> </ul> <p>제 7 장 : 지식재산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속서 XIII : 지식재산권 세부사항</li> </ul> <p>제 8 장 : 조직규정</p> <p>제 9 장 : 분쟁해결</p> <p>제 10 장 : 최종조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선언 (관세인하 일정 관련)</li> <li>- 의료기기에 관한 대한민국과 스위스에 의한 선언</li> <li>-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양해록(서비스 관련)</li> </ul>
---

투자협정과 농업협정으로 나누어진 별도의 협정문들은, 농업과 관련하여 한-아이슬란드, 한-노르웨이 및 한-스위스의 양자 농업협정, 그리고 한-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사이의 투자협정문<sup>164)</sup>이다. 투자와 농업에 관한 개별 협정문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표 23 > 한-EFTA 국가간 투자와 농업에 관한 개별 협정의 구성

<p>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간의 투자에 관한 협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속서 I : 대한민국의 유보조항</li> <li>- 부속서 II : 아이슬란드의 유보조항</li> </ul>
--

164) EFTA와의 투자협정은 1971년에 한국이 스위스와 체결한 투자협정을 대체한다.

- 부속서 III : 리히텐슈타인의 유보조항
- 부속서 IV : 스위스의 유보조항
- 부속서 V : EFTA 당사국의 유보조항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 부속서 I : 한국의 아이슬란드에 대한 농산물 양허표
- 부속서 II : 아이슬란드의 한국에 대한 농산물 양허표

대한민국과 노르웨이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 부속서 I : 한국의 노르웨이에 대한 농산물 양허표
- 부속서 II : 노르웨이의 한국에 대한 농산물 양허표

대한민국과 스위스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 부속서 I : 한국의 스위스에 대한 농산물 양허표
- 부속서 II : 스위스의 한국에 대한 농산물 양허표

상품 분야에서, 한국은 EFTA에 대하여 99.1%의 상품을 양허(공산품, 수산물)하고, 86.3%의 상품은 협정이 발효되면서 관세를 철폐하였는데, 공산품은 100% 양허하고, 91.1%의 상품은 즉시 관세를 철폐하였다.<sup>165)</sup> 반면에 EFTA는 한국산의 모든 품목(공산품, 수산물)에 대하여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였다. 농산물의 경우, 산업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EFTA측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양자협상으로 상호 민감품목을 인정하면서 관심품목 위주로 양허한 것이 특징이다.<sup>166)</sup>

165) 한국은 9,404개 공산품 전품목에 대하여 100%양허하였으며, 섬유관 등 목재, 보일러, 유기·무기화학제품, 차량부품, 화장품, 의약품 등 일부 민감품목에 대하여는 7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였다.

166) 우리의 1,451개 농산물 중에서 스위스가 34%, 노르웨이가 46%, 아이슬란드는 58%의 품목을 양허하였다. 반면에 EFTA측의 양허율은 스위스 51%, 노르웨이 61%, 아이슬란드 67% 수준이다. EFTA측은 우리의 관심품목인 김치, 소주, 쌀발효주, 라면, 사과, 배 등을 양허하였고, 우리는 민감품목 중 육류, 낙농제품, 양념류 등은 대부분 양허에서 제외하되, 치즈·포도주·양고기 등 일부 품목은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EFTA FTA에서는 한-싱가포르 FTA와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의 생산제품에 대하여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즉,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한국산 원부자재의 투입비용이 총비용 대비 60% 이상인 경우, 국내산과 똑같이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제출되었던 제 2 차 양허안을 기준으로 개방분야를 규정하였다.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 장으로 구성하여 건전성 조치, 분리된 분쟁해결 절차 및 소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통신서비스는 시장접근과 관련 내용을 별도 부속서에 규정하였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양측간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여, 우리 방송콘텐츠를 유럽시장에 진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투자협정과 관련하여, 건전성 조치, 수용 및 보상, 투자 관련 분쟁해결절차 등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한-싱가포르 FTA 수준으로 투자자유화 대상을 명확히 하여 규정하되, 자유화 대상 중에서 방위산업·토지 취득·공기업 투자·농림축산업·항공산업·전력·가스·원자력 산업·금융서비스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시 제한조치가 가능하도록 유보조항을 설정하였다.

이밖에, 경쟁분야에서는 양측간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반경쟁적 기업활동을 축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국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을 준수하며, 제 3 국에 정부조달시장 접근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동등한 대우를 약속하였다.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 이상의 보호수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는 협정발효 3년 후 협의하기로 약속하였다. 협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 및 중재패널의 구성과 운영 등의 분쟁해결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 제 2 절 한-인도 FTA

### 1. 한-인도 무역진흥과 경제기술협력 협정

한국은 1973년 인도와의 공식수교 이후에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인도와 ‘무역진흥 및 경제기술협력 협정’(Agreement on Trade Promotion and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Indi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을 체결한 바 있다. 본 한-인도 무역협정은 한국과 인도 양국의 우호증진과 무역확대 그리고 경제와 기술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는 것이었으며,<sup>167)</sup> 1974년 8월 12일 서울에서 공식 체결되었다.

한-인도 무역협정의 협정문은 총 10조의 본문과 A, B 두 개의 양국 물품목록표를 포함하고 있다. 제 1 조는 양국이 협정에 부속된 A, B 목록표의 물품을 비롯한 양국의 상품수출에 있어서 무역확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점을, 제 2 조는 양국이 수입에 있어서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제 3 조에서는 양국이 최혜국대우를 약속하였으며, 제 4 조부터 제 6 조까지는 각각 경제협력, 기술협력, 운송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규정이다. 제 7 조는 우호통상항해규정이며, 제 8 조는 외환지급방식, 제 9 조는 협력을 위한 양국간 정기적인 회담, 제 10 조는 이행과 효력발생에 관한 규정이다.

양국의 물품목록 A, B는 중점협력분야에 관한 목록표이다. 목록 A는 한국의 대 인도 수출에 관한 총 59개 품목을 나열하였으며, 목록 B는 인도의 대 한국 수출에 관한 총 59개의 품목을 나열하였다.

본 협정은 양국 사이의 무역에 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약속을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FTA

---

167) 한-인도 무역협정 서문.



또는 지역무역협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본 협정이 체결된 당시와는 양국 사이의 경제상황이나 세계무역환경도 크게 변화하였다. 다만, 한-인도 무역협정이 양국의 무역에 관하여 협조를 약속한 바 있는 공식 조약이고, 이후 인도와 투자보장협정,<sup>168)</sup> 이중과세방지협정<sup>169)</sup> 등이 체결 되었으므로, 그동안의 한-인도간 무역 관심분야 및 앞으로의 협정체결을 위한 방향을 가늠할만한 단서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 2. 한-인도 공동연구보고서

한국이 인도와 FTA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2004년 5월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였다. 이 회의에서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통한 시장 확대를 위해서 단시일내에 FTA를 추진할 대상국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후 10월에 개최된 양국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산·관·학 공동연구그룹을 설치하기로 정상들이 합의하였다.

2005년부터는 인도와 서울을 왕래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양국간 경제협력 등 분야별로 논의를 하면서 공동연구보고서 작성 및 FTA 체결의 타당성이 검토되었다.<sup>170)</sup> 1년 동안의 연구를 진행한 후, 2006년 1월 6일 제4차 공동연구그룹회의에서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본 보고서는,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 경제정책의 유사성, 기존의 양국관계를 감안할 때 양국간 경제교류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목하여, 한-인도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공동연구보고서의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71)</sup>

168) 1996년 체결.

169) 1985년 체결.

170) 2005년 12월에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17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eport of India-Korea Joint Study Group

< 표 24 > 한-인도 공동연구보고서의 분야별 주요내용

<p>1. 상품 (Trade in Goods)</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비교우위 상품 발굴을 통한 무역의 품목 다변화를 모색하고 상호 주의를 바탕으로 한 관세인하/철폐가 무역증가 및 후생증진 효과를 가져 올 것</li><li>- 통관절차의 개선, 무역관련 법·제도에 대한 정보교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집행이 용이한 원산지 규정이 필요함</li><li>- 상품분야에 있어 양국간 잠재무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포괄적 접근방식을 활용하되,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한 융통성 부여와 함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품목을 포괄할 것, 상호이익의 확보에 중점을 둘 것, WTO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수량제한조치를 철폐할 것, 기타 무역확대를 저해하는 장벽 및 규제를 최대한 개선할 것</li></ul> <p>2. 서비스 (Trade in Servi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상당한 범위의 서비스 부문과 공급의 형태(Mode of Supply)를 포괄적 접근방식에서 다룰 것, 서비스 부문의 양허는 수평적, 부문별 양허를 포괄할 것, 소프트웨어, IT관련 서비스, 금융, 통신, 건설, 운송서비스 분야 등 양국의 무역 잠재력이 큰 분야에 중점을 둘 것, 양국 경제의 후생극대화를 위한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할 것</li><li>- IT 및 소프트웨어, 건설, 시청각·오락, 운송, 관광, 금융 서비스 부문에 있어 상호보완성과 무역증대 가능성을 확인하고 동 부문에 있어 시장접근 기회 및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li></ul> <p>3. 투 자 (Invest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상호 투자증진을 위해, 양국 시장에 대한 투자기회 및 투자보호를 증진할 것, 여타 양자 투자보호조치와 유사한 투자보호조치를 강구할 것, 투자에 있어서의 융통성을 확보할 것, 투자상담기구 등 투자문제에 대한 협의기구를 설치할 것 등의 원칙하에, 투자장벽 해소, 규제완화 등 양국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포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li></ul>
---

- 양국간 투자기회 극대화와 투자원활화를 위해 이미 양국간 체결된 투자 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개선, 개정 논의를 촉진하여야 함
- 한국의 대인도 투자와 관련, 조세정책 조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인도 투자청내 특별위원회(Fast Track Committee) 및 투자촉진과 원활화를 위한 한·인도 기업간 협의체를 설치해야 함

#### 4. 경제협력 (Bilateral Economic and Business Cooperation)

- 양국이 진정한 미래의 경제동반자로 나아가 위해서는 산업, 기술, 금융, 사회·문화의 전 분야에 있어 양국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
- 은행·보험 등 금융서비스, 해운, 항공, 관세, 검역·기술규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통한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함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항공협정 등과 같은 기존의 제도적 틀의 역할을 평가하고, 이에 더하여 관세협력, 기업인 및 전문 인력의 이동, IT 및 서비스 협력, 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제도적 틀을 새로이 논의해야 함
- 기업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중앙상공회의소, 경제단체간 협력, 중소기업간 협력이 긴요함. 분야별로는 IT 및 전자, 통신, 에너지, 의류 및 피혁, 과학기술, 생명공학, 의약품, 관광, 의료,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기간시설 및 운송 등 경제 제 분야에서 협력이 모색되어야 함

이에 따라, 공동연구그룹은 CEPA를 양국 정부가 추진하면서,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무역원활화 조치, 투자촉진, 경제협력, 그밖에 양국이 합의하는 분야 등을 포괄할 것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CEPA 추진이 WTO 체제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양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그리고 투자의 확대와 경제협력관계의 심화에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공동의 인식에 기초하였다.

### 3. 한-인도 CEPA 협상 경과

공동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2006년 2월 인도대통령의 공식방문 정

상회담에서 CEPA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3월에 뉴델리에서 시작된 1차 협상부터 2007년 2월 현재 총 다섯 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다.<sup>172)</sup> 각 협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73)</sup>

< 표 25 > 한-인도 CEPA 협상경과

- 2006. 3. 23-24 한-인도 CEPA 제 1 차 협상 (뉴델리)  
협상운영규칙(Terms of Reference) 제정, 협상분과 구성, 협정문·양허안의 교환시기, 향후 협상일정 등 합의
- 2006. 5. 10-12 한-인도 CEPA 제 2 차 협상 (서울)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의 4개 분과별 협상이 진행되어, 한국이 제시한 협정문 초안을 기초로 협정문안 협의
- 2006. 7. 18-21 한-인도 CEPA 제 3 차 협상 (뉴델리)  
상품, 서비스, 투자, 기타규범 및 경제협력, 일반조항 및 분쟁해결, 원산지규정, 통관행정 및 절차 등 7개 분과별 협상이 진행되어 대부분 분야에서 통합협정문이 작성되었으나, 원산지 일반기준 및 투자 자유화방식에서 입장차 확인
- 2006. 10. 10-13 한-인도 CEPA 제 4차 협상 (서울)  
상품 및 서비스분야 1차 양허안을 차기 협상에서 교환기로 하였고, 상품 및 서비스 협정문 대부분의 조항에서 합의 도출
- 2007. 1. 10-12 한-인도 CEPA 제 5 차 협상 (자이푸르)  
상품, 투자 분야에서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되어, 합의된 기한(2007년 말) 내 협상타결의 기반을 구축

현재까지 진행된 5차 협상 결과, 상품분야에서 양허세부원칙에 대해 양측이 실무선에서 사실상 합의에 도달하였고, 몇 가지 쟁점을 제외하고는 협정문 구성에도 합의하였다. 투자분야에서는, 인도가 보다 포괄적 개방가능성이 있는 Negative 자유화 방식의 채택에 동의하였다.

172) [http://www.fta.go.kr/fta\\_korea/info.php?country\\_id=18](http://www.fta.go.kr/fta_korea/info.php?country_id=18)

173) 외교통상부, 『한-인도 CEPA 제5차 협상결과 보도자료』, 2007. 1. 15.

또한 경제협력, 분쟁해결, 서비스 일부 분야에서 협정문의 내용이 완성단계에 근접하였다. 다만 원산지 및 서비스 분야에서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협상종료 시한인 2007년 말까지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 4. 한-인도 CEPA의 의미와 기대효과

한-인도 CEPA는 한국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정책의 일부로 BRICs 국가와 추진하는 최초의 지역무역협정이다. BRICs 국가 중 첫 번째로 인도와 협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재 진행하는 MERCOSUR와의 FTA 추진 등 다른 BRICs 국가들과의 FTA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인도와의 CEPA가 언제, 어떻게 체결될 것인가는 큰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협상의 진행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고무적이다.

인도는 지난 3년간 8%를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SAARC 국가들까지 포함한 역내시장을<sup>174)</sup> 감안하면, 그 시장규모는 매우 크다. 따라서 한-인도 CEPA는 인도 국내시장을 통한 SAARC 역내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인도 CEPA의 체결은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활용하는 데 큰 도구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의 대 인도 수출 품목은 주로 전자, 기계, 수송장비, 철강, 석유화학 등이고, 인도의 대 한국 수출이 섬유류, 석유제품, 광물, 농산물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양국이 전형적인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협정의 체결로 양국 사이의 무역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아래는 한-인도 CEPA 체결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이다.<sup>175)</sup>

17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는 남아시아 지역의 중심국가로서 SAARC를 주도하고 있다.

175) 외교통상부, 『한-인도 CEPA 제 5 차 협상결과 보도자료』, 2007. 1. 15.

< 표 26 > 한-인도 CEPA의 경제적 효과

구 분	FTA 체결전 (2004년 기준)	FTA 체결후 금액		
		금 액	변 동 액	
국내총생산(GDP)	778조4천억원	779조7천억원	1조3천억원(0.17%) 증가	
1인당 국민소득	14,162 달러 (1,620만원)	14,186 달러 (1,623만원)	24 달러(3만원)	
가구당 평균소득	3,036만원	3,041만원	5만원(0.17%) 증가	
대인도 무역량	55억 달러	88억 달러	33억 달러(60%) 증가	
	대인도 수출	36억 달러	64억 달러	28억 달러(80%) 증가
	대인도 수입	19억 달러	24억 달러	5억 달러(30%) 증가
	무역수지	17억 달러 흑자	40억 달러	23억 달러 증가
국내 취업자수 (제조업)	1,668만명	1,672만7600명	4만7600명 증가	

한-인도 CEPA는, 인도-ASEAN 및 기타 인도의 아시아 동방정책과 지역협력에 따라 우리 수출이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상대적 불이익으로부터 시장수비적인 역할을 한다. 즉, 인도-ASEAN FTA가 체결될 경우, ASEAN 현지의 자동차, 전기, 전자부문 일본계 기업으로부터의 대인도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CEPA를 통해서 관세 등의 혜택을 얻어 경쟁력을 유지할 기반을 마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sup>176)</sup>

176) 인도는 현재까지 실행관세율이 약 29%에 이르는 고관세 국가이다. 따라서 우리

### 제 3 절 FTA 체결에 따른 무역구제 관련 국내법적 대응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TA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의 제거 및 비관세 무역장벽의 제거이다. 아래에서는 한국의 FTA의 추진에 대응하여 마련된 국내 규범, 특히 무역구제조치 등 비관세 무역장벽과 관련된 국내 규범을 분석한다. 아울러 이러한 규정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FTA에 따른 법적 보완대책을 도출한다.<sup>177)</sup>

#### 1. 국내 무역구제 관련 법규

한국의 무역구제조치 내용 내지 방식 등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그리고 산업피해구제법(불공정 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sup>178)</sup> 등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우선 긴급수입제한조치 중에서, 수입수량규제에 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26조 내지 제28조가 규정하고 있으며,<sup>179)</sup> 수입가격규제인 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해서는 관세법 제65조 내지 제68조가 규율한다.<sup>180)</sup> 아

---

수출품이 관세혜택을 얻지 않고 ASEAN 등으로부터 수입된 물품과 인도 시장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177) FTA 추진에 따른 일반적인 국내법적 대응방안에 관해서는, 본 연구시리즈 [브라질의 FTA 제 6 장]을 참고할 것.

178) 산업피해구제법은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개방경제체제에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1년에 제정되었다. 본 법의 주된 내용은, 대외무역법에 있었던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조사제도를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수입상품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구제절차를 WTO 협정에 맞춘 것이다. 이밖에도 산업피해구제법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무역위원회의 구성과 불공정 무역행위 등에 관한 조사절차를 명료화하여 무역구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179) 대외무역법 제26조부터 제28조는 다음과 같다.

제26조 수입수량제한조치

제27조 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한 연장

제28조 특정국 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제한조치의 시행 등

180) 관세법 제65조부터 제68조는 다음과 같다.

올러 산업피해구제법 제15조 내지 제22조의 3은, 이러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기 위한 산업피해조사에 관한 신청부터 시행, 해제 그리고 연장 및 재검토에 이르는 사항들에 관한 상세한 규정과 함께, 일부 품목 또는 특정국에 대한 특별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근거규정이다.<sup>181)</sup>

반덤핑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는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6조이다. 이 조항들은 덤핑방지를 위한 관세부과조치와 그 조사 및 기타 관련 사항들에 관한 규정들이다.<sup>182)</sup> 이밖에 산업피해구제법 제23조는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조금 상계조치에 관하여, 관세법 제57조부터 제62조를 통해서 상계관세부과에 관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 규정들은 보조금 상

---

제65조 긴급관세의 부과 대상 등

제66조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제67조 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67조의 2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부과

제68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181) 산업피해구제법 제15조부터 제22조의 3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의 조사신청

제16조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제17조 세이프가드조치 등의 건의

제18조 잠정세이프가드조치 등의 건의

제19조 세이프가드조치 등의 시행 및 해제

제20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재검토 등

제20조의 2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 등 검토

제21조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제22조 서비스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제22조의 2 세계무역기구의 특정회원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제22조의 3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182) 관세법 제51조부터 제56조는 다음과 같다.

제5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제52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제53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54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외

제55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시기

제56조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계관세부과조치의 대상, 조사, 시기, 재심사 등에 관한 것이다.<sup>183)</sup> 또한 산업피해구제법 제24조는 보조금 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에 관하여 규정한다.

## 2. FTA 관련 무역구제법규에 관한 분석

앞서 언급된 관세법, 대외무역법 그리고 산업피해구제법 등에 산재된 무역구제조치 관련 국내규정들은, 대부분 무역구제조치에 관한 WTO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그 범위와 대상 등 WTO 관련 협정의 내용과 유사하다. 그러나 FTA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위 법률들의 개정을 통해서 몇 가지 특별조항 또는 예외규정이 마련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표 27 > FTA 관련 국내 무역구제법규

- 대외무역법  
제28조 특정국 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제한조치의 시행 등  
(수입수량규제)
- 관세법  
제67조의 2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부과  
(수입가격규제)
-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4 조 농산물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제 5 조 농산물에 대한 잠정긴급관세조치

183) 관세법 제57조부터 제62조는 다음과 같다.

제57조 상계관세의 부과대상

제58조 보조금 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제59조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60조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외

제61조 상계관세의 부과시기

제62조 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6 조 긴급관세조치  
제 7 조 잠정긴급관세조치
-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3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칠레공화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제24조의 2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치

산업피해구제법 제22조의 3<sup>184)</sup>은 외국과의 FTA에 의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근거규정이다. 본조에서는 이러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고 하여, 무역위원회가 관련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 절차, 범위 및 기간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피해구제법 시행령에서 규율한다.<sup>185)</sup>

이밖에 대외무역법 제28조와 관세법 제67조의 2는 ‘조약과 국제법규’에 의하여 허용하는 특정국 물품에 대하여 ‘특별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각각 FTA 체결에 따른 특정국 물품에 대한 수입수량규제와 수입가격규제를 실시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근거조항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한-칠레 FTA에서 농산물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특별조항을 둔 것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에 관한 국내법적 규정을 마련하였다. 즉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4 조는 긴급관세조치를, 제 5 조는 잠정긴급관세조치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이것은 한-칠레 FTA에 따른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국내법으로 수

184) 본조 신설 2004. 1. 20.

185) 산업피해구제법 제22조의 3 제 6 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 2

용하여, 이러한 조치의 법적근거와 규제 장치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한-싱가포르 FTA가 체결된 이후에 제정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 관세특별법)’의 제 6 조와 제 7 조는 각각 긴급관세조치와 잠정긴급관세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므로, FTA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 또는 규제 장치이다.

### 3. FTA의 체결과 이행에 따른 무역구제법규의 개편방안

FTA와 관련하여 무역구제법규의 가장 큰 법적문제는, FTA의 반덤핑 또는 보조금 상계조치를 국내에 수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6 조와 제 7 조, 산업피해구제법 제22조의 3, 또는 대외무역법 제28조와 관세법 제67조의 2는 모두 FTA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근거규정일 뿐이다.<sup>186)</sup> 많은 FTA에서 양자간 반덤핑 또는 보조금 상계조치를 제거하거나 WTO 협정의 내용을 수용하기는 하지만, 일부의 FTA에서는 WTO 협정 이상의 내용을 규정하거나 일부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sup>187)</sup> 따라서 FTA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위한 근거규정처럼, 규정을 통해서 FTA의 반덤핑 또는 보조금 상계조치의 발동을 위한 법적근거를 명시해야한다.

체결된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무역구제조치를 하나의 법규에서 일관성 있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 즉 산업피해구제법, 대외무역법 그리고 관세법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무역구제조치

186) 심지어 한-칠레 FTA의 농산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 역시 그러하다.

187) Bong-chul Kim, “Trade Remedy Rul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Trade Remedy Review Vol. 22,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 Energy(MOCIE), Korea, 2006. 4, p. 160.

의 법적 근거와 내용을 통일된 법에서 규정해야 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상대국의 공정한 무역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조치인 반덤핑조치 또는 보조금 상계조치와는 다른 점이지만,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구제조치라는 근본적인 의미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국의 공정한 무역에 대해서도 취할 수 있는 무역구제조치이다. 따라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보복조치를 감수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분쟁을 야기하거나 국내의 다른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산업피해구제법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의 발생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sup>188)</sup>

산업피해구제법에 무역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의 정책대로 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FTA 상대국마다 무역구제제도의 적용기준 및 절차가 달라져 무역구제기관의 업무는 보다 복잡해질 것이다.<sup>189)</sup> 즉, 장기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면 무역구제법규가 복잡하게 구성될 뿐만 아니라 적용조항 사이에도 상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역위원회는 FTA와 관련된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

무역위원회의 이러한 연구는 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무역구제조치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협정의 이행과정에서도 원활한 무역구제법규의 운용을 가능하게

---

188) 이에 관하여 최소한 통상교섭본부의 의견을 듣게 하거나 경제정책조정회의와 같이 관련부처의 협의·심의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9) 한-칠레 FTA 이후,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가 몇 개월을 사이에 두고 2006년 한해에 발효되었다. 게다가 EFTA와의 FTA는 구성국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여러 개의 협정이 포함된 것 등을 고려해 볼 때, FTA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업무량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할 것이다. 따라서 무역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의 산업피해구제법보다 높은 수준의 정책적 지원과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의 이해당사자가 무역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역위원회 활동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현재보다 더욱 견고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sup>190)</sup>

---

190) 김봉철, 앞의 『FTA 체결에 의한 한국무역구제법규의 변화』, 92~96면.

## 제 7 장 결론 및 요약

FTA란, 국제경제법상 ‘두 국가 또는 몇 개의 소수 국가들 사이에 관세 및 기타 규범 등을 공유하면서 서로간의 무역장벽을 상당부분까지 제거하는 조약’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체결하고 국회를 통과한 FTA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특별한 국내법적 수용절차 없이 효력을 가진다.

FTA 등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 체제의 근거규정으로는 GATT 제 24조, GATS 제 5 조 등을 들 수 있다. WTO는 증가하는 지역무역협정을 적절히 규율하고 다자주의 체제와 조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설치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FTA와 함께 최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BRICs이다. ‘BRICs’라는 단어는 2003년 등장한 이래 향후 국제경제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세계무역질서에서 개발도상국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BRICs가 주목받고 있는 것과 관계가 깊다.

BRICs를 구성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은 큰 규모의 시장, 많은 인구, 다량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빠른 경제성장 속도로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이들은 선진국 못지않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FTA 또는 다양한 지역무역협정들을 체결하면서 경제적 유대관계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BRICs 국가들의 FTA는 상대국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FTA 및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 근거규범이 모호한 면이 많다는 사실과 함께 많은 무역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BRICs 국가들의 FTA에 대한 법적인 분석에서는 이들 분쟁가능성의 예방과 적절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석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SAARC는 인도를 중심으로 한 남아시아의 무역 및 경제협력체로서, 회원국들 사이의 무역에 특별한 혜택을 부과하는 SAPTA를 형성하였다. SAPTA는 SAFTA로 발전하여 역내무역의 자유화를 이루었다. 이와는 별도로, 인도는 남아시아의 각국과 개별적인 FTA 및 지역무역협정도 체결하였다.

인도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 방콕협정을 체결하였다. 방콕협정은 중국의 가입으로 더욱 발전하였으며, APTA로 재탄생하였다. APTA는 SAFTA와 함께 인도의 주요 지역무역협정이 되었다. 이밖에 인도는 이른바 ‘동방정책’을 통하여, ASEAN 회원국 및 들과의 협력과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마쳤거나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칠레 및 MERCOSUR, 다른 지역의 국가들과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의 법적 특징은, 주로 기본협정을 체결한 이후 FTA 등 보다 견고한 협정의 형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고, 주변 개발도상국들과의 협정이 많은 이유로 최저개발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규정하는 조항들이 나타나며, 양자간 협정과 복수국간의 협정이 혼재하는 동시에 협정의 상대국들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WTO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예외규정인 허용조항(Enabling Clause)을 마련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개발도상국들인 BRICs 국가들은 일반적인 지역무역협정보다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WTO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인도는 WTO의 회원국으로서 이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WTO에 허용조항을 근거로 지역무역협정을 통보한 예가 있다.

한국은 FTA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라는 원칙 아래 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FTA 체결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가 이미 발

효되었으며, ASEAN과의 FTA 체결을 위한 상품무역 분야의 협상이 마무리 된 상황이다. 최근에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어 국내외에 많은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많은 국내법의 개정 및 정비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과 인도 사이의 무역은 양국 사이의 무역협정 체결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FTA 체결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양국의 공동연구는 한-인도 CEPA의 조속한 체결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한-인도 CEPA는 양국 및 한국의 남아시아 진출 확대를 가져올 것이며, 이에 관한 법적 측면의 대비도 필요하다.

FTA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관세의 제거 및 비관세 무역장벽의 축소이다. 이 중에서, 무역구제조치와 같은 비관세 무역장벽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따라서 FTA의 추진에 따른 무역구제조치와 관련된 국내규범을 더욱 보강하고,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명기, □□국제법원론(하)□□, 박영사, 1996
-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 FTA에 관한 법적 분석과 대응□□, 인텔에듀케이션, 2004
- 서헌제, □□국제경제법□□, 율곡출판사, 1996
- 서헌제, □□대외통상환경의 변화와 법제개편□□, 집문당, 1996
- 정인교,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 정재호, □□자유무역협정하의 최적 관세 및 관세 유예기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1
- 조영정, □□국제통상법의 이해□□, 무역경영사, 2000
- 주동주, □□신흥 경제대국 BRICs와 한국경제□□, 산업연구원, 2005. 12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2003. 3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EFTA FTA 주요 내용□□, 2006. 8
- 김관원, 『반덤핑 폐지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검토 - 지역무역협정에 있어서의 반덤핑정책과 경쟁정책』, □□외법논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 김병섭,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추진 전략』,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의의와 전망□□, 200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심포지엄, 2003
- 김봉철, 『한국의 자유무역협정과 무역구제법규의 개편』, □□무역구제□□ 13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4. 1
- 김봉철, 『FTA 정책의 추진과 이행을 위한 통일적 법규개선에 관한 연구』, □□한미 FTA 대학원생 논문공모□□, 외교통상부 한미 FTA 추진위원회, 2006. 12
- 김봉철, 『FTA 체결에 의한 한국무역구제법규의 변화』, □□무역구제□□ 25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7. 1

참 고 문 헌

- 박변순, 「인도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배경」, □□SERI 경제포커스□□78호, 삼성경제연구소, 2006. 2. 8
- 변종립, 「반덤핑제도의 이해와 활용방안」, □□월간 기계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01. 4
- 유태환 · 최윤정 · M. Pant · V. Balaji, □□인도의 대외경제정책과 한 · 인도 경제협력 강화방안□□, 정책연구 05-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이동휘, 「BRICs의 국제 정치경제적 중요성과 우리의 대응」,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6. 11. 10
- 정재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유인 - Grossman & Helpman 모형의 일반화」, □□재정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1
- 조양현, 「OECD 회원국 및 신흥경제권의 2005년도 외국인 직접투자 유출입 동향분석」, □□수은해외경제□□, 2006. 8
- 외교통상부, 「한-인도 CEPA 제5차 협상결과 보도자료」, 2007. 1. 15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싱 FTA 홍보자료」, 2005. 8. 4
- KOTRA, 「한-인도 CEPA 체결과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유망품목」, 기획조사 06-004, 2006. 1
- Kaye Scholer · 최진혁, 「자유무역협정(FTA)하에서의 세이프가드제도 운용방안」, □□무역구제□□ 7호, 무역위원회, 2002. 7
- Asif H. Qureshi,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implementing international trade norm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6
- Bela Balassa,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George Allen & Unwin Ltd., London, 1961
- Ernst-Ulrich Petersmann, *The GATT/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 International Law -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ispute Settlement*, Kluwer Law International, London, 1997
- Jagdish Bhagwati,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an overview*,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rgration* (Jaime de Melo & Arvind Panagariya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Bong-chul Kim, "Trade Remedy Rul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Trade Remedy Review Vol. 22,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 Energy(MOCIE), Korea, 2006. 4
- Harish Iyer, "The Bangkok Agreement: Prospects for trade expans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Bulletin on Asia-Pacific Perspectives  
2003/04, UN ESCAP, 2003
- Jo-Ann Crawford and Roberto V. Fiorentino, "The Changing Landscape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Discussion paper, WTO, 2005
- Kaye Scholer,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Rules in Free  
Trade Agreements - FTA Negotiation Workbook," Korea Trade  
Commission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2001
- Kim, Dong-Hoon/Kim, Bong-Chul, "A Study on the FTAs of BRICs in  
WTO Legal System," HUFS Law Review Vol. 23, Law Research  
Institute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06. 8
-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Korea-Singapore Joint Study Group Report,  
2003. 10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eport of India-Korea Joint Study  
Group Forstering Closer Relations between India and Korea",  
2006. 1
-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6\\_e.htm](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6_e.htm)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dev1\\_e.htm](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dev1_e.htm)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dev2\\_e.htm](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dev2_e.htm)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dev7\\_e.htm](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dev7_e.htm)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provision\\_e.xls](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provision_e.xls)  
<http://www.doc.gov.lk/regionaltrade.php?mode=inop&link=bangkok>  
<http://www.doc.gov.lk/regionaltrade.php?mode=inop&link=sapta>

참 고 문 헌

<http://www.doc.gov.lk/regionaltrade.php?mode=inop&link=isfta>

<http://www.saarc-sec.org/main.php?t=4>

<http://www.south-asia.com/saarc/chapter4.htm>

<http://www.saarc-sec.org/main.php?t=2.1.5>

<http://www.saarc-sec.org/main.php?t=2.1.6>

[http://commerce.nic.in/india\\_rta.htm#h18](http://commerce.nic.in/india_rta.htm#h18)

[http://www.fta.go.kr/fta\\_korea/policy.php](http://www.fta.go.kr/fta_korea/policy.php)

[http://www.fta.go.kr/fta\\_korea/info.php?country\\_id=18](http://www.fta.go.kr/fta_korea/info.php?country_id=18)

[http://www.fta.go.kr/fta\\_korea/protocol\\_kor\\_efta.php](http://www.fta.go.kr/fta_korea/protocol_kor_efta.php)

[http://www.fta.go.kr/fta\\_korea/protocol\\_kor\\_singapore.php](http://www.fta.go.kr/fta_korea/protocol_kor_singapore.php)

[http://www.fta.go.kr/fta\\_korea/protocol\\_kor\\_chile.php](http://www.fta.go.kr/fta_korea/protocol_kor_chile.php)

<http://www.eicindia.org/eic/info-act-main1.htm>

<http://www.centad.org/index.asp>

[http://www.mofat.go.kr/mofat/mk\\_a013/mk\\_b067/mk\\_c082/1142381\\_1496.html](http://www.mofat.go.kr/mofat/mk_a013/mk_b067/mk_c082/1142381_1496.html)

# 부 록

[부록1]

**AGREEMENT ON SOUTH ASIAN FREE TRADE AREA  
(SAFTA)**

The Governments of the 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Member States comprising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the Kingdom of Bhutan, the Republic of India, the Republic of Maldives, the Kingdom of Nepal,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and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tracting States"

Motivated by the commitment to strengthen intra-SAARC economic cooperation to maximise the realization of the region's potential for trade and development for the benefit of their people, in a spirit of mutual accommodation, with full respect for the principles of sovereign equality, independence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all States;

Noting that the Agreement on SAARC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SAPTA) signed in Dhaka on the 11th of April 1993 provides for the adoption of various instruments of trade liberalization on a preferential basis;

Convinced that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among SAARC Member States will act as a stimulus to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and SAARC economic resilience, and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by expanding investment and production opportunities, trade, and foreign exchange earning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econom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부록1]

Aware that a number of regions are entering into such arrangements to enhance trade through the free movement of goods;

Recognizing that Least Developed Countries in the region need to be accorde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commensurate with their development needs; and

Recognizing that it is necessary to progress beyond a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to move towards higher levels of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in the region by removing barriers to cross-border flow of goods;

Have agreed as follows:

##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1. Concessions mean tariff, para-tariff and non-tariff concessions agreed under the Trade Liberalisation Programme;

2. Direct Trade Measures mean measures conducive to promoting mutual trade of Contracting States such as long and medium-term contracts containing import and supply commitments in respect of specific products, buy-back arrangements, state trading operations, and government and public procurement;

3.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 refers to a Contracting State which is designated as a “Least Developed Country” by the United Nations;

4. Margin of Preference means percentage of tariff by which tariffs are reduced on products imported from one Contracting State to another as a result of preferential treatment.

5. Non-Tariff Measures include any measure, regulation, or practice, other than “tariffs” and “para-tariffs”.

6. Para-Tariffs mean border charges and fees, other than “tariffs”, on foreign trade transactions of a tariff-like effect which are levied solely on imports, but not those indirect taxes and charges, which are levied in the same manner on like domestic products. Import charges corresponding to specific services rendered are not considered as para-tariff measures;

7. Products mean all products including manufactures and commodities in their raw, semi-processed and processed forms;

8. SAPTA means Agreement on SAARC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signed in Dhaka on the 11th of April 1993;

9. Serious injury means a significant impairment of the domestic industry of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due to a surge in preferential imports causing substantial losses in terms of earnings, production or employment unsustainable in the short term;

10. Tariffs mean customs duties included in the national tariff schedules of the Contracting States;

11. Threat of serious injury means a situation in which a substantial increase of preferential imports is of a nature to cause “serious injury” to



[부록1]

domestic producers, and that such injury, although not yet existing, is clearly imminent. A determination of threat of serious injury shall be based on facts and not on mere allegation, conjecture, or remote or hypothetical possibility.

## Article 2 Establishment

The Contracting States hereby establish the South Asian Free Trade Area (SAFTA) to promote and enhance mutu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Contracting States, through exchanging concessions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 Article 3 Objectives and Principles

1.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are to promote and enhance mutu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mong Contracting States by, inter-alia:
  - a) eliminating barriers to trade in, and facilitating the cross-border movement of goods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 b) promoting conditions of fair competition in the free trade area, and ensuring equitable benefits to all Contracting States, taking into account their respective levels and pattern of economic development;
  - c) creating effective mechanism for the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for its joint administration and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and

d)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further regional cooperation to expand and enhance the mutual benefits of this Agreement.

2. SAFTA shall be govern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inciples:

a) SAFTA wi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also by the rules, regulations, decisions, understandings and protocols to be agreed upon within its framework by the Contracting States;

b) The Contracting States affirm their existing rights and obligations with respect to each other under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other Treaties/Agreements to which such Contracting States are signatories;

c) SAFTA shall be based and applied on the principles of overall reciprocity and mutuality of advantages in such a way as to benefit equitably all Contracting States, taking into account their respective levels of 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e pattern of their external trade and tariff policies and systems;

d) SAFTA shall involve the free movement of goods, between countries through, inter alia, the elimination of tariffs, para tariffs and non-tariff restrictions on the movement of goods, and any other equivalent measures;

e) SAFTA shall entail adoption of trade facilitation and other measures, and the progressive harmonization of legislations by the Contracting States in the relevant areas; and

f) The special needs of the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shall be clearly recognized by adopting concrete preferential measures in their favour on a non-reciprocal basis.

[부록1]

#### Article 4 Instruments

The SAFTA Agreement will be implemented through the following instruments:-

1. Trade Liberalisation Programme
2. Rules of Origin
3. Institutional Arrangements
4. Consultations and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5. Safeguard Measures
6. Any other instrument that may be agreed upon.

#### Article 5 National Treatment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accord national treatment to the products of other Contracti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III of GATT 1994.

#### Article 6 Components

SAFTA may, inter-alia, consist of arrangements relating to:

- a) tariffs;
- b) para-tariffs;
- c) non-tariff measures;
- d) direct trade measures.

Article 7

Trade Liberalisation Programme

1. Contracting States agree to the following schedule of tariff reductions:

a) The tariff reduction by the Non-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from existing tariff rates to 20% shall be done within a time frame of 2 years, from the date of coming into force of the Agreement. Contracting States are encouraged to adopt reductions in equal annual installments. If actual tariff rates after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Agreement are below 20%, there shall be an annual reduction on a Margin of Preference basis of 10% on actual tariff rates for each of the two years.

b) The tariff reduction by the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from existing tariff rates will be to 30% within the time frame of 2 years from the date of coming into force of the Agreement. If actual tariff rates on the date of coming into force of the Agreement are below 30%, there will be an annual reduction on a Margin of Preference basis of 5 % on actual tariff rates for each of the two years.

c) The subsequent tariff reduction by Non-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from 20% or below to 0-5% shall be done within a second time frame of 5 years, beginning from the third year from the date of coming into force of the Agreement. However, the period of subsequent tariff reduction by Sri Lanka shall be six years. Contracting States are encouraged to adopt reductions in equal annual installments, but not less than 15% annually.

d) The subsequent tariff reduction by the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from 30% or below to 0-5% shall be done within a second time

[부록1]

frame of 8 years beginning from the third year from the date of coming into force of the Agreement. The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are encouraged to adopt reductions in equal annual installments, not less than 10% annually.

2. The above schedules of tariff reductions will not prevent Contracting States from immediately reducing their tariffs to 0-5% or from following an accelerated schedule of tariff reduction.

3. a) Contracting States may not apply the Trade Liberalisation Programme as in paragraph I above, to the tariff lines included in the Sensitive Lists which shall be negotiated by the Contracting States (for LDCs and Non-LDCs) and incorporated in this Agreement as an integral part. The number of products in the Sensitive Lists shall be subject to maximum ceiling to be mutually agreed among the Contracting States with flexibility to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to seek derogation in respect of the products of their export interest; and

b) The Sensitive List shall be reviewed after every four years or earlier as may be decided by SAFTA Ministerial Council (SMC), established under Article 10, with a view to reducing the number of items in the Sensitive List.

4.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the SAARC Secretariat all non-tariff and para-tariff measures to their trade on an annual basis. The notified measures shall be reviewed by the Committee of Experts, established under Article 10, in its regular meetings to examine their compatibility with relevant WTO provisions. The Committee of Experts shall recommend the elimination or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 in the least trade restrictive manner in order to facilitate intra-SAARC trade<sup>1</sup>.

5. Contracting Parties shall eliminate all quantitative restrictions, except otherwise permitted under GAIT 1994, in respect of products included in the Trade Liberalisation Programme.

6.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contained in paragraph I of this Article, the Non-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shall reduce their tariff to 0-5% for the products of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within a timeframe of three years beginning from the date of coming into force of the Agreement.

#### Article 8

##### Additional Measures

Contracting States agree to consider, in addition to the measures set out in Article 7, the adoption of trade facilitation and other measures to support and complement SAFTA for mutual benefit. These may include, among others: -

- a) harmonization of standards, reciprocal recognition of tests and accreditation of testing laboratories of Contracting States and certification of products;
- b)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clearance procedure;
- c) harmonization of national customs classification based on HS coding system;
- d) Customs cooperation to resolve dispute at customs entry points;
- 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import licensing and registration procedures;

[부록1]

- f) simplification of banking procedures for import financing;
- g) transit facilities for efficient intra-SAARC trade, especially for the land-locked Contracting States;
- h) removal of barriers to intra-SAARC investments;
- i) macroeconomic consultations;
- j) rules for fair competition and the promotion of venture capital;
- k)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systems and transport infrastructure;
- l) making exceptions to their foreign exchange restrictions, if any, relating to payments for products under the SAFfA scheme, as well as repatriation of such payments without prejudice to their rights under Article XVI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and the relevant provisions of Articles of Treaty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and
- m) Simplification of procedures for business visas.

## Article 9

### Extension of Negotiated Concessions

Concessions agreed to, other than those made exclusively to the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tended unconditionally to all Contracting States.

## Article 10

### Institutional Arrangements

1. The Contracting States hereby establish the SAFTA Ministerial Council

(hereinafter referred to as SMC).

2. The SMC shall be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of SAFTA and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all decisions and arrangements made within its legal framework.

3. The SMC shall consist of the Ministers of Commerce/Trade of the Contracting States.

4. The SMC shall meet at least once every year or more often as and when considered necessary by the Contracting States.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chair the SMC for a period of one year on rotational basis in alphabetical order.

5. The SMC shall be supported by a Committee of Exper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E), with one nominee from each Contracting State at the level of a Senior Economic Official, with expertise in trade matters.

6. The COE shall monitor, review and facilitat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undertake any task assigned to it by the SMC. The COE shall submit its report to SMC every six months.

7. The COE will also act as Dispute Settlement Body under this Agreement.

8. The COE shall meet at least once every six months or more often as and when considered necessary by the Contracting States.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chair the COE for a period of one year on rotational basis in alphabetical order.

9. The SAARC Secretariat shall provide secretarial support to the SMC and COE in the discharge of their functions.



[부록1]

10. The SMC and COE will adopt their own rules of procedure.

#### Article 11

####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the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In addition to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ll Contracting States shall provide special and more favorable treatment exclusively to the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as set out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give special regard to the situation of the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when considering the application of anti-dumping and/or countervailing measures. In this regard,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provide an opportunity to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for consultations.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to the extent practical, favourably consider accepting price undertakings offered by exporters from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These constructive remedies shall be available until the trade liberalisation programme has been completed by all Contracting States.

b) Greater flexibility in continuation of quantitative or other restrictions provisionally and without discrimination in critical circumstances by the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on imports from other Contracting States.

c) Contracting States shall also consider, where practical, taking direct trade measures with a view to enhancing sustainable exports from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such as long and medium-term contracts containing import and supply commitments in respect of specific products,

buy-back arrangements, state trading operations, and government and public procurement.

d) Special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by Contracting States to requests from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for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arrangements designed to assist them in expanding their trade with other Contracting States and in taking advantage of the potential benefits of SAFTA. A list of possible areas for such technical assistance shall be negotiated by the Contracting States and incorporated in this Agreement as an integral part.

e) The Contracting States recognize that the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may face loss of customs revenue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de Liberalisation Programme under this Agreement. Until alternative domestic arrangements are formulated to address this situation, the Contracting States agree to establish an appropriate mechanism to compensate the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for their loss of customs revenue. This mechanism and its rules and regulations shall be established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 Trade Liberalisation Programme (TLP).

## Article 12

### Special Provision for Maldives

Notwithstanding the potential or actual graduation of Maldives from the status of a Least Developed Country, it shall be accorded in this Agreement and in any subsequent contractual undertakings thereof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provided for the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부록1]

Article 13  
Non-application

Notwithstanding the measures as set out in this Agreement its provisions shall not apply in relation to preferences already granted or to be granted by any Contracting State to other Contracting States outside the framework of this Agreement, and to third countries through bilateral, plur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and similar arrangements.

Article 14  
General Exceptions

a)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ny Contracting State from taking action and adopting measures which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national security.

b)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imilar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ra-regional trade,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ny Contracting State from taking action and adopting measures which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

- (i) public morals;
- (ii) human, animal or plant life and health; and
- (iii) articles of artistic, historic and archaeological value.

Article 15

Balance of Payments Measur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y Contracting State facing serious balance of payments difficulties may suspend provisionally the concessions extended under this Agreement.

2. Any such measure taken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immediately notified to the Committee of Experts.

3. The Committee of Experts shall periodically review the measures taken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Any Contracting State which takes action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afford, upon request from any other Contracting State, adequate opportunities for consultations with a view to preserving the stability of concessions under SAFTA.

5. If no satisfactory adjustment is effected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ed within 30 days of the beginning of such consultations, to be extended by another 30 days through mutual consent, the matter may be referred to the Committee of Experts.

6. Any such measures taken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phased out soon after the Committee of Experts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 balance of payments situation of the Contracting State concerned has improved.

[부록1]

Article 16  
Safeguard Measures

1. If any product, which is the subject of a concession under this Agreement, is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State in such a manner or in such quantities as to cause, or threaten to cause, serious injury to producers of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in the importing Contracting State, the importing Contracting State may, pursuant to an investig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at Contracting Stat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set out in this Article, suspend temporarily the concessions granted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e examination of the impact on the domestic industry concerned shall include an evaluation of all other relevant economic factors and indices having a bearing on the state of the domestic industry of the product and a causal relationship must be clearly established between “serious injury” and imports from within the SAARC region, to the exclusion of all such other factors.

2. Such suspension shall only be for such time and to the extent as may be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such injury and in no case, will such suspension be for duration of more than 3 years.

3. No safeguard measure shall be applied again by a Contracting State to the import of a product which has been subject to such a measure during the period of implementation of Trade Liberalization Programme by the Contracting States, for a period of time equal to that during which such measure had been previously applied, provided that the period of

non-application is at least two years.

4. All investigation procedures for resorting to safeguard measures under this Article shall be consistent with Article XIX of GATT 1994 and WTO Agreement on Safeguards

5. Safeguard action under this Article shall be non-discriminatory and applicable to the product imported from all other Contracting State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8 of this Article.

6. When safeguard provisions are used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Contracting State invoking such measures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exporting Contracting State(s) and the Committee of Experts.

7. In critical circumstances where delay would cause damage which it would be difficult to repair, a Contracting State may take a provisional safeguard measure pursuant to a preliminary determination that there is clear evidence that increased imports have caused or are threatening to cause serious injury. The duration of the provisional measure shall not exceed 200 days, during this period the pertinent requirements of this Article shall be met.

8. Notwithstanding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afeguard measures under this article shall not be applied against a product originating in a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 as long as its share of imports of the product concerned in the importing Contracting State does not exceed 5 per cent, provided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with less than 5% import share collectively account for not more than 15% of total imports of the product concerned.

[부록1]

#### Article 17

#### Maintenance of the Value of Concessions

Any of the concessions agreed upon under this Agreement shall not be diminished Or nullified, by the application of any measures restricting trade by the Contracting States, except under the provisions of other articles of this Agreement.

#### Article 18

#### Rules of Origin

Rules of Origin shall be negotiated by the Contracting States and incorporated in this Agreement as an integral part.

#### Article 19

#### Consultations

1.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accord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and will afford adequate opportunity for consultations regarding representations made by another Contracting State with respect to any matter affecting the operation of this Agreement.

2. The Committee of Experts may, at the request of a Contracting State, consult with any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y matter for which it has not been possible to find a satisfactory solution through consultations under paragraph 1.

Article 20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1. Any dispute that may arise among the Contracting Stat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any instrument adopted within its framework concern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Contracting States will be amicably settled among the parties concerned through a process initiated by a request for bilateral consultations.

2. Any Contracting State may request consultation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ith other Contracting State in writing stating the reasons for the request including identification of the measures at issue. All such requests should be notified to the Committee of Experts, through the SAARC Secretariat with an indication of the legal basis for the complaint.

3. If a request for consultations is made pursuant to this Article, the Contracting State to which the request is made shall, unless otherwise mutually agreed, reply to the request within 15 days after the date of its receipt and shall enter into consultations in good faith within a period of no more than 3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with a view to reaching a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4. If the Contracting State does not respond within 15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or does not enter into consultations within a period of no more than 30 days, or a period otherwise mutually agreed,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then the Contracting State



[부록1]

that requested the holding of consultations may proceed to request the Committee of Experts to settle the dispute in accordance with working procedures to be drawn up by the Committee.

5. Consultations shall be confidential,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of any Contracting State in any further proceedings.

6. If the consultations fail to settle a dispute within 3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consultations, to be extended by a further period of 30 days through mutual consent, the complaining Contracting State may request the Committee of Experts to settle the dispute. The complaining Contracting State may request the Committee of Experts to settle the dispute during the 60-day period if the consulting Contracting States jointly consider that consultations have failed to settle the dispute.

7. The Committee of Experts shall promptly investigate the matter referred to it and make recommendations on the matter within a period of 60 days from the date of referral.

8. The Committee of Experts may request a specialist from a Contracting State not party to the dispute selected from a panel of specialists to be established by the Committee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for peer review of the matter referred to it. Such review shall be submitted to the Committee within a period of 30 days from the date of referral of the matter to the specialist.

9. Any Contracting State, which is a party to the dispute, may appeal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f Experts to the SMC. The SMC shall review the matter within the period of 60 days from date of submission of request for appeal. The SMC may uphold, modify or reverse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f Experts.

10. Where the Committee of Experts or SMC concludes that the measure subject to dispute is inconsistent with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t shall recommend that the Contracting State concerned bring the measure into conformity with this Agreement. In addition to its recommendations, the Committee of Experts or SMC may suggest ways in which the Contracting State concerned could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11. The Contracting State to which the Committee's or SMC's recommendations are addressed shall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adoption of the recommendations by the Committee or SMC, inform the Committee of Experts of its intentions regarding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Should the said Contracting State fail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adoption of the recommendations by the Committee, the Committee of Experts may authorize other interested Contracting States to withdraw concessions having trade effects equivalent to those of the measure in dispute.

## Article 21

### Withdrawal

1. Any Contracting State may withdraw from this Agreement at any time after its entry into force. Such withdrawal shall be effective on expiry of six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a written notice thereof is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SAARC, the depositary of this Agreement. That Contracting State shall simultaneously inform the Committee of Experts of the action it has taken.

[부록1]

2.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 Contracting State which has withdrawn from this Agreement shall cease to apply as of that effective date.

3. Following the withdrawal by any Contracting State, the Committee shall meet within 30 days to consider action subsequent to withdrawal.

## Article 22

### Entry into Force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1st January 2006 upon completion of formalities, including ratification by all Contracting States and issuance of a notification thereof by the SAARC Secretariat. This Agreement shall supercede the Agreement on SAARC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SAPTA).

2. Notwithstanding the supercession of SAPTA by this Agreement, the concessions granted under the SAPTA Framework shall remain available to the Contracting States until the completion of the Trade Liberalisation Programme.

## Article 23

### Reservations

This Agreement shall not be signed with reservations, nor will reservations be admitted at the time of notification to the SAARC Secretariat of the completion of formalities.

Article 24  
Amendments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by consensus in the SAFTA Ministerial Council. Any such amendment will become effective upon the deposit of instruments of acceptance with the Secretary General of SAARC by all Contracting States.

Article 25  
Depository

This Agreement wi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 General of SAARC, who will promptly furnish a certified copy thereof to each Contracting Stat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ISLAMABAD, PAKISTAN, On This The Sixth day Of the Year Two Thousand Four, In Nine Originals In The English Language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The initial notification shall be made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coming into force of the Agreement and the COE shall review the notification in its first meeting and take appropriate decisions.

[부록2]

**AGREEMENT ON SAARC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SAPTA)**

PREAMBLE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the Kingdom of Bhutan, the Republic of India, the Republic of Maldives, the Kingdom of Nepal,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and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tracting States”,

Motivated by the commitment to promote regional cooperation for the benefit of their peoples, in a spirit of mutual accommodation, with full respect for the principles of sovereign equality, independence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all States;

Aware that the expansion of trade could act as a powerful stimulus to the development of their national economies, by expanding investment and production, thus providing greater opportunities of employment and help securing higher living standards for their population;

Convinced of the need to establish and promote regional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for strengthening intra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ies; Bearing in mind the urgent need to promote the intraregional trade which presently constitutes a negligible share in the total volume of the South Asian trade;

Recalling the direction given at the Fourth SAARC Summit meeting

[부록2]

held in Islamabad in December 1988 that specific areas be identified where economic cooperation might be feasible immediately;

Guided by the declared commitment of the Heads of State or Government of the Member Countries at the Sixth SAARC Summit held in Colombo in December 1991 to the liberalisation of trade in the region through a step by step approach in such a manner that countries in the region share the benefits of trade expansion equitably;

Cognizant of the mandate given by the Sixth SAARC Summit in Colombo to formulate and seek agreement on an institutional framework under which specific measures for trade liberalisation among SAARC Member States could be furthered and to examine the Sri Lankan proposal to establish the SAARC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SAPTA) by 1997;

Recognising that a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is the first step towards higher levels of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in the region,

Have agreed as follows:

#### Article 1

#####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1) “Least Developed Country” means a country designated as such by the United Nations.

(2) “Contracting State” means any Member State of the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 which has entered into this Agreement.

(3) “Serious injury” means significant damage to domestic producers, of like or similar products resulting from a substantial increase of preferential imports in situations which cause substantial losses in terms of earnings, production or employment unsustainable in the short term. The examination of the impact on the domestic industry concerned shall also include an evaluation of other relevant economic factors and indices having a bearing on the state of the domestic industry of that product.

(4) “Threat of serious injury” means a situation in which a substantial increase of preferential imports is of a nature to cause “serious injury” to domestic producers, and that such injury, although not yet existing, is clearly imminent. A determination of threat of serious injury shall be based on facts and not on mere allegation, conjecture, or remote or hypothetical possibility.

(5) “Critical circumstances” means the emergence of an exceptional situation where massive preferential imports are causing or threatening to cause “serious injury” difficult to repair and which calls for immediate action.

(6) “Sectoral basis” means agreements amongst Contracting States regarding the removal or reduction of tariff, nontariff and paratariff barriers as well as other trade promotion or cooperative measures for specified products or groups of products closely related in enduse or in production.

(7) “Direct trade measures” means measures conducive to promoting mutual trade of Contracting States such as long and mediumterm contracts containing import and supply commitments in respect of specific products, buyback

[부록2]

arrangements, state trading operations, and government and public procurement.

(8) “Tariffs” means customs duties included in the national tariff schedules of the Contracting States.

(9) “Paratariffs” means border charges and fees, other than “tariffs”, on foreign trade transactions of a tarifflike effect which are levied solely on imports, but not those indirect taxes and charges, which are levied in the same manner on like domestic products. Import charges corresponding to specific services rendered are not considered as paratariff measures.

(10) “Nontariffs” means any measure, regulation, or practice, other than “tariffs” and “paratariffs”, the effect of which is to restrict imports, or to significantly distort trade.

(11) “Products” means all products including manufactures and commodities in their raw, semiprocessed and processed forms.

## Article 2

### Establishment and Aims

1. By the present Agreement, the Contracting States establish the SAARC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SAPTA) to promote and sustain mutual trade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Contracting States, through exchanging concessions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2. SAPTA wi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also by the rules, regulations, decisions, understandings and protocols to be agreed upon within its framework by the Contracting States.



### Article 3

#### Principles

SAPTA shall be govern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inciples

(a) SAPTA shall be based and applied on the principles of overall reciprocity and mutuality of advantages in such a way as to benefit equitably all Contracting States, taking into account their respective levels of 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e pattern of their external trade, trade and tariff policies and systems;

(b) SAPTA shall be negotiated step by step, improved and extended in successive stages with periodic reviews;

(c) The special needs of the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shall be clearly recognised and concrete preferential measures in their favour should be agreed upon;

(d) SAPTA shall include all products, manufactures and commodities in their raw, semiprocessed and processed forms.

### Article 4

#### Components

SAPTA may, inter alia, consist of arrangements relating to:

(a) tariffs;

(b) paratariffs;

(c) nontariff measures;

(d) direct trade measures.

Article 5  
Negotiations

1.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nduct their negotiations for trade liberalisation in accordance with any or a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approaches and procedures:

- (a) Product by product basis;
- (b) Across the board tariff reductions;
- (c) Sectoral basis;
- (d) Direct trade measures.

2. Contracting States agreed to negotiate tariff preferences initially on a product-by-product basis.

3.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ter into negotiations from time to time with a view to further expanding SAPTA and the fuller attainment of its aims.

Article 6  
Additional Measures

1. Contracting States agree to consider, in addition to the measures set out in Article 4, the adoption of trade facilitation and other measures to support and complement SAPTA to mutual benefit.

2. Special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by Contracting States to requests from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for technical assistance and co-

operation arrangements designed to assist them in expanding their trade with other Contracting States and in taking advantage of the potential benefits of SAPTA. The possible areas for such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are listed in Annex I.

#### Article 7

##### Schedules of Concessions

The tariff, paratariff and nontariff concessions negotiated and exchanged amongst Contracting States shall be incorporated in the National Schedules of Concessions. The initial concessions agreed to by the Contracting States are attached as Annex II.

#### Article 8

##### Extension of Negotiated Concessions

The concessions agreed to under SAPTA, except those made exclusively to the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in pursuance of Article 10 of this Agreement, shall be extended unconditionally to all Contracting States.

#### Article 9

##### Committee of Participants

A Committee of Participa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Contracting States, is hereby established. The Committee shall meet at least once a year to review the progress made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to ensure that benefits

[부록2]

of trade expansion emanating from this Agreement accrue to all Contracting States equitably. The Committee shall also accord adequate opportunities for consultation on representations made by any Contracting State with respect to any matter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The Committee shall adopt appropriate measures for settling such representations. The Committee shall determine its own rules of procedures.

## Article 10

### Special Treatment for the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1. In addition to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ll Contracting States shall provide, wherever possible, spec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exclusively to the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as set out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 (a) Duty-free access, exclusive tariff preferences or deeper tariff preferences for the export products,
- (b) The removal of nontariff barriers,
- (c) The removal, where appropriate, of paratariff barriers,
- (d) The negotiations of longterm contracts with a view to assisting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to achieve reasonable levels of sustainable exports of their products,
- (e) Special consideration of exports from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in the application of safeguard measures,
- (f) Greater flexibility in the introduction and continuance of quantitative or other restrictions provisionally and without discrimination in critical circumstances by the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on imports from other Contracting States.

Article 11  
Nonapplication

Notwithstanding the measures as set out in Articles 4 and 6,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in relation to preferences already granted or to be granted by any Contracting State to other Contracting States outside the framework of this Agreement, and to third countries through bilateral, plur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and similar arrangements.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lso not be obliged to grant preferences in SAPTA which impair the concession extended under those agreements.

Article 12  
Communication

Transport and Transit Contracting States agree to undertake appropriate steps and measures for developing and improving communication system,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transit facilities for accelerating the growth of trade within the region.

Article 13  
Balance of Payments Measur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y Contracting State facing serious economic problems including balance of payments difficulties may suspend provisionally the concessions as to the quantity and value of

[부록2]

merchandise permitted to be imported under the Agreement. When such action has taken place, the Contracting State which initiates such action, shall simultaneously notify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and the Committee.

2. Any Contracting State which takes action according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afford, upon request from any other Contracting State, adequate opportunities for consultations with a view to preserving the stability of the concessions negotiated under the SAPTA. If no satisfactory adjustment is effected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ed within 90 days of such notification, the matter may be referred to the Committee for review.

#### Article 14

#### Safeguard Measures

If any product, which is a subject of a concession with respect to a preference under this Agreement, is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State in such a manner or in such quantities as to cause or threaten to cause, serious injury in the importing Contracting State, the importing Contracting State concerned may, with prior consultations, except in critical circumstances, suspend provisionally without discrimination, the concession accorded under the Agreement. When such action has taken place the Contracting State which initiates such action shall simultaneously notify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concerned and the Committee shall enter into consultations with the concerned Contracting State and endeavour to reach mutually acceptable agreement to remedy the situation.

In the event of the failure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resolve the issue within 90 days of the receipt of original notification, the Committee of Participants shall meet within 30 days to review the situation and try

to settle the issue amicably. Should the consultations in the Committee of Participants fail to resolve the issue within 60 days, the parties affected by such action shall have the right to withdraw equivalent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which the Committee does not disapprove of.

#### Article 15

##### Maintenance of the Value of Concessions

Any of the concessions agreed upon under this Agreement shall not be diminished or nullified, by the application of any measures restricting trade by the Contracting States except under the provisions as spelt out in other Articles of this Agreement.

#### Article 16

##### Rules of Origin

Products contained in the National Schedules of Concessions annexed to this Agreement shall be eligible for preferential treatment if they satisfy the rules of origin, including special rules of origin, in respect of the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which are set out in Annex III.

#### Article 17

##### Modification and Withdrawal of Concessions

1. Any Contracting State may, after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day the concession was extended, notify the Committee of its intention to modify or withdraw any concession included in its appropriate schedule.

[부록2]

2. The Contracting State intending to withdraw or modify a concession shall enter into consultation and/or negotiations, with a view to reaching agreement on any necessary and appropriate compensation, with Contracting States with which such concession was initially negotiated and with any other Contracting States that have a principal or substantial supplying interest as may be determined by the Committee.

3. Should no agreement be reached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ed within six months of the receipt of notification and should the notifying Contracting State proceed with its modification or withdrawal of such concessions, the affected Contracting States as determined by the Committee may withdraw or modify equivalent concessions in their appropriate schedules. Any such modification or withdrawal shall be notified to the Committee.

## Article 18

###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Concessions

A Contracting State shall at any time be free to withhold or to withdraw in whole or in part any item in its schedule of concessions in respect of which it determines that it was initially negotiated with a State which has ceased to be a Contracting State in this Agreement. A Contracting State taking such action shall notify the Committee, and upon request, consult with Contracting States that have a substantial interest in the product concerned.



Article 19  
Consultations

1.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accord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and shall afford adequate opportunity for consultations regarding such representations as may be made by another Contracting State with respect to any matter affecting the operation of this Agreement.

2. The Committee may, at the request of a Contracting State, consult with any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y matter for which it has not been possible to find a satisfactory solution through such consultation under paragraph 1 above.

Article 20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spute that may arise among the Contracting Stat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any instrument adopted within its framework shall be amicably settl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In the event of failure to settle a dispute, it may be referred to the Committee by a party to the dispute. The Committee shall review the matter and make a recommendation thereon within 12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dispute was submitted to it. The Committee shall adopt appropriate rules for this purpose.

Article 21  
Withdrawal from SAPTA

1. Any Contracting State may withdraw from this Agreement at any time after its entry into force. Such withdrawal shall be effective six months from the day on which written notice thereof is received by the SAARC Secretariat, the depositary of this Agreement. That Contracting State shall simultaneously inform the Committee of the action it has taken.

2.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 Contracting State which has withdrawn from this Agreement shall cease to apply as of that effective date.

3. Following the withdrawal by any Contracting State, the Committee shall meet within 30 days to consider action subsequent to withdrawal.

Article 22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notification issued by the SAARC Secretariat regarding completion of the formalities by all Contracting States.

Article 23  
Reservations

This Agreement may not be signed with reservations nor shall reservations be admitted at the time of notification to the SAARC Secretariat of the completion of formalities.

Article 24  
Amendments

This Agreement may be modified through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All amendments shall become effective upon acceptance by all Contracting States.

Article 25  
Depositary

This Agreement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 General of SAARC who shall promptly furnish a certified copy thereof to each Contracting Stat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on the SAARC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Done at DHAKA this ELEVENTH day of APRIL One Thousand Nine Hundred Ninety Three in eight originals in the English language.

[부록3]

## **INDIA-MERCOSUR PTA**

The Argentine Republic,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the Republic of Paraguay and the República Oriental del Uruguay, States Parties to the MERCOSUR, and the Republic of India:

### **CONSIDERING**

That the Framework Agreement for the creation of a Free Trade Area between MERCOSUR and the Republic of India provides for a first stage of action aimed at increasing trade, including the mutual granting of tariff preferences;

That implementation of an instrument providing for the granting of fixed tariff preferences during said first stage would facilitate subsequent negotiations for the creation of a Free Trade Area;

That the negotiations needed to implement the granting of fixed tariff preferences and to establish trade disciplines between the Parties have been conducted;

That regional integration and trade among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through the creation of free trade areas, are compatible with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world trade, to the integration of their economies into the global economy, and to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ir peoples;

That the process of integrating their economies includes the gradual and reciprocal liberalization of trade and the strengthening of economic cooperation amongst them;

[부록3]

That Article 27 of the Treaty of Montevideo 1980, of which the MERCOSUR Member States are signatory Parties, authorizes the conclusion of Partial Scope Agreements with other developing countries and economic integration areas outside Latin America;

HEREBY AGREE AS FOLLOWS:

## **Chapter I**

### **Purpose of the Agreement**

####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Contracting Par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are MERCOSUR and the Republic of India. The ‘Signatory Parties’ are the Argentine Republic,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the Republic of Paraguay, the República Oriental del Uruguay and the Republic of India.

#### Article 2

The Parties hereby agree to conclude thi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as a first step towards the creation of a Free Trade Area between MERCOSUR and the Republic of India.

## **Chapter II**

### **Trade Liberalisation**

#### Article 3

Annexes I and II to this Agreement contain the products on which tariff preferences and other conditions are agreed for the importation from the

respective territories of the Signatory Parties.

a) Annex I sets forth the products on which tariff preferences are granted by MERCOSUR to the Republic of India.

b) Annex II sets forth the products on which tariff preferences are granted by the Republic of India to MERCOSUR.

#### Article 4

The products included in Annexes I and II are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the Harmonised System (HS).

#### Article 5

Tariff preferences will be applied to all customs duties in force in each Signatory Party at the time of importing the relevant product.

#### Article 6

A 'customs duty' includes duties and charges of any kind imposed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f a good, but does not include:

a) internal taxes or other internal charges imposed consistently with Article I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1994;

b)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in accordance with Articles VI and XVI of GATT 1994, the WTO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GATT 1994, and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c) other duties or charges imposed consistently with Article VIII of GATT 1994 and the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II:1 (b) of the GATT 1994.

[부록3]

#### Article 7

Except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or in GATT 1994, the Parties shall not apply non-tariff barriers to the products included in the Annexes to this Agreement. Non-tariff barriers shall refer to any administrative, financial, exchange-related or other measure whereby a Party prevents or hinders mutual trade by virtue of a unilateral decision.

#### Article 8

If a Contracting Party concludes a preferential agreement with a non Party, it shall upon request from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fford adequate opportunity for consultations on any additional benefits as granted therein.

### **Chapter III General Exceptions**

#### Article 9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prevent any Signatory Party from taking actions and adopting measures consistent with the Articles XX and XXI of the GATT 1994.

### **Chapter IV State Trading Enterprises**

#### Article 10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prevent a Signatory Party from maintaining or establishing a state trading enterprise as understood in Article XVII of GATT 1994.

Article 11

Each Signatory Party shall ensure that any state trading enterprise that it maintains or establishes acts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s of the Signatory Parties under this Agreement and accords non-discriminatory treatment in the import from and export to the other Signatory Parties.

**Chapter V**  
**Rules of Origin**

Article 12

The products included in Annexes I and II of this Agreement shall meet the rules of origin in accordance with Annex III of this Agreement in order to qualify for tariff preferences.

**Chapter VI**  
**National Treatment**

Article 13

On matters relating to taxes, fees or any other domestic duties, the products originating from the territory of any of the Signatory Parties shall receiv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Signatory Parties the same treatment as applied to the national produc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III of GATT 1994.



[부록3]

**Chapter VII**  
**Customs Valuation**

Article 14

On matters related to customs valuation, the Signatory Parties shall be governed by Article VII of GATT 1994 and the WTO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GATT 1994.

**Chapter VIII**  
**Safeguard Measures**

Article 15

The implementation of preferential safeguard 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ed products which have been accorded tariff preferences established in Annexes I and II shall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rules agreed upon in the Annex IV of this Agreement.

Article 16

The Signatory Parties shall maintain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to apply safeguard measures consistent with Article XIX of GATT 1994 and the WTO Agreement on Safeguards.

**Chapter IX**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rticle 17

In applying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the Signatory Parties shall be governed by their respective legislation, which shall be consistent

with Articles VI and XVI of GATT 1994,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GATT 1994, and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Chapter X**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Article 18

The Signatory Parties shall abide by the rights and obligations set out in the WTO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Article 19

The Signatory Parties shall co-operate in the area of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with the objective of facilitating trade.

#### Article 20

The Signatory Parties shall endeavour to conclude mutual equivalence agreements.

## **Chapter XI**

###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Article 21

The Signatory Parties shall abide by the rights and obligations set out in the WTO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부록3]

#### Article 22

The Signatory Parties agree to co-operate in the areas of animal health and plant protection, food safety and mutual recogni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through their respective competent authorities, including, inter-alia, by means of equivalence agreements and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to be concluded taking into account relevant international criteria.

### **Chapter XII**

#### **Administration of the Agreement**

#### Article 23

The Parties agree to create a Joint Administration Committee composed by the MERCOSUR's Common Market Group or its representatives and by India's Secretary of Commerce or its representatives.

#### Article 24

The Joint Administration Committee shall hold its first meeting within sixty days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when it shall establish its working procedures.

#### Article 25

The Joint Administration Committee shall meet ordinarily at least once every year, at such venues as shall be agreed by the Parties, and extraordinarily at any time, at the request of a Party.

## Article 26

The Joint Administration Committee shall adopt its decisions by consensus and shall have the following functions, *inter alia*:

1) To ensure the proper functioning and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its Annexes and additional Protocols, and continuation of the dialogue between the Parties.

2) To consider and submit to the Parties any modifications and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3) To evaluate the process of trade liberalisation established under this Agreement, study the development of trade between the Parties and recommend further steps to create a Free Trade A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4) To perform other functions that may arise from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ts Annexes and any additional Protocols.

5) To establish mechanisms to encourag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s in areas covered by this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6) To exchange opinions and make suggestions on any issue of mutual interest relating to areas covered by this Agreement, including future actions.

7) The creation of subsidiary bodies as may be necessary, *inter alia* on Customs, Trade Facilitation and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Chapter XIII**  
**Amendments and Modifications**

Article 27

Any Party may initiate a proposal to amend or modify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by submitting such proposal to the Joint Administration Committee. The decision to amend shall be taken by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Article 28

The amendments or modifications to the present Agreement shall be adopted by means of additional Protocols thereto.

**Chapter XIV**  
**Settlement of Disputes**

Article 29

Any dispute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tion of, interpretation of, or non compliance with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established in the Annex V of this Agreement.

**Chapter XV**  
**Entry into Force**

Article 30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days after all Signatory Parties have formally notifi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completion

of the internal procedures necessary to that effect.

#### Article 31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for the creation of a Free Trade Area between MERCOSUR and the Republic of India unless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below.

### **Chapter XVI**

#### **Withdrawal**

#### Article 32

Should any of the Contracting Parties wish to withdraw from this Agreement, it shall give formal notice of its intention to the other Party at least sixty days in advance. Once withdrawn the rights and obligations assumed by the Party concerned shall cease to apply, but it shall be bound to comply with oblig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tariff preferences established in Annexes I and II of this Agreement for a term of one year,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 **Chapter XVII**

#### **Depositary**

#### Article 3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araguay shall be the Depositary of this Agreement for the MERCOSUR.

[부록3]

#### Article 34

In fulfilment of the Depositary functions assigned in the above Artic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araguay shall notify the other Member States of MERCOSUR the date on which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 **Chapter XVIII** **Transitory Provision**

#### Article 35

Annexes I to V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shall be negotiated expeditiously with a view to early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the city of New Delhi, on this the 25th day of January 2004, in two originals each in the Spanish, Portuguese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oubt or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however,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부록4]

**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

**AMENDMENT TO THE FIRST AGREEMENT ON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MEMBER COUNTRI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AGREEMENT)**

PREAMBLE

RECOGNIZING the urgent need to take action to implement a trade expansion programme among the developing member countri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 pursuant to the decisions contained in the Kabul Declaration of the Council of Ministers on Asian Economic Co-operation an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sian Trade Expansion Programme which was adopted by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a Trade Expansion Programme created under the Kabul Declaration;

GUIDED by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e New Delhi Declaration adopted at the thirty-first sess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REALIZING that the expansion of trade could act as a powerful stimulus to the development of their national economies, by expanding investment and production opportunities through benefits to be gained from specialization and economies of scale, thus providing greater opportunities of employment and securing higher living standards for their populations;



[부록4]

MINDFUL of the importance of expanding access on favourable terms for their goods to each other's markets and of developing trade arrangements which promote the rational and outward-oriented expansion of production and trade;

NOTING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full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ncouraging the establishment of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at the international, regional and subregional levels, particularly through the 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Second United Nations Development Decade and the Decla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nd the Programme of Ac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the Concerted Declaration on Trade Expansion, Economic Co-operation and Regional Integ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adopted at UNCTAD II; as well as Part IV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nd Article V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and decisions made in pursuance thereof;

NOTING FURTHER that developing countries have already taken some major decisions intended to promote such type of preferential arrangements among themselves such as the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CONVINCED that the establishment of preferences among the developing member countries of ESCAP, complementary to other efforts undertaken in other international forums, could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rade among developing countries;

The Governmen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public of India,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HAVE AGREED as follows:

## **Chapter I - GENERAL PROVISIONS**

### Article 1

####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definitions shall apply:

1) "Participating State" means a State which has consented to be bound by the Agreement by deposition of its instrument of accession or ratification with the Executive Secretary of ESCAP.

2) "Original Participating States" means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the Republic of India,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3) "Developing member countries of ESCAP" means those countries included in paragraphs 3 and 4 of the terms of reference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including any future amendments thereto.

4) "Least developed country" means a country designated as such by the United Nations.

5) "Products" means all products including manufactures and commodities in their raw, semi-processed and processed forms.

6) "Like product" is a product which is identical to the product under

[부록4]

consideration or, in the absence of such a product, another product which, although not identical, has characteristics closely resembling those of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7) “Tariffs” means customs duties included in the national tariff schedules of the Participating States.

8) “Border charges and fees” means border charges and fees, other than tariffs, on foreign trade transactions with a tariff-like effect which are levied solely on imports, but are not indirect taxes and charges which are levied in the same manner on like domestic products. Import charges corresponding to specific services rendered are not considered border charges and fees.

9) “Non-tariff measures” means any measures, regulations or practices, other than tariffs and border charges and fees, the effect of which is to restrict imports or to significantly distort trade.

10) “Margin of preference” means the percentage difference between the Most-Favoured-Nation (MFN) rate of duty and the preferential rate of duty for the like product, and not the absolute difference between those rates. Thus,

$$\text{Margin of preference} = \frac{(\text{MFN duty} - \text{tariff rate conceded under the Agreement})}{\text{MFN duty}} \times 100(\text{per cent})$$

11) “Value of the concessions” means the extent of benefits received by other Participating States from the tariff/non-tariff preferences given by each Participating State through its National List of Concessions agreed upon under this Agreement. In the case of tariff preferences, the value of the

concessions shall be deemed to be preserved if margins of preference are maintained.

12) “Serious injury” means significant damage to domestic producers of like or similar products resulting from a substantial increase of preferential imports in situations which cause substantial losses in terms of earnings, production or employment unsustainable in the short term. The examination of the impact on the domestic industry concerned shall also include an evaluation of other relevant economic factors and indices having a bearing on the state of the domestic industry of that product.

13) “Threat of serious injury” means a situation in which a substantial increase of preferential imports is of a nature to cause serious injury to domestic producers, and that such injury, although not yet existing, is clearly imminent. A determination of threat of serious injury shall be based on facts and not on mere allegations, conjecture, or remote or hypothetical possibility.

## Article 2

###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are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a continuous process of trade expansion among the developing member countries of ESCAP and to furthe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the adoption of mutually beneficial trade liberalization measures consistent with their respective present and future development and trade needs.

Article 3  
Principles

The Agreement shall be govern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general principles:

(i) The Agreement shall be based on overall reciprocity and mutuality of advantages in such a way as to benefit equitably all Participating States;

(ii) The principles of Transparency, National Treatment and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shall apply to the trade relations among the Participating States;

(iii) The special needs of least developed country Participating States shall be clearly recognized and concrete preferential measures in their favour shall be agreed upon.

**Chapter II - PROGRAMME OF TRADE LIBERALIZATION**

Article 4  
Negotiation of Concessions

This Agreement may, inter-alia, consist of arrangements relating to: (a) tariffs; (b) border charges and fees; (c) non-tariff measures. Participating States may conduct their negotiations for tariff concessions in accordance with any one or a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approaches and procedures: (a) product-by-product basis; (b) across-the-board tariff reductions; (c) sectoral basis. The tariff negotiations should be based on the current MFN rates applied by each Participating State. Participating States shall enter into periodic negotiations with a view to further expanding this Agreement and the fuller attainment of its aims.

Article 5

Application of Concessions

Each Participating State shall apply such tariff, border charge and fee, and non-tariff concessions in favour of the goods originating in all other Participating States as are set out in its National List of Concessions. These National Lists of Concessions are attached as annex I, which is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rticle 6

Non-Tariff Measures

Each Participating State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consistent with its development needs and objectives, for the gradual relaxation of non-tariff measures which may affect the importation of products covered by its National List of Concessions. Issues relating 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mong Participating States shall be dealt with, as far as practicable, in accordance with the WTO provisions on these subjects. Participating States shall also make available to one another on a transparent basis a list of non-tariff measures existing on conceded products.

Article 7

Special Concessions to Least Developed Country Participating State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5 of this Agreement, any Participating State may grant to least developed country Participating States special concessions which shall apply to all least developed country Participating States and shall not be extended to other Participating States.

[부록4]

These special concessions shall be included in the National List of Concessions of the preference-giving Participating State.

#### Article 8

##### Rules of Origin

Products contained in the National Lists of Concessions annexed to this Agreement shall be eligible for preferential treatment if they satisfy the Rules of Origin set out in annex II, which is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 Article 9

##### Preservation of the Value of the Concessions

Except as provided for elsewhere, in order to secure preservation of the value of the concessions set out in the attached National Lists of Concessions, the Participating States shall not abrogate or reduce the value of these concession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rough the application of any charge or measure restricting commerce other than those existing prior thereto, except where a charge corresponds to: (a) an internal tax imposed on a similar domestic product; (b) an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or (c) fees commensurate with the cost of services rendered.

#### Article 10

##### Re-establishment of Margins of Preference

If, as a result of a tariff revision, a Participating State reduces or abrogates the value of the concessions granted to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it shall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ake mutually acceptable com-

pensatory action to re-establish margins of preference of equivalent value or enter into prompt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as provided for in chapter IV in order to negotiate a mutually satisfactory modification of its National List of Concess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 reasonable period of time means not exceeding six months from the date of issue of the notification of tariff revision. A Participating State exceeding this period shall provide justification as to the reasons thereof.

#### Article 11

##### Coverage of the Agreement

The Agreement shall cover all products including manufactures and commodities in their raw, semi-processed and processed forms. Participating States shall explore further areas of cooperation with regard to border and non-border measures to supplement and complement the liberalization of trade. These may include, among others, the harmonization of standards, mutual recognition of tests and certification of products, macroeconomic consultations, trade facilitation measures and trade in services.

### **Chapter III - TRADE EXPANSION**

#### Article 12

##### Trade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To ensure the consolidation, continued expansion and further diversification of trade, the Participating States agree to keep in view the objectives and provisions set out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shall strive to implement them expeditiously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ir national pol-



[부록4]

icies and procedures:

a.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Participating States shall grant to one another, in relation to import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ny one of them, a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which prevailed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b. With respect to taxes, rates and other internal duties and charges, product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icipating State shall enjoy in the territory of every other Participating State a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by that other Participating State to similar products of domestic origin;

c. Participating States shall endeavour, in relation to each other, not to introduce or increase the incidence of tariffs, border charges and fees, and non-tariff measures on products of current or potential export interest to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For purposes of determination of the products that fall within the purview of this paragraph, the Participating States shall submit, and the Standing Committee shall decide on, lists of products in this category from time to time;

d. Whenever considered necessary, Participating Stat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for co-operation, particularly in customs administration, to facilitat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to simplify and standardize procedures and formalities relating to reciprocal trade. For this purpose the Standing Committee shall take the required administrative action;

e. The Participating States shall, as far as practicable, follow the provisions of relevant WTO Agreements including the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 and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Duties, and ensure tha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e harmoniously applied;

f. Participating States shall adopt the latest version of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of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as a common tariff nomenclature and, as far as practicable, conduct further negotiations on the basis of the six-digit level of the HS classification of goods;

g. Through further negotiations, Participating States shall take steps to expand the coverage and value of the concessions on products of export interest to one another. To this end, the Standing Committee shall adopt from time to time a programme of action to accelerate the process of negotiations, including additional negotiating techniques and the possible establishment of specific targets for the negotiations.

### Article 13

#### Extension of Advantage, Benefit, Franchise, Immunity or Privilege

In matters of trade, any advantage, benefit, franchise, immunity or privilege applied by a Participating State in respect of a product originating in or intended for consignment to any other Participating State or any other country shall be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extended to the like product originating in or intended for consignment to the territories of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 Article 14

#### Non-Application of Preferences

The provisions of article 13 shall not apply in relation to preferences granted by Participating States:

a. Through bilateral trade agreements, to other Participating States and to third countries;

[부록4]

b. Exclusively to other developing countries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c. To least developed country Participating States under article 7 of this Agreement;

d. To other Participating States which may be classified by the Participating States as at a relatively less advanced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provided that such preferences are accorded without full reciprocity from the relatively less advanced country. The Standing Committee shall decide from time to time which Participating States shall be considered to be in the category of countries at a relatively less advanced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e. To any other Participating State(s) and/or other developing member countries of ESCAP with which the Participating State engages in the formation of an economic integration grouping;

f. To any other Participating State(s) and/or other developing countries with which the Participating State enters into an industrial co-operation agreement or joint venture in other productive sectors, within the purview of article 16.

Notwithstanding the above exceptions, each Participating State shall take the necessary steps to reconcile, to the extent possible, the provisions of agreements entered into with third countries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 Article 15

#### Special Consideration for Least Developed Country Participating States

Special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by Participating States to requests from least developed country Participating States for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arrangements designed to assist them in expanding their trade with other Participating States and in taking advantage of the potential benefits of this Agreement.

#### Article 16

##### Extension of Special Tariff and Non-Tariff Preferences

The Participating States agree to consider extending special tariff and non-tariff preferences in favour of products included in industrial co-operation agreements and joint ventures in other productive sectors reached among some or all of them, and/or with the participation of other developing member countries of ESCAP, which will apply exclusively in favour of the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said agreements or ventures. Provisions for such agreements or ventures shall be embodied in protocol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for the Participating States concerned after the Standing Committee has declared their compatibility with this Agreement.

### **Chapter IV - SAFEGUARD MEASURES AND CONSULTATIONS**

#### Article 17

##### Suspension of Concessions

(i) If, as a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imports of a particular product included in the National List of Concessions of a Participating Stat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icipating State

[부록4]

or other Participating States, are increasing in such a manner as to cause, or threaten to cause, serious injury to domestic industry that produces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in the importing Participating State, the importing Participating State may suspend, provisionally and without discrimination, concessions included in its National List of Concessions in respect of that particular product and shall simultaneously notify the Standing Committee and enter into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concerned, with a view to reaching agreement to remedy the situation, keeping the Standing Committee duly informed of progress in these consultations.

(ii) If agreement among the Participating States concerned cannot be reached within 90 days, the Standing Committee shall then seek to obtain a mutually acceptable solution through: (a) confirmation of the suspension; or (b) modification of the concession; or (c) its replacement by a concession of equivalent value. If the Standing Committee cannot reach a satisfactory solution within 90 days from that date, the Participating State(s) affected by the suspension shall then be free to temporarily suspend the application to the trade of the Participating State which has taken such action of substantially equivalent concessions, subject to notification to and further negotiation for a mutually acceptable solution by the Standing Committee, which shall adopt its final decision by at least a two-thirds majority vote within 90 days following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tter notification.

(iii) The preconditions and circumstances for the legitimate application of safeguard measures shall, as far as possible, be the same as provided under the WTO Agreement on Safeguards.

Article 18

Balance of Payments Restrictions

(i)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9 of this Agreement and without prejudice to exist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a Participating State which finds it necessary to introduce restrictions on imports for the purpose of safeguarding its balance of payments may do so while endeavouring to safeguard the value of the concessions embodied in its National List of Concessions. If, however, such restrictions are applied by a Participating State in respect of products included in its National List of Concessions, such restrictions shall apply provisionally and without discrimination, and notice thereof must immediately be given to the Standing Committee with a view to negotiating a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articles 19 and 20 of this Agreement. Notwithstanding these consultation procedures, Participating States applying balance of payments restrictions with respect to products included in their National Lists of Concessions shall progressively relax such restrictions as their balance of payments situation improves and shall eliminate such restrictions when conditions no longer justify their maintenance.

(ii) The preconditions and circumstances for the legitimate application of balance of payments safeguards shall, as far as practicable, be the same as provided under WTO's Understanding on Balance of Payments Provisions of the GATT 1994.

Article 19

Remedy of Trade Disadvantages

If, as a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ignificant and

[부록4]

persistent disadvantages are created in respect of the trade between one Participating State and the others as a whole, those Participating States shall, at the request of the affected Participating State, accord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the representation or request of the latter, and the Standing Committee shall afford adequate opportunity for consultations with a view to taking the necessary steps to remedy such disadvantages through the adoption of suitable measures, including additional concessions, designed to further expand multilateral trade.

#### Article 20

##### Non-Compliance

If a Participating State should consider that another Participating State is not duly complying with any given provision under this Agreement, and that such non-compliance adversely affects its own trade relations with that Participating State, the former may make formal representation to the latter, which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representation made to it. If no satisfactory adjustment is effected between the Participating States concerned within 120 days following the date on which such representation was made, the matter may be referred to the Standing Committee, which may decide to make to any Participating State such recommendation as it considers appropriate. If the Participating State concerned does not comply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the latter may authorize any Participating State to suspend, in relation to the non-complying State, the application of such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s the Standing Committee considers appropriate.

Article 21

Dispute Settlement

Any dispute that may arise among Participating Stat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any instrument adopted within its framework shall be amicably settled by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In the event of Participating States' failure to settle a dispute among themselves, the dispute will be brought to the Standing Committee to resolve. The Standing Committee shall review the matter and make a recommendation thereon within 12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dispute was submitted to it. The Standing Committee shall adopt appropriate rules for this purpose.

**Chapter V - THE STANDING COMMITTEE AND  
ADMINISTRATION OF THE AGREEMENT**

Article 22

Standing Committee

A Standing Committee, consisting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Participating Stat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shall meet at least once a year and be responsible for reviewing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carrying out consultations, making recommendations and taking decisions as required, and, in general, undertaking whatever measures may be required to ensure the adequate implementation of the objectives and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부록4]

### Article 23

#### Ministerial Council

The Participating States, for the purpose of supervising, coordinating and review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establish a Council at minister level comprising of one minister from the relevant economic ministry of each Participating State. The Council shall meet at least once every two years, or whenever it becomes necessary. The Committee shall provide support to the Ministerial Council for the discharge of its responsibilities.

### Article 24

#### Decision-Making

The practice of decision-making by consensus will be the preferred practice of the Committee, and will be implemented whenever possible. If the need arises, however, the Committee shall, by a two-thirds majority vote, adopt such rules of procedure as may be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provided that at least two thirds of the Participating States are present to cast votes. The Committee shall communicate with thir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matter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and operation of this Agreement, and may request the technical advice and the co-operation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Chapter VI - REVIEW AND MODIFICATIONS**

### Article 25

#### Review of the Agreement

(i) At each session, the Committee shall review progress made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aking into account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set out in articles 2 and 3.

(ii) At least once a year, the Committee shall make a critical review of reciprocal trade with a view to making the necessary corrections and improvements in the National Lists of Concessions to ensure that the benefits deriving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ccrue to all Participating States in a mutually satisfactory manner, consistent with each country's contribution to the Programme of Trade Liberalization set out in chapter II.

(iii) Every three years the Committee shall undertake a major review in order to determine means of advancing the aims of promoting trade expansion among the developing member countries of ESCAP.

#### Article 26

##### Amendments to the Agreement

Except where provision for modification is made elsewhere in this Agreement all articles of this Agreement may be modified through amendments to the Agreement. Amendments to the provisions of chapters II and III and of article 26 shall become effective upon acceptance by all Participating States. For all other amendments, the Committee will make every effort to adopt a decision by consensus as to whether the amendments in question shall become effective; if a consensus decision is not reached, however, these amendments shall become effective upon acceptance by two thirds of the Participating States.

#### Article 27

##### Duration of Application of Concessions

Except for the special circumstances listed under chapter IV, the concessions contained in the National Lists of Concessions shall have a min-

[부록4]

imum duration of application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their entry into force. If at the end of that period they are modified or withdrawn, the Participating States concerned shall enter into consultations with a view to re-establishing a general level of the value of the concessions which shall be at least as favourable to their mutual trade as that existing prior to the modification or withdrawal.

#### Article 28

##### Replacement of Concessions

In the case of concessions withdrawn or modified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set out under chapter IV, the Participating State concerned shall attempt to replace such concessions by other concessions of at least equivalent value.

#### Article 29

##### Promotion of Concessions and Participation

The Committee shall continuously promote negotiations for additions to the National Lists of Concessions and for increasing the number of Participating States and shall sponsor such negotiations at the time of the annual trade reviews provided for under article 25 or at any other time it may deem desirable.

### **Chapter VII - ACCESSION AND WITHDRAWAL**

#### Article 30

##### Accession to the Agreement

(i) After its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be open for accession

by any developing member country of ESCAP.

(ii) Upon notification being received by the Committee through the Executive Secretary of ESCAP from any such country regarding its intention to accede to this Agreement, the Committee shall take the necessary steps to facilitate accession of the applicant country to this Agreement on terms consistent with the latter's present and future development and trade needs as well as with the principle of mutual benefit.

(iii) The applicant country shall offer concessions in exchange for the existing concessions of Participating States and, unless otherwise decided, shall not ask for additional concessions from Participating States through a request list or otherwise.

(iv) After due negotiations, the applicant country may accede to the Agreement by consensus. If consensus is not reached, however, the applicant country may accede to the Agreement if at least two thirds of the Participating States recommend its accession. If any of the Participating States objects to such accession, however,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shall not apply as between that country and the acceding country.

(v) This Agreement shall come into force for an eligible acceding State on the date of deposit of its corresponding instrument of accession, accompanied by the National List of Concessions and the related administrative notification, with the Executive Secretary of ESCAP.

(vi)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 related administrative notification means a government notification, such as a customs notification, that gives practical effect to the acceding State's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부록4]

#### Article 31

##### Notification of Accession, Ratification and Entry into Force

The Executive Secretary of ESCAP shall notify the Participating States and other developing member countries of ESCAP of: (a) accessions to and ratifications of this Agreement; and (b) the date o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for a new Participating State.

#### Article 32

##### Withdrawal from the Agreement

Any Participating State may withdraw from this Agreement, such withdrawal to take effect six months following the day on which written notice of the same is served to the Participating States through the Executive Secretary of ESCAP.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 Participating State which has withdrawn from this Agreement shall cease to apply as of that date. After that date, the Participating States and the withdrawing country shall jointly decide whether to withdraw in whole or in part the concessions received by the latter from the former and vice versa.

### **Chapter VIII - MISCELLANEOUS AND FINAL PROVISIONS**

#### Article 33

##### Amendments to National Lists of Concessions

Amendments to annex I in pursuance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29 shall consist of:

(a) The reduction of tariffs, border charges and fees, and non-tariff measures on products already included in the National Lists of Concessions of the Participating States;

(b) The reduction of tariffs, border charges and fees, and non-tariff measures on products not yet included in the National Lists of Concessions of the Participating States;

(c) The reduction of tariffs, border charges and fees, and non-tariff measures on products included in the National Lists of Concessions of acceding States.

#### Article 34

##### Entry Into Force of National Lists of Concessions

Upon receipt by the Committee of the respective notification of intention by the Participating State concerned, any amendment to annex I shall enter into force 3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Committee, by a two-thirds majority vote, has declared the compatibility of such proposed amendment with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The Governments of the Participating States bind themselves to undertake whatever internal administrative measure as may be required to comply with this provision. The National Lists of Concessions of acceding States shall enter into force 30 days after the dates on which the respective instruments of accession have been deposited with the Executive Secretary of ESCAP.

#### Article 35

##### Exceptions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prevent any Participating State from taking action and adopting measures which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national security, the protection of public morality, the

[부록4]

protection of human, animal and plant life and health, and the protection of articles of artistic,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value.

#### Article 36

##### Non-Application of the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as between any Participating States if they have not entered into direct negotiations with each other and if either of them, at the time of its signature, deposit of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of accession, does not consent to such application.

#### Article 37

##### Reservations

Except for the provisions made under article 36, this Agreement may not be signed with reservations nor shall reservations be admitted at the time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 Article 38

##### Depositary

The original of this Agreement, as well as any amendments to the Agreement, shall be deposited with the Executive Secretary of ESCAP, who shall transmit a certified copy thereof to each Participating State.

#### Article 39

##### Registration of the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be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40

Name of the Agreement

This Agreement, which was hitherto called the First Agreement on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Member Countri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as also the Bangkok Agreement, shall henceforth be called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original signatory States, have signed the present Agreement on behalf of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Done at Beijing, this second day of November, two thousand and five, in one single copy in the English language.



[부록5]

## INDIA-SRI LANKA FTA

### PREAMB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CONSIDERING that the expansion of their domestic markets, through economic integration, is a vital prerequisite for accelerating their processes of economic development.

BEARING in mind the desire to promote mutually beneficial bilateral trade.

CONVINCED of the need to establish and promote free trade arrangements for strengthening intra-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ies.

FURTHER RECOGNIZING that progressive reductions and elimination of obstacles to bilateral trade through a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would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world trade.

HAVE agreed as follows:

#### Article I

#### Objectives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stablish a Free Trade Area in accordance

[부록5]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in conformity with relevant provisions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1994.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are:

(i) To promote through the expansion of trade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India and Sri Lanka.

(ii) To provide fair conditions of competition for trade between India and Sri Lanka

(iii)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ay due regard to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v) To contribute in this way, by the removal of barriers to trade, to the harmonious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world trade

## Article II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Tariffs” means basic customs duties included in the national schedul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Products” means all products including manufactures and commodities in their raw, semi-processed and processed forms.

“Preferential Treatment” means any concession or privilege granted under this Agreement by a Contracting Party through the elimination of tariffs on the movement of goods.

“The Committee” means the Joint Committee referred to in Article XI.

“Serious Injury” means significant damage to domestic producers, of like or similar products resulting from a substantial increase of preferential imports in situations which cause substantial losses in terms of earnings, production or employment unsustainable in the short term. The examination of the impact on the domestic industry concerned shall also include an evaluation of other relevant economic factors and indices having a bearing on the state of the domestic industry of that product.

“Threat of serious injury” means a situation in which a substantial increase of preferential imports is of a nature so as to cause “Serious injury” to domestic producers, and that such injury, although not yet existing is clearly imminent. A determination of threat of serious injury shall be based on facts and not on mere allegation, conjecture, or remote or hypothetical possibility.

“Critical circumstances” means the emergence of an exceptional situation where massive preferential imports are causing or threatening to cause “serious injury” difficult to repair and which calls for immediate action.

### Article III

#### Elimination of Tariffs

The Contracting Parties hereby agree to establish a Free Trade Area for the purpose of free movement of goods between their countries through elimination of tariffs on the movement of good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nnexures A & B which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rticle IV  
General Exceptions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prevent any Contracting Party from taking action and adopting measures, which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national security, the protection of public morals, the protection of human, animal or plant life and health, and the protection of articles of artistic, historic and archaeological value, as is provided for in Articles XX and XX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1994.

Article V  
National Treatment

The Contracting Parties affirm their commitment to the principles enshrined in Article III of GATT 1994.

Article VI  
State Trading Enterprises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Contracting Party from maintaining or establishing a state trading enterprise as understood in Article XVII of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1994.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sure that any state enterprise that it maintains or establishes acts in a manner that is not in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under this Agreement and accords non-discriminatory treatment in the import from and export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 Article VII

### Rules of Origin

Products cover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be eligible for preferential treatment provided they satisfy the Rules of Origin as set out in Annexure C to this Agreement which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For the development of specific sectors of the industry of either Contracting Party, lower value addition norms for the products manufactured or produced by those sectors may be considered through mutual negotiations.

## Article VIII

### Safeguard Measures

If any product, which is the subject of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this Agreement, is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in such a manner or in such quantities as to cause or threaten to cause, serious injury in the importing Contracting Party, the importing Contracting Party may, with prior consultations except in critical circumstances, suspend provisionally without discrimination the preferential treatment accorded under the Agreement.

When action has been taken by either Contracting Party in terms of paragraph I of this Article, it shall simultaneously notif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the Joint Committee established in terms of Article XI. The Committee shall enter into consultations with the concerned Contracting Party

[부록5]

and endeavor to reach mutually acceptable agreement to remedy the situation. Should the consultations in the Committee fail to resolve the issue within sixty days, the party affected by such action shall have the right to withdraw the preferential treatment.

#### Article IX

##### Domestic Legislation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free to apply their domestic legislation to restrict imports, in cases where prices are influenced by unfair trade practices like subsidies or dumping. Subsidies and dumping shall be understood to have the same meaning as in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1994 and the relevant WTO Agreements.

#### Article X

##### Balance of Payment Measure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y Contracting Party facing balance of payments difficulties may suspend provisionally the preferential treatment as to the quantity and value of merchandise permitted to be imported under the Agreement. When such action has taken place, the Contracting Party, which initiates such action shall simultaneously notif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y Contracting Party, which takes action according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afford, upon request from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dequate opportunities for consultations with a view to preserving the stability of the preferential treatment provided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XI  
Joint Committee

A Joint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at Ministerial level. The Committee shall meet at least once a year to review the progress made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to ensure that benefits of trade expansion emanating from this Agreement accrue to both Contracting Parties equitably. The Committee may set up Sub-Committees and/or Working Groups as considered necessary.

In order to facilitate cooperation in customs matters, the Contracting Parties agree to establish a Working Group on customs related issues including harmonization of tariff headings. The Working Group shall meet as often as required and shall report to the Committee on its deliberations.

The Committee shall accord adequate opportunities for consultation on representations made by any Contracting Party with respect to any matter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The Committee shall adopt appropriate measures for settling any matter arising from such representations within 6 months of the representation being made.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implement such measures immediately.

The Committee shall nominate one apex chamber of trade and industry in each country as the nodal chamber to represent the views of the trade and industry on matters relating to this Agreement.

Article XII  
Consultations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ord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and shall

[부록5]

afford adequate opportunity for, consultations regarding such representations as may be made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th respect to any matter affecting the operation of this Agreement.

The Committee may meet at the request of a Contracting Party to consider any matter for which it has not been possible to find a satisfactory solution through consultations under paragraph 1 above.

### Article XIII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spute that may arise between commercial ent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referred for amicable settlement to the nodal apex chambers. Such references shall, as far as possible, be settled through mutual consultations by the Chambers. In the event of an amicable solution not being found, the matter shall be referred to an Arbitral Tribunal for a binding decision. The Tribunal shall be constituted the Joint Committee in consultation with the relevant Arbitration Bodies in the two countries.

Any dispute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any instrument adopted within its framework shall be amicably settled through negotiations failing which a notification may be made to the Committee by any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 Article XIV Duration and Termination of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either Contracting Party ter-



minates this Agreement by giving six months written notice to the other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Agreement.

#### Article XV

##### Amendments

The Agreement may be modified or amended through mutual agreem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Proposals for such modifications or amendments shall be submitted to the Joint Committee and upon acceptance by the Joint Committee, shall be ap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egal procedures of each Contracting Party. Such modifications or amendments shall become effective when confirmed through an exchange of diplomatic notes and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Provided however that in emergency situations, proposals for modifications may be consider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and if agreed, given effect to through an exchange of diplomatic notes.

#### Article XVI

##### Annexures to be finalized

Annexure D(i) and D(ii) (Negative Lists of India and Sri Lanka respectively), E (Items on which India has undertaken to give 100% tariff concession on coming into force of the Agreement) and F (Items on which Sri Lanka has undertaken to give 100% tariff concession on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Agreement) shall be finalised within a period of 60 days of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All the Annexure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부록5]

## Article XVII

### Entry into Force

The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Contracting Parties hereto have notified each other that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and procedures have been completed.

In witness where 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New Delhi this 28th day of December 1998 in two originals in the English language.

[부록6]

## **INDIA-CHILE PTA**

### Preambl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CONSIDERING that the expansion of their domestic markets, through economic integration, is a vital prerequisite for accelerating their processes of economic development;

BEARING in mind the desire to promote mutually beneficial bilateral trade;

CONVINCED of the need to establish and promote free trade for strengthening intra-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ies;

FURTHER RECOGNISING that progressive reductions and elimination of obstacles to

bilateral trade through a bilateral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would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world trade; and

FURTHER ACKNOWLEDGING the creation of the Joint Study Group,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greement signed by the two Parties in January 2005, to study the feasibility of moving towards a Free Trade Agreement/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Chile

[부록6]

and India, and due consideration that should be given to its recommendations,

HAVE agreed as follows:

## Article I

### Objectives

1. The Parties agree to establish 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in conformity with the relevant Agreement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2.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are to:

(a) promote through the expansion of trade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India and Chile;

(b) provide fair conditions of competition for trade between India and Chile;

(c) pay due regard to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d) contribute in this way, by the removal of barriers to trade, to the harmonious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world trade.

## Article II

###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goods of a Party means an originating goods as defined in Article 2 of Annex C;

measure includes any law, regulation, procedure, requirement or practice which may be applied to originating goods;

preferential treatment means any concession or privilege granted under this Agreement by a Party through the progressive reduction and/or elimination of tariffs on the movement of goods;

tariffs means any customs or import duty and a charge of any kind imposed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f a good , but does not include any:

(a) charge equivalent to an internal tax imposed consistently with Article III:2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GATT 1994); in respect of like,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goods of the Party, or in respect of goods from which the imported good has been manufactured or produced in whole or in part;

(b)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and

(c) fee or other charge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commensurate with the cost of services rendered.

the Committee means the Joint Administration Committee referred to in Article XVII.

### Article III

#### Scope and Coverag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this Agreement applies to trade in goods of a Party.

Article IV  
Elimination of Tariffs

1. The Parties hereby agree to establish 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free movement of goods between their countries through elimination or reduction of tariffs on the movement of good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nnexes A & B.

2. On the request of either Party, the Parties shall consult to consider accelerating the elimination or reduction of tariffs set out in their Schedules to Annex A & B or to include new products to these Annexes.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accelerate the elimination or reduction of a tariff on a good or to include new products for elimination of tariffs shall supercede any duty rate or staging category determined pursuant to their Schedules to Annex A & B for such good when approved by each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XVII and its applicable legal procedures.

Article V  
National Treatment

Each Party shall accord national treatment to the goods of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III of GATT 1994.

Article VI  
State Trading Enterprises

1.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maintaining or establishing a state trading enterprise, as understood in Article XVII of GATT 1994.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ny state enterprise that it maintains or establishes acts in a manner that is not in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this Agreement and accords non-discriminatory treatment in the import from and export to the other Party.

#### Article VII

##### Rules of Origin

Goods cover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be eligible for preferential treatment provided they satisfy the Rules of Origin as set out in Annex C.

#### Article VIII

##### Import and Export Restriction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XI of GATT 1994, neither Party may adopt or maintain any prohibition or restriction on the importation of any good of the other Party or on the exportation or sale for export of any good destined for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 Article IX

##### Agricultural Export Subsidies

The Parties share the long term objective of establishing a fair and market oriented agriculture trading system under the aegis of the WTO. They agree to work towards the conclusion of the agriculture negotiations to secure elimination by a credible date of export subsidies, substantial re-

[부록6]

duction in all forms of trade distorting domestic support and substantial improvements in market access with operationally effective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which is integral to all aspects of the negotiations and their outcome consistent with the WTO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1)/DEC1) and the Decision adopted by the WTO General Council on 1 August 2004 (WT/L/579).

#### Article X

##### Global Safeguards

1. The Parties shall retain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to apply safeguard measures consistent with Article XIX of GATT 1994 and the WTO Agreement on Safeguards.

2. This Agreement does not confer any additional rights or obligations on the Parties with regard to actions taken pursuant to Article XIX of GATT 1994 and the WTO Safeguards Agreement.

#### Article XI

##### Preferential Safeguard Measures

The Parties can apply preferential safeguard measures under this Agreement subject to the provisions established in the Annex D.

#### Article XII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1. The Parties affirm their existing rights and obligations with respect to each other under the WTO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Agreement).



2. The Parties shall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with a view to increasing the mutual understanding of their respective systems and facilitating access to their respective markets.

3. The bilateral cooperation shall include opportunities to promote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regulatory agencies such as, information sharing, training programme to improve and update technical knowledge of the concerned personnel of both the Parties, facilitate the acceptance of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including mechanisms such as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in mutually agreed areas.

4 The Parties agree to hold consultations where one of the Parties considers that the other Party has taken measures which are likely to create or have created an obstacle to trade, in order to find an appropriate solution.

5. Activities referred to in the above paragraphs shall be carried out by the Director of the Foreign Trade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Economy, for the Chilean side and the Joint Secretary, Latin America Division, Department of Commerce for the Indian side. The activities shall be reported to the Committee.

### Article XIII

####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1. The Parties affirm their existing rights and obligations with respect to each other under the WTO 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Agreement).

2. The Parties agree to facilitate th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SPS Agreement between them and to promote and develop trade of animals, animal products, plants, plant products, and food products, preventing the introduction or spread of pest or disease, and to enhance plant and animal and food safety.

3. The Parties agree to exchange information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to exchange regulations, standards, procedures, model of certification and technologies related to animal and plant quarantine, food safety, biosecurity, risk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standards. Both Parties agree to exchange information and experienc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PS Agreement and the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developed by the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and the Codex Alimentarius.

4. The Parties agree to hold consultations where one of the Parties considers that the other Party has taken measures which are likely to create or have created an obstacle to trade in order to find an appropriate solution. Any matters on which it has not been possible to find a satisfactory solution, shall be referred to the Committee through a notification.

5. Activ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s 2, 3 and 4 shall be carried out by the Director of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DIREC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or the Chilean side and the Joint Secretary, Latin America Division, Department of Commerce for the Indian side. The activities shall be reported to the Committee.

6. The Parties shall also try and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MRA) in mutually agreed areas.

Article XIV  
Customs Valuation

On matters related to Customs Valuation, the Parties shall be governed by Article VII of GATT 1994 and the WTO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GATT 1994.

Article XV  
Customs Cooperation

In order to facilitate cooperation in customs matters, including compliance issues, the Parties agree to establish a Working Group on Customs, which would negotiate a mechanism/protocol for customs cooperation within a period of six month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Working Group shall meet as often as required and shall report to the Committee.

Article XVI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Matters

1. The Parties maintain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Article VI of GATT 1994,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GATT (“Agreement on Antidumping”) and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which are part of the WTO Agreement.

2. Antidumping actions taken pursuant to Article VI of GATT 1994

[부록6]

and the Agreement on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actions taken pursuant to Article VI of GATT 1994 and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hall not be subject to Article XVIII.

#### Article XVII

##### Joint Administration Committee

1. A Joint Administration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at Secretary or equivalent level. The Committee shall meet at least once a year to review the progress made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to ensure that benefits of trade expansion emanating from this Agreement accrue to the Parties equitably. The Committee may set up Sub-Committees and/or Working Groups as considered necessary.

2. The Committee shall accord adequate opportunities for consultation on representations made by either Party with respect to any matter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The Committee shall adopt appropriate measures for settling any matter arising from such representations within six months of the representation being made. Each Party shall implement such measures immediately.

#### Article XVIII

#####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spute that may arise in connection with the interpretation, application or non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be submitted to the procedure established in Annex E.

Article XIX  
General Exceptions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prevent any Party from adopting measures according to Article XX and Article XXI of the GATT 1994.

Article XX  
Amendments

1. The Agreement may be modified or amended through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Proposals for such modifications or amendments shall be submitted to the Committee by either Party and upon acceptance by the Committee, shall be ap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egal procedures of each Party<sup>1</sup>. Such modifications or amendments shall become effective when confirmed through an exchange of diplomatic notes and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2. Provided however that in emergency situations, proposals for modifications may be considered by the Parties and if agreed, given effect to through an exchange of diplomatic notes.

Article XXI  
Annexes

1 Chile shall implement the actions of the Committee, regarding any modification of the list of items covered under Annexes A and B and the Rules of Origin under Annex C, in accordance with article 54 of the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The list of items covered

[부록6]

under preferential tariff by the Government of Chile is at Annex A and the list of items covered under preferential tariff by the Government of India is at Annex B. Annexes A, B, C, D and E, as well as the footnotes therein are integral parts of this Agreement.

## Article XXII

### Duration and Termination of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either Party terminates this Agreement by giving six months written notice to the other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 Article XXIII

### Entry into Force

1. The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y after the Parties hereto have notified each other that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and procedures have been completed.

2.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3. Signed in three originals each in Hindi,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of them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in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